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7-01

202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2.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책임자	이대훈(성공회대학교)
연구원	문아영(피스모모)
	박진아(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지영(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내용 및 범위	4
3.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6
II.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19
1. 개설	19
2. 유엔헌장기반 인권메커니즘	21
가. 인권이사회	21
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26
1) 제1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26
2) 제2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28
3) 제3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29
4) 시사점	31
다. 특별절차	35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36
2)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43
3) 시사점	44
라.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46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46
2)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47
3) 북한인권상황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48
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52
3. 인권조약기반 인권메커니즘	54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54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58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1
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70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75
4. 소결	77
 III. SDGs와 북한인권	80
1. SDGs와 인권	80
가. SDGs와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80
1) SDGs 개요와 핵심 가치	80
2)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82
가) SDGs 이행 현황 점검 체계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82
나) 2020 SDGs 이행 현황	84
나. SDGs와 인권 연계	86
1) SDGs의 인권 담론	86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인권	86
나) SDGs와 인권의 상호 연계 의미	89
2)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가능성과 한계	94
3)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96
가) 국가인권기구와 SDGs 이행	96
나)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의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101
다) 시사점	112
2. 북한 SDGs 이행 환경 및 현황	114
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114

1) 북한 유엔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주요 내용과 특징	114
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118
나. 북한의 SDGs 이행 노력과 도전과제	121
1) 북한 SDGs 이행 목표와 국내화 노력	121
2)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123
3)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137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142
4. 소결	149
IV. 관련 기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 분석	150
1.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150
2. 전문가 응답의 주요 내용	152
3. 전문가 의견 주요 참고 사항	174
V. 결 론	179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연구의 종합	179
가. 새로운 접근 전략	179
나.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 방안의 검토	181
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의 검토	188
라. 결론	191
2.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권고안	193
참 고 문 헌	199
부 록	213
1. 최근 3년 한국 정부 대북 인권정책 개요	213

〈표 차례〉

표 1. 남북한 인권협력 체제의 구조	16
표 2. 비갈등적/평화적 인권 개입의 단계	16
표 3. 인권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단계별 접근	18
표 4. 인권위원회(CHR) 북한인권 결의	23
표 5.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표결 결과 및 한국 정부의 입장	24
표 6.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25
표 7. 북한 제1-3차 UPR 이슈별 권고	33
표 8. 북한 UPR 제1-3차, 한국 정부의 권고 사항과 수용 여부	35
표 9.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일부)	46
표 10.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8 (일부)	50
표 11. 북한이 비준 · 가입한 조약 (2020년 10월 기준)	54
표 12. 북한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54
표 13.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01년 최종견해 요약	55
표 14.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58
표 15.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03년 최종견해 요약	60
표 16. 북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61
표 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17년 최종견해 요약	61
표 18. 북한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70
표 1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17년 최종견해 요약	71
표 20. 북한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75
표 21. SDGs 목표와 5Ps	81
표 22.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연례 주요 주제 및 중점 SDGs	83
표 23.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주요 내용	85

표 24. SDGs 목표와 인권기준 연계	91
표 25. 메리다 선언에 제시된 국가인권기구의 SDGs 이행 관련 주요 역할	97
표 26. 아르헨티나 국가인권기구의 SDGs 인권 모니터링 사례	98
표 27. 스코틀랜드의 국가인권행동계획(NAP)과 SDGs 연계 사례	100
표 28. 베트남 SDGs 국가행동계획의 SDGs 세부목표와 인권협약 연계 항목	104
표 29. 베트남 2018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의 SDG16 이행 주요 내용	106
표 30. 중국 2030 의제 이행의 핵심 우선순위	107
표 31. 중국의 ‘모든 정책에서의 보건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108
표 32.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 안보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115
표 33.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116
표 34.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3: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116
표 35.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 관련 성과목표	117
표 36. UN SDGs와 북한 SDGs	122
표 37. 북한이 습지 관련 참석하고 있는 회의 목록	135
표 38. 북한 취약계층별 인권 현황 관련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관련그에 해당하는 SDGs 및 정리	141
표 39. 2005-2007년 남북 농업협력사업 합의 내용	143
표 40. 기존 남북 간 합의서의 농업협력사업 구분과 내용(2005-2007년)	144
표 41.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관련 SDGs 및 북한인권 현황	148
표 42. 전문가 자문의견 질문지	151
표 43. 설문 응답자	152

〈그림 차례〉

그림 1. 북한 제3차 UPR 권고와 SDG 목표 사이의 연관성	31
그림 2. 북한의 UPR 권고 수용 경향	32
그림 3.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북한 데이터: 북한에 대한 인권 권고와 SDGs 연계 정도	92
그림 4.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북한 데이터: 북한에 대한 인권 권고의 SDGs 목표별 분포 현황	94
그림 5. 2018년 유엔 회원국이 보유한 국가인권기구 등급 분포	99
그림 6. 베트남 SDGs NAP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103
그림 7.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베트남 데이터: 베트남에 대한 인권 권고와 SDGs 연계 정도	105
그림 8.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베트남 데이터: 베트남에 대한 인권 권고의 SDGs 목표별 분포 현황	106
그림 9. 북한 SDGs 이행 체계	121
그림 10. 북한의 공공배급시스템 이용 인구비율	124
그림 11. SDGs Country Profile, DPRK	125
그림 12. SDGs Country Profile, DPRK	125
그림 13. UN SDGs Country Profile, 9.2.2	126
그림 14.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SDGs Country Profile, DPRK)	127
그림 15. 오염되지 않은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129
그림 16. UN SDGs Country Profile, 12.2.2	131
그림 17. NDC, DPRK(2016), Contribution to GHG Emissions Mitigation	133
그림 18. UNICEF MICS 보고서 재력 지표 지역 간 분포	136
그림 19. SDGs Country Profile, DPRK	13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9년 이래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있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긴급한 상황은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와 인도적 위기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바깥으로 더욱 밀려나게 하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국제개발처(USAID)는 2019년 하반기 기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¹⁾ 2019년 북한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식량안보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 유엔은 2020년에도 북한의 식량안보와 영양결핍의 문제, 보건과 식수, 위생, 청결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으나 자연재해 및 농업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위기가 개별 국가 단위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초연결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문법과 방식으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해지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북한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조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적십자사 자원 활동가들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렸다.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공식발표했으나, 실제 감염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0만 달러(약 11억 원)를 지출할 계획임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²⁾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2020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북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2019년 유엔은 북한지원을 위해 1억2000만 달러(약 142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실제 모금액은 목표의 27% 수준인 3200만 달러(약 380억 원)에 그쳤다.³⁾ 2020

1) “북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인구 세계 2위…가뭄으로 1천만명 영향”, 「VOA Korea」 2020.8.6.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dprk-natural-disasters-droughts>> (검색일: 2020.11.15.).

2) “WHO to spend US\$900,000 to help N. Korea's fight against coronavirus”, 「YONHAP NEWS」, 2020.04.01. <<https://en.yna.co.kr/view/AEN20200401002200325>> (검색일: 2020.11.15.).

년의 경우에는 북한 지원을 위해 1억 700만 달러를 책정하였으나 목표액의 26.8% 수준인 2,86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⁴⁾ 2019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금 액수가 지난 6년 중 최저치에 도달하였다.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해 북한 내 분야별 지원에 영양 분야 64%, 물, 위생, 청결분야 58%의 부족분이 발생했다.⁵⁾

국제인권제도에 참여하는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하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는 인권 문제의 제기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북한정부의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아동, 장애인과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하 국가보고절차에는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방북도 허용하였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과 관련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절차와 UPR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인권분야에서 협력의 태도를 취하는 점은 제한적이지만 고무적이다.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UPR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 당국은 지난 5년여 간 주로 사회권과 취약집단과 관련해 최소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되며 유엔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차 UPR에서 북한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권고 사항들을 수용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북한이 유엔과 합의한 협력전략이나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가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을 비롯해 북한주민의 인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북한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에 대해 선별적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유엔인권조약기구와 UPR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개입과 협력의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가

3) 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0*, (10 December 2019) p. 26.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GHO-2020_v9.1.pdf> (검색일: 2020.11.22.).

4) “대북 지원 모금 27% 불과…국제사회 ‘피로감’ 반영”, 「VOA Korea」 2020.10.1.
<<https://www.voakorea.com/episode/pm-225726>> (검색일: 2020.11.15.).

5) 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2019).
<<https://www.unicef.org/media/73706/file/DPRK-SitRep-End-of-Year-2019.pdf>> (검색일: 2020.11.22.).

장 시급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식량과 영양안보 상황 및 보건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 북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개발협력을 지속하고 확장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촉진과 압박을 꾸준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며, 인권 관점에서 대북제재의 해제 혹은 완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이 제70차 총회를 통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의 목표,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달성하기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도 북한인권 증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SDGs 실행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과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3차 UPR 권고안 가운데 SDG1(빈곤종식), SDG2(기아종식), SDG3(건강과 복지)의 맥락에서 “적정한 생활수준 실현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권은 SDGs와 세부목표 전체에 걸쳐 반영된다. 따라서 SDGs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며, 유엔헌장과 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 역시 SDGs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SDGs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6년 북한 외무성과 유엔이 합의한 북한-유엔 전략계획 2017-2022에서 나타나는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북한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2’을 수립하고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 4가지 우선순위를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여기에 북한의 현실에 맞게 SDGs를 적용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며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고 환경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전략계획을 통해 북한의 협력 우선순위인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세 분야에서 SDGs 이행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들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제1차(2017-2019) 및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2018년부터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철도, 도로 협력의 재개를 추진하였고, 관련된 남북 공동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다. 정부의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는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포괄적·통합적 증진 △대화과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추진 △북한인권 증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여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국제협력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인권협력을 촉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본 연구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간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과 보건·영양,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완화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내부적 통제의 강화로 인해 악화되는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이러한 현실과 정책적 환경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권과 SDGs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하여 정책 연구의 내용이 축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최근의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가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SDGs를 탄생시킨 기초문서인 202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관한 유엔문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국제인권법으로 밝히고 있으며, SDGs는 불평등의 해소,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분쟁의 예방과 평화의 증진, 자연과 인간 사회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은 필연적으로 인권, 평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의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헌장 기반체계와 인권조약 기반체계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제적 평가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조사 및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사회의 결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특별절차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등 각종 북한인권 관련 공식 문서상의 권고 사항을 분석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제인권조약 관점에

서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남북한 협력방안의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인권보장체계와 국제인권기준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SDGs 이행 과정을 활용한 북한인권 개선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DGs와 인권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SDGs를 활용해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 검토를 통해 북한 협력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유엔 협력전략계획을 통해 북한이 우선하고 있는 SDGs와 해당 영역의 인권 연계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SDGs 이행 과정이 북한인권 개선에 어떤 가능성을 열고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 속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우선과제는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제Ⅱ장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제Ⅲ장에서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인권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제Ⅴ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사례연구, 서면자문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기구의 권고, SDGs 관련 유엔문서, SDGs 이행에 관한 북한정부의 문서, 본 주제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연구논문, 보고서 포함)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SDGs 이행과정에서 인권을 연계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였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전문가 49명에게 서면자문을 요청하고 이중 1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기존 북한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군사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인권 분야로 확장되어 왔으며, 북한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국제 인권 레짐과의 교차 연구를 통해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레짐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경향 또는 지원을 통해 변화, 시혜적 관계를 전제로 한 개발협력의 관점을 취해온 바 있다. 근래 제3세대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고 국제사회의 파트너로서 북한을 설정하고 북한이 자력화(empowerment)의 과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조망하는 연구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어떠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 주목한다. 북한이 여전히 안보의 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평화가 먼저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온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볼 때 대북관계 변화는 더욱 더 중요해진다. 본 연구팀은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북한을 바라보고 SDGs의 파트너십 관점에서 그 관계를 설정하며 출발하고자 한다.

서보혁은 「코리아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2011)에서 평화의 의제를 ‘남북한 인권협력’의 접근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체제대립을 위한 인권개입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할 것으로 설정하고, “코리아 인권”이라는 국제-국내적 정책 프레임 개념화하였다. 코리아 인권 프레임은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한반도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정책 프레임에서는 다각도, 다행위자, 다층위의 코리아인권협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한 상호작용, 국제적 상호작용, 공방과 협력의 동시진행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남북한 인권협력’의 개념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막대한 낭비와 피해를 초래해온 군사적 대립과 과잉경쟁을 생각하면서 이를 평화의 의제로 조절하면서 인권 개선을 이해와 대화 및 협상 등 협력적 방식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이대훈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평화프로세스 또는 관련 국가의 정책 변화 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다자간 협력 또는 국제적 협력이 부각될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비갈등적 북한인권 개입” 제주인권회의, 2008). 이를 “비갈등적 북한인권 개입”이라고 개념화하여 남북 인권협력 방안을 구상하여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는 북한 인권협력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정립, 인권분야 민간대화 협력 트랙 가동, (가칭)한반도인권협력포럼의 구성, 한반도 인권협력 외교의 방향과 주요 과제 설정과 이행, 2체제 인권발전론, 통일과정 인권발전론, 남북한 인권교육,

21세기 인권제도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포함되었다. 또 이를 기초로,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인권협력 외교 및 인권협력대사의 역할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남북한 인권개선 협력과 국제적 협력의 병행,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갈등예방적 인권협력 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코리아인권 협력’과 갈등조정적 인권협력의 프레임은 상호 선순환하는 정책 프레임이 될 수 있다. 분쟁 중인 남북한 간에 인권 증진의 전략에서 인권협력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이 성격이 매우 다른 사회의 인권 문제에 견해를 갖고 접근한다는 것은 신중을 요하게 되고, 인권에서 핵심 원리인 자기결정권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개발협력과 예방-재발방지 및 인도주의적 관심도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3세대 인권과 북한」(통일연구원, 2019)은 평화권과 발전권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박진아는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에서 발전권 논의가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과의 국제협력에서 발전권을 포함하여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SDGs와 인권증진의 병행적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주영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인권”에서 인권과 특별히 관련성이 높은 SDGs의 주요 내용을 목록화하고 2017-2021년 유엔과 북한의 협력전략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대북 인권정책의 개발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이경주, 정옥식, 이대훈 등은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제정 과정과 아울러 평화-발전-인권 선순환 구조의 원리와 평화권을 적용한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정책 프레임 제안을 하고 있다.

박지연, 문경연 등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016)에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 미칠 것인지 고찰한다. 아울러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고채무국에 대한 부채탕감 이슈가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국가와 유엔의 협력을 관련시킨 논의로 Lim Sojin의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Context of Fragile States” (IKSU Working Paper Series No. 1, 2019) 등이 있다.

아울러 박지연, 문경연, 조동호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2019)과 조성은의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와 사회발전의 전략적 접근” (한반도평화변영 리서치 브리프 No. 49, 국책연구전략센터, 2019)도 참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일련의 권고와 국제회의 및 정례 「북한인권포럼」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북한인권 실태와 제도 평가와 한국과 해외의 인식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적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실질적 북한 인권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 분석과 다양한 전문적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참고할 자료로 「통일연구원 사이오포럼 자료집」, 「북한주민을 위한 SDGs 활용방안 국제 세미나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_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통일연구원), 「2019년도 KDI계획」(북한 SDGs 협력 포함) 등이 있다.

한동호 등은 유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기술협력 제도와 방안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추적하였는데, 이로부터 남북한 및 국제적 인권 기술협력의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통일연구원, 2015).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란,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식 및 역량 차원의 간격을 점검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는 OHCHR의 필수적 활동 중의 하나”이며, 보다 포괄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 하는 국제사회 인권개선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구체적 영역은 ①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지원, ②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대상 자문 및 지원, ③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④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력은 국제사회와 북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북한에 대한 관여를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pp. 9-10).

남북한 간에 인권기술협력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행동계획 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역량구축에서부터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p. 98). 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북한인권 기술협력 방안은 크게 인권의 정치적 특성, 유엔 인권기구의 특성,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 기술협력의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pp. 85-91). 인권 기술협력 사업의 법, 제도, 정책,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헌법과 형법 등 개정 시 인권 기준 반영, 인권관련 법 제정, 기존의 법 인권적으로 개정, 사법 제도, 국가인권기구, 인권침해 진정제도,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지표, 인권교육 및 연수 등에서 협력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서, 기존 국제인권기구의 대북 권고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는 인권 기술협력을 대폭 확장하고, 초기에 간접적 기술협력을 다각도로 전개해서 실질적 인권개선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 조약기구와 특별기구 등 다양한 국내외 행위자들과 다면적으로 협력하여, 법 개정, 거버넌스, 정책, 조사, 보고서 제출, 역량 교육과 훈련, 기획과 집행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과 관련된 지역적, 국제적 인권협력을 프로그램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정책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북한인권 개선 연구 전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이들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연관되어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등이 강조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 지위, 역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부재하다. 청년의 권리와 역할도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협력적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지 못했고, 인권과 분쟁 및 회복력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력화(empowerment)와 젠더 감수성이 기존 연구의 제약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아래 연구에서는 접근의 틀과 관점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갈등인지적 접근법(International Alert, Saferworld *et al.*, Conflict-sensitive approaches to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eacebuilding, 2004)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통용되고 일정하게 정착된 좋은 틀 중의 하나이다. 아직 국제적 인권개입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발전-거버넌스-평화구축 넥서스 프레임에 매우 적합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시진행 과제에도 매우 적합하다.

SDGs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 분야에서의 개입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인권 분야에서의 개입이다. 개발협력에서도 보다 통합적인 갈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립되었다. 기존의 인권 개입이 실질적 개선 보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컸다면 국제적 인권 개입에도 갈등인지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동북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는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갈등인지적 접근은, 분쟁 지역에서의 외부 개입전략에서 현지 당사자 중심성, 현지 갈등의 참여적 분석과 이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접근, 국제적 협력관계 속에서의 개입, 의제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 분야에서 갈등인지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 갈등과 인권의 상호악순환을 반성하여 개입하려는 지역/나라의 갈등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한다.

- 각 갈등은 고유하고 특수하므로 각 개입은 갈등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 그 분석은 갈등의 당사자들과 참여적으로 해야 한다.
- 당사자 참여적 분석은 당사자 참여적 계획수립과 개입, 당사자 참여적 평가, 당사자 참여적 계획 수정 등 현지의 소유권과 국제적 파트너십의 원리를 견지해야 한다.
- 개입의 각 단계와 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억제 또는 비폭력적으로 전환하는 개입과 일치해야 한다.
- 이러한 갈등인지적 개입은 중간 평가, 1차 평가에 갈등전환적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 갈등인지적 평가에 의해 개입전략을 매 단계 수정되어야 한다.
- 이러한 복합적 전략과 의제통합적 접근이 분할된 접근보다 더 효과적이다.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ow)에서 발간한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2019)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젠더감수성 기반 접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과 경제에 미친 임팩트를 인권과 젠더 관점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다. 보고서는 그에 기초하여 대안으로서, 국제법에 기초한 안보위기 해소,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제재의 해제, 제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치, 젠더관점의 인도적 인권적 평가 실시, 유엔 안보리 1325결의에 기반하여 평화와 안보 협상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 보장을 제시한다.

평화구축(peacebuilding)은 인권과 개발협력을 포함해서 갈등과 위기에 대응하는 포괄적 프레임의 하나로서, ‘한반도 인권협력’ 프레임과 ‘갈등인지적 접근’ 프레임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최근 유엔 등 국제적 합의의 장에서는, 평화구축과 거버넌스의 주제가 SDG 16+, 포용적 갈등예방,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논의로 확대되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약칭 “평화의 지속”, 2018)」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SDGs의 취지를 집약한 지향성이 “평화의 지속”이며, 지속적인 평화 없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대응으로서 지역 행위자 중심성, 인도적 지원과 개발 및 여성자력화를 평화구축 및 정치적 과정과 통합할 필요성, 관련 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을 축으로 하는 발전과 거버넌스 및 평화구축의 넥서스 접근을 제시한다. 「평화의 지속」 보고서는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이 보고서는 평화구축을 취약지역 접근전략의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발전과 거버넌스 형성과 평화구축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평화권의 실질적인 구현될 수 있음과 여성 등 지역의 당사자-행위자의 역할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주요 국제 문헌으로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선언 및 행동 프레임워크」(유네스코, 1995),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유네스코, 2000),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 「여성, 평화, 안보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2014), 「청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0호」(2015), 「평화의 권리 선언」(유엔 총회, 2016),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평화의 어젠다」(1992), 「군축 의제」(유엔 사무총장, 2018), 「평화로의 경로」(세계은행-유엔, 2018) 등이 있다.

인권침해와 분쟁 상황에서 청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주요 문헌으로 「유엔 안보리결의안 2250호」를 들 수 있다. 이 문헌은 문제해결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주도성 및 지도력, 지식과 태도 및 역량의 형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의 원칙, 안전함과 폭력 감수성 형성,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구현, 젠더 감수성, 청년층 필요에 맞춘 정책 추구를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국내적 협력정책 프레임은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 간의 협력과 여론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되어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분야의 하나가 ‘인권외교’ 분야이다. 인권외교는 정부 간 외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외교의 일환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정부, 정부 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민 행위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 간, 부처 간 협력 정책에도 인권외교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한광명은 「공공외교개론」(제2판,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3)에서 21세기에 적용할 다양한 공공외교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용하다. 중국의 다차원 다채널 공공외교 모델, 미국의 전략화 모델, 영국과 독일의 다각화 모델, 프랑스의 인문화 모델 등이 존재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국제협력과 공공외교를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다. 독일에는 각 정당 계열의 에버트 재단, 아데나워 재단, 나우만 재단, 한스 자이텔 재단, 하인리히 뵐 재단,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의 국제협력과 공공외교가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인권, 공익, 시민성, 국제협력의 목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구현한다. 스웨덴은 알 엘마르손 재단, 올로프 팔메 재단,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를 통해 인권협력을 포함하는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권-민주화-한반도평화에 크게 기여한 미주지역 윤한봉의 공공외교 모델도 검토되어야 한다(「망명」, 2009). 인권-민주화-평화 국제협력에 이정표를 그은 윤한봉 선생의 정열적인 활동은 하나의 고유한 공공외교 모델을 창출한 것인데, 그 특징은 글로벌 정세 분석과 중장기 계획성과 프로그램의 일관성, 현지 대중적 토대에 기반한 여론 형성 및 적극적 민간 외교 등이다.

북한인권 접근법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볼 때 우선 탈분단 접근⁶⁾에 주목할 수 있

6) 박순성,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다. 박순성(2014)은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을 인권 우선 접근과 국가주권 우선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권 우선 접근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가 주권 우선 접근은 국가의 주권 및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는 전제 위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면서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가주권에 따른 합의를 우선으로 할 경우, 남북한이 합의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인정하여 각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는 인권 침해 사례의 1차 행위자보다는 국가체제와 법·제도와 국가기구, 권력엘리트를 포함하는 특정 권력집단과 최고 권력자에게 귀속된 책임이 크며, 국제사회의 인권관련 압박의 부족과 대응의 오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 침해를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적·외적 요인이나 환경을 제거 또는 축소하거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여 인권 침해를 주도하는 일차 행위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예외의 규칙들(특정 사법 체계나 가치·신념 체계)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탈-분단의 노력과 인권 침해 상황 개선노력을 중첩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 내부의 국제인권체제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적절한 국제규범의 국내화를 도모하며 강대국의 국가이익 중심이 아닌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목적인 국제화된 인권 운동과 더불어 인권 침해국가 내부로부터의 인권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론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고발, 압박)과 중장기적인 정책(체제 변화 유도)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차원의 다차원적인 공동 노력인 한반도인권체제나 동북아인권체제의 형성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 문제로 환원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미국 주도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논쟁⁷⁾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은 체제변화를 촉진하려는 외교 전략임과 동시에 다자주의적인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타 정책들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만

7) 이원웅, 「북한인권과 미국: 오해와 진실」 (북한인권평화회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틀 속에는 인권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력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압력도 역시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과 미국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국제사회 여론과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평화권과 발전권의 연계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되었다. 여기서 평화권과 발전권 그리고 군축과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인권접근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평화와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조점이다. 북한의 현재 인권상황과 ‘발전권’에 대한 제약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김정은 정권을 교체나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이 강해질수록 1차적이고 가장 큰 피해는 북한 주민이 되며 그와 동시에 군사적 충돌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강력한 제재중심의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에서 적대적 대립관계가 완화되고 또 종식되는 것으로써 북한 체제만을 겨냥한 북한체제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평화와 인권 문제의 선순환적 발전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⁹⁾을 참조해야 한다는 접근법도 있다. 동북아 역내 안보 질서를 안정화하고 주요 경제 및 안보 문제에 관한 다자적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와 공영에 대한 공동의 합의 지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경우 냉전기 유럽의 동서 진영 간 대립과 유사하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일종의 두 진영처럼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이 지역 내 다자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익균형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상호 관심사를 하나의 포괄적 틀(헬싱키 의정서)에 각각의 의제영역(일명 바스켓)으로 수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소 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회담과 미소, 중부유럽 관련국들 간 상호균형감축(MBFR)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서독과 프랑스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를 본격화하고 전후 과거를 청산하며 적대국간 관

8) 정옥식, 「북핵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평화회의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9) 서보혁,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인권예외의 적용가능성 검토」 (북한인권평화회의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계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국경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유럽안보협력회의가 형성될 수 있는 선행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다자협약의 출범을 위한 환경조성의 과정은 동북아시아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남긴다.

유럽에서 이러한 이익균형 접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국가들이 세력균형에 바탕을 둔 역내 안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를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혹은 국가주권 우위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는 북한 내부의 인권 보호나 증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고한다면, 첫째,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주로 한 ‘인적 접촉’을 시작하여 전개하고, 둘째, 그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조성한 후, 셋째, 인권문제를 다루되 매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인권레짐이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동북아 역내를 넘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시도한다면,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이익을 반영하는 ‘공정한’ 다자협력틀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셋째,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고한다면 헬싱키 프로세스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서독과 미국이 취했던 태도와 행동들로부터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독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공산진영과 관계개선, 그 연장선상에서 동독과의 화해협력, 통일 전망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공개적/비공개적, 양자적/다자적 방식으로 동서독 간 인도적 문제와 동독 내부의 인권상황 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권 개선을 위한 인간안보론 접근¹⁰⁾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인간안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국제사회의 인간안보 논의와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20년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에 인간안보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인간안보론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론 중심의 접근이 남북관계를 안보 중심으로 제한하여 국가안보 외의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과 둘째, 군사안보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어 군사안보 외의 다양한 영역과 공동의 관심주제들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기회를 봉쇄한다는 한계, 셋째, 국가와 군사주도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와 대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 넷째, 군사안보 중심의 국가안보는 대립과 갈등 외에 다른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10) 서보혁, 「한반도 인간안보 과제와 남북협력 방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12.4.25.).

이에 비해 인간안보론은 국가안보론 중심의 접근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고 확장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계 개선의 기획이 가능하게 한다. 인간안보론은 첫째, 국가는 물론 그 이외의 행위자들의 공평한 참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둘째,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중심에 두고 개인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셋째,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공동 이해증진을 핵심으로 두기 때문에 정전상태의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안보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첫째,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까닭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인간안보 개념을 강조할 경우, 국가의 존재와 역할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의 인간안보 논의는 국가역할을 경중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인간안보의 주체로서 국가가 다시 호명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서라도 인간안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유효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인간안보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정치 안보 등 여섯 가지 영역에서 남북한 대중의 삶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렌즈가 된다. 둘째, 인간안보는 기존의 안보 논의를 성찰하고 대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인간안보는 기본적으로 초국적,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안보’의 성격이 있고, 관련 분야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괄안보’의 성격을 띠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협력안보’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 대한 종합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북 간의 인간안보 증진 노력은 전면적인 관계개선 혹은 상호 체제의 개혁 이전에도 남북 간의 의지에 바탕을 두고 국제적 지원과 협력에 의해 추진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 황사, 조류독감, 식량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남북,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다른 의제들과의 높은 연계 속에서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안보 실천은 전통적 안보에 기반한 남북 간 대립과 한반도의 긴장을 견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모든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에 다가가는 경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발판으로 전면적인 자유 추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상의 접근법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는 남북한 인권협력 프레임¹¹⁾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만 독립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포괄적으로 또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북한인권 상황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

11) 이대훈, 「비갈등적 북한인권 개입」 (2008 제주인권회의 발표문, 2008.6.27.).

는 프레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일종의 협력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남북한 인권협력 체제의 구조

① 한국 인권단체들의 남북한인권협력 포럼
② 한반도 인권대사와 남북한 당국과의 대화
③ 남북한 정부 간의 인권대화 및 협의
④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 협의
⑤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권 기술협력 및 자문서비스
⑥ 남북한 인권교류에서 출발하는 국제적 인권교류 (인권교육, 인권학, 인권정책 등)
⑦ 민간단체들의 보고서 활동을 통한 초기 정보유통
⑧ 향후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남북한 인권모니터링의 정상화

이러한 인권협력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갈등적/평화적 인권개입의 단계들이 제안된 바 있어서 참고하였다.

표 2. 비갈등적/평화적 인권 개입의 단계

사업제목	과제	시민사회 역할	정부 역할
남북한 인권협력-대화 구상 포럼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의 인권론 검토 - 자유주의인권/사회주의인권 쟁점 정리 - 남북한 인권협력-대화 가이드라인 도출	- 평화지향적 탈미 북한인권 단체 참여 - 민간 공동기구 구성	- 국가인권위 협력
유럽연합/유엔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	- 느슨한 의견교환	- 관심 단체 참여	
북조선정부와 접촉 시도	- 가이드라인 전달		- 정부 협력
북조선정부와 인권대화	- 느슨한 의견교환	- 민간 공동기구	- 정부 협력
남북한 인권학술회의	- 중국 등 제3국에서 개최 - 의제를 톤다운, 학술행사로, 소수 전문NGO 초빙 - 학술자료 편찬 정례화	- 한국 학술기관이 주도 - 언론 작업	
기술협력자문 서비스 제안	- 대 유엔/한국 정부 활동 - 한국 정부와 UNHCHR에 제안	- 민간 공동기구에서 제안	
국가인권위와 기술협력자문 서비스 기획	-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규범 및 정책 자문서비스 제공안 작성, 한국 정부에 권고	- 민간 공동기구가 국가인권위에 제안, 협력	- 국가인권위 주도
‘남북한 인권교육협력 방안’	- 남북한 공동선언		- 남북한 정부
Korea인권교	- 남북한 인권교육 정책담당자,	- 민간 공동기구가	- 유네스코, 남북한

육 증진방안 워크숍	인권교육학자/연구자, 인권교육가, 남북한 및 국제 인권단체 참여 - 남북한 주최 기관이 공동 진행 - 상호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으로 진행.	제안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한국국가인권위공 동주관
유엔 인권위 새 결의안 제안	- 한국 정부,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기술협력 및 자문서비스 증진을 위한 결의안' 제출. 기존 결의안 대체. - 한국 정부 결의안 이행 비용 총당	- 민간 공동기구가 주도	- 국가인권위, 정부에 권고 - 민간 정책간담회 등 협의
남북 인권협력 추가제안	- 향후 추가사업, 정례화 제안	- 여론화	- 국가인권위, 공청회 개최
남북한 인권협력 구상포럼	- 1년 활동 평가 - 새 구상, 공동기구 확대 - 연구 분석·활동보고 병행	- 민간 공동기구 주최	- 장소,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인권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은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당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식 및 역량 차원의 간격을 점점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는 OHCHR의 필수적 활동 중의 하나”로 정의된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사회 인권개선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평화권을 적용하는 한반도 인권협력¹²⁾을 생각할 수 있다.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영역은 첫째,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지원, 둘째,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대상 자문 및 지원, 셋째,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넷째,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력은 국제사회와 북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북한에 대한 관여를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¹³⁾ 남북한 간에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하게 되면 이는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행동계획 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역량구축에서부터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¹⁴⁾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북한인권

12) 이대훈 외, 「북한인권정책연구: 제3세대 인권과 북한」 (통일연구원, 2019).

13) *Ibid.*, pp. 9-10, p. vii.

14) *Ibid.*, p. 98.

기술협력 방안은 크게 “인권의 정치적 특성, 유엔 인권기구의 특성,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 기술협력의 주체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¹⁵⁾

인권의 정치적 특성별 인권협력은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 간접적, 묵시적 인권 기술협력, 결과적 인권기술 협력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권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은 아래 표¹⁶⁾와 같다.

표 3. 인권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단계별 접근

비인권 분야 (결과적 인권 기술협력)	⇒	법치, 사법정의, 거버넌스 등 (간접적, 묵시적 인권 기술협력)	⇒	인권을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
----------------------------	---	--	---	--

이렇듯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은 기존 국제인권기구의 대북 권고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는 인권기술협력을 대폭 확장하고, 초기에 간접적 기술협력을 다각도로 전개해서 실질적 인권개선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 조약기구와 특별기구 등 다양한 국내외 행위자들과 다면적으로 협력하여, 법 개정, 거버넌스, 정책, 조사, 보고서 제출, 역량 교육과 훈련, 기획과 집행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남북한 인권협력을 체계화 하는데 기여한다.

15) *Ibid.*, pp. 85-91.

16) *Ibid.*, p. 86.

II.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1. 개설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권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부목표 전체에 걸쳐 반영된다. 따라서 SDGs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며, 유엔헌장과 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 역시 SDGs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유엔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와 인권 보호 기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기반을 달리하는 두 체계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유엔헌장에 기반한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에서 채택된 주요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기구 중심의 체계이다.

유엔헌장 기반체계는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의 주요 기관이 포함되며 특히 2006년 총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HRC)의 주요 제도—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등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핵심 인권 제도이다. 이외에도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임시로 설치되는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활동 등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검토되고 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 이하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이래 매년 북한인권 상황 결의가 채택되고 있다.¹⁷⁾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제60차 회기에서 첫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이후 거의 매년 관련 결의가 채택되고 있다.¹⁸⁾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권이사회 결의는 특별절차 중 하나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과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인권이사회는 결의 제22/13호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

17)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3/1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RES/2003/10 (16 April 2003).

18) 유엔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와 유엔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목록은 다음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fa.go.kr/www/wpge/m_3995/contents.do> (검색일: 2020.10.15.).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설치를 결정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주요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방문, 북한이탈주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1991년에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인 UPR을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했다.

유엔 인권조약 기반체계는 9개의 핵심 인권조약¹⁹⁾과 10개의 인권조약감시기구(위원회)²⁰⁾로 이뤄진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핵심 인권조약을 비준했고, 회원국의 80%는 4개 이상의 인권조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1981년 9월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을 비준한 이래 2020년 10월 현재까지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5개의 핵심 인권조약과 1개의 선택의정서를 가입 또는 비준했다.

북한은 1997년 ‘차별금지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²¹⁾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최초로 채택²²⁾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했으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년 9월 23일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²³⁾

19) 9개의 핵심 인권조약은 다음과 같다: 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1966), ②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 1966), ③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④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1984), ⑥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CRC, 아동권리협약, 1989), ⑦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CMW,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⑧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장애인권리협약, 2006), ⑨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PED, 강제실종협약, 2006) 이 중 일보 조약은 선택의정서로 특별 주제에 대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가 그러한 예이다.

20) 9개의 핵심 인권조약 각각의 위원회와 고문방지소위원회까지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조약상 권리 이행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21) ‘차별금지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은 1999년에 ‘인권증진보호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로 변경됐다.

2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3/1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RES/2003/10 (16 April 2003).

23) 이후 자유권위원회는 1997년 제61차 회기에서 발표한 ‘일반논평 26: 의무의 지속’에서 “국제법은 동 규약을 비준하거나 승인 또는 승계한 국가가 규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확고히 했다.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General comment No. 26: Continuity of Obligations*, UN Doc. CCPR/C/21/Rev.1/Add.8/Rev.1 (8 December 1997), para. 5.

북한은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자유권위원회 활동에 자연스레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했다.

이하에서는 유엔헌장 기반체계와 인권조약 기반체계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제적 평가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조사 및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사회의 결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특별절차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등 각종 북한인권 관련 공식 문서상의 권고 사항을 분석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제인권조약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남북한 협력방안의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인권보장체계와 국제인권기준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유엔헌장기반 인권메커니즘

가. 인권이사회

2006년 설립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는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 이하 인권위원회(CHR))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보장과 이행을 위해 2006년 설립됐다.²⁴⁾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 채택, UPR,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²⁵⁾ 특히, 2013년 3월, 인권이사회 결의 제22/13호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이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로서 인권이사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였다.²⁶⁾

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uman Rights Council* (15 March 2006), UN Doc. A/RES/60/251 (3 April 2006) (이하 GA Res. 60/251). 유엔인권이사회의 설립 배경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각수,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06), pp. 89-112.

25)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와 북한-보편적정례검토(UPR), 특별절차,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3. 11), pp. 7-53.

26)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2,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L.19 (18 March 2013); 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의의 및 과제”, 『Online Series』, CO 13-09, (통일연구원, 2013). <<http://www.kinu.or.kr/upload/neoboard/DATA01/co13-09.pdf>> (검색일: 2020.1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는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2003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올해 2020년 6월, 제43차 인권이사회 정기 회기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채택됐다.²⁷⁾ 인권이사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과 특히 무엇보다도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 전체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다.²⁸⁾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관련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코로나19가 유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위협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시 북한에 대한 적시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인도적 지원주의 기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북한 정부가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점을 우려했다.²⁹⁾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체계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독립된 필요 평가(independent needs assessments)에 근거하고, 국제기준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³⁰⁾ 본 결의는 또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조율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했다.³¹⁾

이번 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이사회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접근성이 좋은 상설 공간에서의 만남, 정기적인 서면 교환, 화상을 통한 상봉 및 영상 메시지 교환을 포함하여, 관련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접촉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³²⁾

이 외에도 이번 결의는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북한이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 특히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는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³³⁾ 또한, 북한 내에서 북한 정부가 자행

27)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43/25,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ty-third session, 24 February-13 March and 15-23 June 2020, UN Doc. A/HRC/RES/43/25 (29 June 2020).

28)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43/25, *Ibid.*, Preambular paragraphs.

29) *Ibid.*, Preambular paragraphs.

30) *Ibid.*, O.P. 28.

31) *Ibid.*, O.P. 29.

32) *Ibid.*, Preambular paragraphs.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세부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³⁴⁾

한국 정부는 2003년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2020년 올해까지 매년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에 동참했다. 지난 16차례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서 인권이사회(인권위원회) 이사국이 아니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두 차례를 제외로 하고, 기권 2회, 불참 1회 외에는 모든 결의에 찬성했다.³⁵⁾ 또한, 2008년부터는 2018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찬성했다.³⁶⁾

표 4. 인권위원회(CHR) 북한인권 결의

구분	인권위원회(CHR)		
연도	2003년 (제59차)	2004년 (제60차)	2005년 (제61차)
표결 결과(찬:반:기권)	28:10:14	29:8:16	13:9:14
한국 정부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이사국여부 ³⁷⁾	○	○	○

<출처: 필자 작성, 데이터 출처 및 참고: 유엔 OHCHR>

33) *Ibid.*, Preambular paragraphs.

34) *Ibid.*, O.P. 1.

35) 무투표 결의 채택의 경우, 적극적인 개별 국가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무투표 결의 채택에 동참한 것으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36) 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작성일: 2020-06-22,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2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2> (검색일: 2020.10.20.).

37) 한국은 1993년부터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변경되기까지 인권위원회 이사국을 역임했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표 5.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표결 결과 및 한국 정부의 입장

구분	인권이사회(HRC)						
연도	2008년 (제7차)	2009년 (제10차)	2010년 (제13차)	2011년 (제16차)	2012년 (제19차)	2013년 (제22차)	2014년 (제25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	무투표	30:6:11
한국 정부 입장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이사국여부 38)	○	○	○	○	×	○	○

구분	인권이사회(HRC)						
연도	2015년 (제28차)	2016년 (제31차)	2017년 (제34차)	2018년 (제37차)	2019년 (제40차)	2020년 (제43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7:6:14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한국 정부 입장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	(찬성)	
이사국여부	○	○	○	○	×	○	

<출처: 필자 작성, 데이터 출처 및 참고: 외교부³⁹⁾, 통일부⁴⁰⁾, 유엔 OHCHR>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회원국 간의 논의는 인권이사회(舊 인권 위원회) 결의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결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와 마찬가지로 2008년 제63차부터 2018년 제69차까지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과 정권 교체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기권에서 찬성으로 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3년 차인 2019년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

38) 한국은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2020-22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역임했다. (인권이사회 규정상 3회 이상 연임 불가) OHCHR,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membership.aspx>> (검색일: 2020.10.15.).

39) 외교부, 북한인권 문제. <http://www.mofa.go.kr/www/wpge/m_3995/contents.do> (검색일: 2020.10.15.).

4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0&dicaryId=93&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20.10.15.).

할 만 한 점은 한국 정부가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했지만, 결의 채택에는 찬성했다는 점이다. 즉,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있지만, 2008년 이후 인권이사회와 총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공조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구분	유엔 총회							
연도	2005년 (제60차)	2006년 (제61차)	2007년 (제62차)	2008년 (제63차)	2009년 (제64차)	2010년 (제65차)	2011년 (제66차)	2012년 (제67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103:18:60	112:16:55	무투표
한국 정부 입장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구분	유엔 총회							
연도	2013년 (제68차)	2014년 (제69차)	2015년 (제70차)	2016년 (제71차)	2017년 (제72차)	2018년 (제73차)	2019년	2020년
표결 결과 (찬:반:기권)	무투표	116:20:53	119:19:48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한국 정부 입장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출처: 필자 작성, 데이터 출처 및 참고: 외교부⁴¹⁾, 통일부⁴²⁾,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기타 국제 인권운동 논의에서 만연한 정치화, 선별 및 이중 잣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한 걸림돌에 해당한다고” 고 평가하고, “매년 적대세력과 일부 서방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반 북한인권 결의를 전격 통과시키고 허구에 불과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는다” 고 비난했다.⁴³⁾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부정적 태도 때문에 남북한 양자협력에서 북한의 협조적 태도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로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내부적으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있

41) 외교부, 북한인권 문제. <http://www.mofa.go.kr/www/wpge/m_3995/contents.do> (검색일: 2020.10.15.).

4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wldgDicary.do?pageIndex=10&dicaryId=93&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20.10.15.).

43) UN Human Rights Council,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33/PRK/1 (20 February 2019), p. 14.

어 국제 인권적 기준과 원칙을 검토할 때에는 인권이사회와 총회 결의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도모할 때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협력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은 모든 회원국의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CHR)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중기준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⁴⁴⁾ 이에 따라 설립당시를 기준으로 192개(현재는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데, 1년 3회(2, 5, 12월), 회당 2주간 16개국씩, 총 4년(현재는 4년 6개월)에 걸쳐 검토한다. 이 제도는 인권위원회(CHR) 당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논란이 제기되었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별 정기보고서 심의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UPR 제1주기는 2008년 4월 7-18일에 있었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 3-14일의 제1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제2주기는 2012년 5월 21일에 시작하여 2016년 11월에 종료하였으며, 제3주기는 2017년 5월에 시작하여 2022년 1-2월에 종료할 예정이다.⁴⁵⁾ 북한은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UPR을 했다. 제1차 검토는 제6차 실무그룹 회기(2009년 11월 30일~12월 11일) 동안 진행됐으며, 2009년 12월 7일 제11차 회의에서 상호대화가 실시됐다. 제2차 UPR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됐으며, 제3차 검토는 2019년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됐다.

1) 제1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2009년 12월 7일 진행된 제1차 UPR 상호대화에 참여한 52개국은 북한에 대해 167개의 권고를 제출했고, 북한은 이날 즉시 50개 권고를 즉각 거부 의사를 표하고 나머지 117개를 검토한 후 북한의 입장을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⁴⁶⁾ 북한은 이후 제출한 UPR 이행보고서에서 117개 권고 중 81개는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6개

44) 우종길, “유엔인권이사회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적정기검토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pp. 345-364.

45) OHCHR, Cycl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ages/CyclesUPR.aspx>> (검색일: 2020.10.20.).

4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3/13 (4 January 2010), https://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6/KP/A_HRC_13_13_PRK_E.pdf (검색일: 2020.11.20.).

권고는 부분수용, 15개 권고는 주목(noted), 나머지 15개의 권고는 거부했다.⁴⁷⁾

북한은 UPR 제도 및 인권 대화와 협력은 수용하지만,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 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권고의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특별절차에 관련 권고가 30건, 인권조약 가입·비준 및 기타 국제규범 관련 28건, 여성의 권리 관련 18건, 식량권 관련 17건, 조약기구 관련 15건, 기타 나머지 등의 순서이다.⁴⁸⁾

북한이 수용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협조 및 추가 가입 관련
- 영아, 임산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인권 보호 관련 입법 및 조치
-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 식량권 및 교육 관련 개선 조치
-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관련 조치
- 이산가족 상봉 노력
-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 보건과 교육, 식량 문제 관련 국제협조

반면, 북한이 거부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UN 분야별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공개처형 및 사형제 폐지
- 고문 및 구금시설 관련 개선 조치
- 사법독립성 관련 조치
- 정치범 석방 조치
- 종교자유 보장
- 외부정보 접근 보장
- 납북자 문제 해결
- 가족연좌제 폐지
- 탈북자 처벌 관련 개선 조치
- 아동군사훈련 폐지
- 인신매매 관련 개선

47) UN Human Rights Council, Position of the DPRK on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its first cycle UPR.

<http://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19/KP/A_HRC_WG.6_19_PRK_1_DemocraticPeoplesRepublic_of_Korea_Annex_E.doc> (검색일: 2020.10.20.).

48) 권고별 이슈관련 통계는 UPR-Info Database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UPR-Info Database of Recommendations: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 (검색일: 2020.10.20.).

북한 최종 성명에서 성의의 권고는 격려와 지지의 표시로 간주할 것이라고 본 반면,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인권과는 무관한 부정직한 의도에 근거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⁴⁹⁾ 아울러 주권국으로서 어떤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더 검토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⁵⁰⁾

2) 제2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2014년 5월 1일에 진행된 북한의 제2차 UPR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현재 3차까지 진행된 UPR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고, 권고의 수도 268개로 가장 많이 제출됐다.⁵¹⁾

북한은 최종 의견을 통해 UPR을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자 전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UPR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제2차 검토에서 제출된 여러 국가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입장을 표했다.⁵²⁾

북한은 82개국으로부터 총 268개의 권고를 받았으며, 83개의 권고에 대해 정치적 동기를 갖고 북한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거부했다. 나머지 185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13개의 권고를 수용했으며, 4개는 부분수용, 58개는 주목, 나머지는 10개는 거부했다.

북한은 4개의 부분 수용 권고와 관련하여, 하나의 권고 안에 수용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권고를 작성한 국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편견으로 인한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권고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⁵³⁾

권고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사법(45건), 구금 관련(42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가입을 비롯한 조약 등 국제문서 관련(41건), 특별절차(31건), 여성의 권리(29건) 등이다.⁵⁴⁾

4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its thirteenth session, UN Doc. A/HRC/13/56 (8 February 2011), para. 639.

50) *Ibid.*, para. 644.

51)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7/10 (2 July 2014),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4/072/22/PDF/G1407222.pdf?OpenElement> (검색일: 2020.11.20.).

5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7/10/Add.1 (12 September 2014), paras. 1-3.

53) *Ibid.*, para. 6.

54) UPR Database of Recommendations.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 (검색일:

북한이 수용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권조약 준수와 협조 및 추가 가입
- 영아, 임산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인권보호 관련 입법 및 추가 조치
- 인권침해 검토를 위한 국가제도 구축
- 식량권 및 교육 관련 개선 조치
-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관련 조치
-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 건강, 교육, 식량 관련 국제협조
- 인권 문화와 교육 증진

이 외에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및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보장 등의 권고를 수용했다.

반면, 북한이 거부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가입과 협조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 권고 수용 및 협조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폐지
- 공개처형 및 사형제 폐지
- 고문 및 구금시설 관련 개선 조치
- 사법독립성 관련 조치
-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성분 분류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제3차 주요 권고 사항과 북한의 입장

북한의 제3차 UPR은 2019년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됐다. 북한은 UPR 메커니즘이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동등하게 검토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⁵⁵⁾

2020.10.20.).

55)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제3차 UPR에서 262개의 권고가 제시됐고,⁵⁶⁾ 북한은 이중 63개를 수용하지 않기로 즉각 의견을 표하고, 나머지 199개 권고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⁵⁷⁾ 북한은 199개 권고 가운데 132개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의 전반적인 현실에 맞춰 132개 권고를 이행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⁵⁸⁾ 나머지 권고 중 56개 권고에 대해서는 주목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권고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조건과 환경이 충족될 때 해당 권고의 전면 이행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1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내법 및 전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 이 11개 권고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⁵⁹⁾

북한이 수용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권조약의 가입 · 비준 촉구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 국제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 허용⁶⁰⁾
- 이산가족 상봉 노력
-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치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반면, 북한이 거부한 권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별절차 협력-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및 접근 협조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 특별절차 관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조
- 성분 차별 철폐
- 북한 교정시설 접근 요구
- 강제노동, 아동노동 철폐
- 납북자, 전쟁포로 문제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para. 1.

5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5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58) *Ibid.*, paras. 3-5.

59) *Ibid.*, paras. 6-7.

60) 북한은 유엔과 기타 국제 인도적 지원 기구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아프가니스탄의 권고(126.56)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결정한 반면, 유사한 내용의 미국 권고는 거부했다.(126.57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단체가 북한 내에서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빈곤층 모두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미국), *Ibid.*, para. 126.

- 정치범 석방 및 정치범수용소 폐지
- 연좌제 폐지
- 언론 독립성 제고
- 시민 대상 감시와 검열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가입

제3차 UPR에서 262개의 권고는 사실상 17개 SDGs 중 어느 한 개 이상의 목표와 연관된다. 262개의 권고와 SDGs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제3차 북한 UPR의 「Matrix of recommendations」 문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제3차 UPR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을 찾으면, 262개의 권고 중 약 30%가 SDG16과 관련된다. SDG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내용을 한다. 다음으로 권고의 약 18%가 SDG2, 즉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와 관련된다. 권고의 약 13%는 성평등을 내용으로 한 SDG5에 관한 내용이며, 권고의 약 8%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한 SDG8과 관련된다. 또한 권고의 약 6%는 건강과 웰빙에 관한 SDG3을 내용으로 한다.

그림 1. 북한 제3차 UPR 권고와 SDG 목표 사이의 연관성



<출처: OHCHR UPR 인포그래픽,⁶¹⁾ 필자 변형>

북한에 대한 국가들의 권고와 SDGs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 증진과 정의 보장,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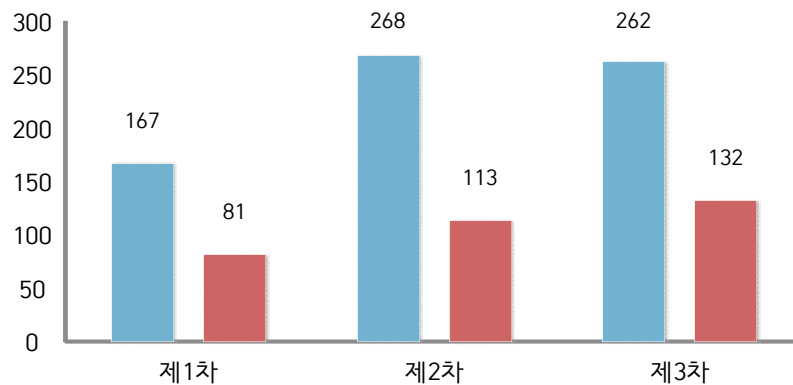
4) 시사점

UPR을 통해 보여준 북한 정부의 태도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운영에 대해 시사

61) 본 이미지의 원본 자료는 OHCHR의 제3차 북한 UPR 인포그래픽 자료에 기반하여 필자가 변형한 것임을 밝힌다. OHCHR, UPR, DPRK, Third Cycle, Infographic, <https://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Session33/KP/Infographics3rdCycle_DPRK.pdf> (검색일: 2020.10.20.).

하는 바가 크다. 북한 정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환영과 존중을 표하면서도 막상 검토 결과에 대해 적극적 반대 표시와 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제도가 과연 북한인권의 개선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UPR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검토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그 역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림 2. 북한의 UPR 권고 수용 경향



<출처: 필자 작성>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UPR을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의 장에 참여한 다면 분명 북한인권의 개선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자 다수가 UPR에 참여함으로써 피검토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회원국의 UPR에 참여하는 회원국으로서 인권 침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부의 인권 인식의 변화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UPR 제도 자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UPR 결과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북한의 제3차 UPR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북한이 수용한 권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추후에 북한이 주목하거나 또는 거부한 권고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과 이들 기구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북한 또는 남북 간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북한 제1차에서 3차까지 UPR에서 나온 권고를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북한 제1-3차 UPR 이슈별 권고

	제1차		제2차		제3차	
1	특별절차	30건	사법	45건	국제규범 비준	46건
2	국제규범 비준	28건	구금	42건	아동의 권리	35건
3	여성의 권리	18건	국제규범 비준	41건	특별절차	32건
4	식량권	17건	특별절차	31건	여성의 권리	32건
5	아동의 권리	17건	여성의 권리	29건	구금	29건
6	인권조약기구	15건	표현의 자유	24건	건강권	23건
7	기타	14건	사형제도	23건	기술지원·협력	23건
8	사법	12건	식량권	21건	교육권	22건
9	구금	11건	아동의 권리	19건	고문 등	21건
10	고문 등	10건	고문 등	19건	사형제도	17건
11	사형제도	9건	UPR 절차	18건	장애인권리	17건
12	이동의 자유	9건	건강권	17건	식량권	17건
13	건강권	8건	인권조약기구	16건	노동권	15건
14	기술지원·협력	7건	기술지원·협력	15건	표현의 자유	14건
15	표현의 자유	6건	강제실종	14건	인권조약기구	13건
16	인권 일반	6건	사회권일반	11건	사법	12건
17	종교·사상의자유	5건	교육권	11건	발전권	10건
18	발전권	5건	노동권	10건	종교·사상의자유	9건
19	교육권	5건	인권교육·훈련	9건	인신매매	8건
20	UPR 절차	5건	장애인권리	6건	UPR 절차	8건
21	장애인권리	4건	종교·사상의자유	6건	강제실종	7건
22	사회권 일반	4건	국가인권기구	6건	인종차별	7건
23	집회·결사의 자유	4건	식수 및 위생권	6건	언론의 자유	6건
24	시민사회	3건	이동의 자유	4건	인권교육·훈련	6건
25	초사법적 사형	3건	기타	4건	기타	6건
26	인권교육·훈련	3건	인종차별	4건	사회권 일반	5건
27	인종차별	3건	발전권	4건	국제인도법	5건
28	인신매매	3건	언론의 자유	3건	인권 일반	4건
29	자유권 일반	2건	인권 일반	3건	국가인권기구	4건
30	국가요원의인권침해	2건	시민사회	2건	환경과 인권	3건
31	이주민	2건	집회·결사의 자유	2건	빈곤	3건
32	난민	1건	이주민	2건	시민사회	2건
33	강제실종	1건	빈곤	2건	집회·결사의 자유	2건
34	언론의 자유	1건	주거권	2건	인권옹호자	2건
35	에이즈 감염병	1건	인신매매	2건	프라이버시	2건

36	공공 안보	1건	선거	1건	주거권	2건
37	식수 및 위생권	1건	환경과 인권	1건	자유권 일반	1건
38			초사법적 사형	1건	초사법적 사형	1건
39			인권옹호자	1건	불처벌	1건
40			국가요원의인권침해	1건	원주민	1건
41			불처벌	1건	이주민	1건
42			국제인도법	1건	소수자 권리	1건
43					SDGs	1건
44					비분류	22건
	합계	167건	합계	268건	합계	262건

<출처: 필자 작성, 데이터 출처: UPR-Info Database⁶²⁾>

가장 최근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특별절차, 여성의 권리, 구금, 건강권, 기술지원·협력, 교육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사형제도, 장애인 권리, 식량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의 인권 사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⁶³⁾ 이 중에서 북한은 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건강권·교육권·식량·영양에 대한 권리 분야에서 기술지원 및 협력,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이행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발전권 등의 사안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⁶⁴⁾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인권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래 표에서 보듯, 북한 정부는 제3차 UPR에서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건강권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시 대표단에 장애인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 등 한국 정부의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권

62) 권고별 이슈 관련 통계는 UPR-Info Database에 근거한 것으로, UPR-Info의 자료 분류가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나, 북한의 UPR 권고의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다. UPR-Info Database of Recommendations: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 (검색일: 2020.10.20.).

63)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64)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고 이행을 위해 북한에 남북한 협력을 한국 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표 8. 북한 UPR 제1-3차, 한국 정부의 권고 사항과 수용 여부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 사항	수용 여부
제1차	42.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유엔인권메커니즘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 권을 부여함으로써 협력하라.	거부
	75.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라.	수용
제2차	125.18. COI의 권고 사항,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를 수락하고 충실히 이행하라.	거부
	125.48. 납북자, 전쟁 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라.	거부
	125.59. 정치범 수용소 폐쇄하고,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철폐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기구와 협력하라.	거부
제3차	126.11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라.	수용
	126.109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하라.	수용
	126.149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라.	수용
	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라.	수용

<출처: 필자 작성>

다. 특별절차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 메커니즘 중 하나로, 1970년대 인권위원회(CHR) 시절에 시작됐다. 특별절차는 국가나 영토에서 특히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특별절차는 (Special Rapporteur),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또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 여러 형태의 특별절차수임자(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⁶⁵⁾에 의해 수행된다.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당시 유엔 회원국들

65)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가 기존에는 “특별절차보고관”으로 흔히 번역되었으나 특별절차의 수임자(mandate holder)에는 특별절차보고관(special rapporteur)외에도 전문가그룹, 실무그룹 등이 있어,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를 “특별절차보고관”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외교부의 “다자외교 전문용어 개선” 방안에 따라 “특별절차수임자”로 번역한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다자외교 전문용어 개선”, 2008. 8. 28.

이 이 절차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⁶⁶⁾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 제도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20년 10월 기준, 북한을 포함한 12개 국가별 특별절차와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 등 총 56개의 특별절차가 운영 중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인권위원회(CHR) 당시 결의 2004/13에 근거하여 처음 설치되었다.⁶⁷⁾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4년 7월 비티 문타폰이 초대 특별보고관이 임명⁶⁸⁾되어 2010년 6월까지 활동하였으며 그를 이어 2010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8월, 토머스 오헤아 키타나(Tomas Ojea Quintana)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 8월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앞서 북한의 UPR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은 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주장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와 그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200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출 활동을 살펴보면 인권이사회 설립 이전인 2005년 1월과 2006년 1월 인권위원회(CHR)에 2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⁶⁹⁾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인 200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인권이사회에 13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⁷⁰⁾ 유엔총회에는 2005년부터 연례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까지 9월까지 총 15차례의 보고서가 나왔다.⁷¹⁾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164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54> (검색일: 2020.10.20.).

66)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uman Rights Council*, UN Doc. A/RES/60/251, (3 April 2006), Operative Paragraph (이하 O.P.) 6.

67)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RES/2004/13 (15 April 2004).

68) UN ECOSOC Decision 2004/221 (15 June 2004).

6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2006/35 (23 January 2006, by Vitit Muntarbhorn); UN Doc. E/CN.4/2005/34 (10 January 2005, by Vitit Muntarbhorn).

7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by Marzuki Darusman); UN Doc. A/HRC/19/65 (13 February 2012, by Marzuki Darusman); UN Doc. A/HRC/16/58 (21 February 2011, by Marzuki Darusman); UN Doc. A/HRC/13/47 (17 February 2010,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HRC/10/18 (24 February 2009,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HRC/7/20 (15 February 2008,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HRC/4/15 (7 February 2007, by Vitit Muntarbhorn).

71)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7/370 (13 September 2012, by Marzuki Darusman); UN Doc. A/66/322 (24 August 2011, by Marzuki Darusman); UN Doc. A/65/364 (14 September 2010, by Marzuki Darusman); UN Doc. A/64/224 (4 August 2009,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63/322 (22 August 2008, by Vitit Muntarbhorn);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권 침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9년에 북한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가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의 중요한 활동방식 중 하나인 통보(communication)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정(petitions) 또는 정보를 받아 관련 정부와 소통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권리구제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또한 단독 또는 합동으로 2010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6개의 통보를 북한 정부로 발송했으며,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북한이 답변을 보냈다.⁷²⁾ 이하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권고 사항을 살펴본다.

■ 유엔 총회 제74차 회기 제출 보고서 (2019년 9월)

이 보고서는 총회 결의 제73/180호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현재 한반도 내 정치, 평화, 안보 및 비핵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최근 인권상황 변화를 개괄한다.⁷³⁾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고려되길 희망하며, 평화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를 재차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북한 및 주요 당사자에 권고를 제시한다.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식량권, 정보 및 소통의 자유, 자유의 박탈, 북한 이탈자 취약성, 복송 위험 및 가족 분리 피해자의 어려움 등의 주제 하에 각각의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했다.

특별보고관은 결론을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⁷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자국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들이 가족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⁷⁵⁾ 한편, 한반도 내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 및 여타 국가가 평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취한 조치가 유의미함을 강조하며, 다만, 북한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유의미한 평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⁷⁶⁾

특별보고관은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 한국, 중국, 국제사회, 유엔,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 각각 다음

Doc. A/62/264 (15 August 2007,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61/349 (15 September 2006, by Vitit Muntarbhorn); UN Doc. A/60/306 (29 August 2005, by Vitit Muntarbhorn).
72) UN OHCHR,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Results>> (검색일: 2020.10.20.).
73)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4/275/Rev.1 (20 September 2019).
74) *Ibid.*, para. 64.
75) *Ibid.*, para. 65.
76) *Ibid.*, para. 66.

과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권고]

- 식량권과 식수 및 위생권을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엔과 인도적 지원 단체에게 제한 없는 접근을 확대 허용,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
- 일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형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며 만연한 부패를 척결
- 통계 및 기타 데이터를 연구하고 공개하여 국제 제재 조치가 주민의 경제권 및 사회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가입을 검토
- 형법 및 기타 법규를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재정의하고 정보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
- 개인 사생활을 감시 및 관찰하는 조치를 완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 관리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 감시기구를 초대하여 관리소를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보위성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체포, 심문, 기소 및 구금을 담당하는데 적용하는 내부 규정, 법령 및 절차를 공개
- 연좌제에 따라 수감된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정치범 사면을 고려한다. 이는 장기간 이어질 절차로 보아야 하며 동시에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
- 강제실종 혐의를 소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소재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
-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을 포함하여 현재 평양에 구금된 외국인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영사 접근을 허용
- 법과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며, 송환된 이들이 송환 이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 제3차 UPR에서 제시된 권고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 국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등 인권최고대표와 협력
- 국가 접근 허용을 포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
-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절차를 시작할 것.

[한국에 대한 권고]

- 현재 진행 중인 평화 및 비핵화 협상에 인권을 포함할 것.
- 책임 규명 의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북한 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다양한 관계자와 협의할 것.

- 북한 주민의 송환을 방지하도록 노력 강화
-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
- 북한과 경제적·인도적 협력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인권에 기반하며,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과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
- 가족 분리 피해자의 재결합과 관련하여 인권을 근간에 두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
-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북한과의 인적교류가 용이하도록 할 것.

[중국에 대한 권고]

- 북한 이탈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
-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거쳐 자신이 선택한 국가로 망명하거나 이동하여 정착하려는 북한 주민을 위한 사법 및 정책적 틀의 마련을 검토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사법 및 정책적 틀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
- 유엔난민기구가 관련 국경 지대에 방문하여 북한 이탈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평화 및 비핵화 논의에 인권을 반영하여 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유엔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비롯한 기타 지원을 확대할 것.
-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민사회단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 내 책임 규명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

[유엔에 대한 권고]

- 유엔 차원의 공조를 통해 한 목소리로 평화 대화에 인권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
- 북한과 인권과 관련된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반드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당국 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북한 내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권고]

-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지속해서 관찰 및 기록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국 법규와 정책 변화를 촉구할 것.

-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평화 및 비핵화 논의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촉구할 것.
- 인도적 지원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

■ 유엔 총회 제75차 회기 제출 보고서 (2020년 10월)

이 보고서는 총회 결의 제74/166호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한반도 평화·안보·비핵화를 향한 진전 등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⁷⁷⁾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시키고 북한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관련해 북한이 “우리나라는 감염병 상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평가가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⁷⁸⁾ 특별보고관은 중국과의 국경 폐쇄, 도시와 지역 간의 여행 제한, 엄격한 검역 조치, 인도적 지원 활동의 축소 등 북한의 조치가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광범위한 식량 불안정, 기아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미 영양이 부족한 인구, 특히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현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더욱 제한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더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전문 지식,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그리고 인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체와 함께 해야 “자립”(self-sufficiency)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⁷⁹⁾

특별보고관은 또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단결과 협력의 정신을 통해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분쟁의 평화적 종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⁸⁰⁾ 그

77)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5/388 (14 October 2020).

78) *Ibid.*, para. 47.

79) *Ibid.*, para. 48.

80) *Ibid.*, para. 49.

는 유엔이 북한의 평화와 인권, 발전,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면 비핵화, 더 나은 협력, 접근성 증대, 인권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과 조건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그런 점에서 원칙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만이 평화협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북한, 한국, 중국, 국제사회, 유엔,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

[북한에 대한 권고]

- 식품, 물, 위생 및 주거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보장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국제협력을 포함한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긴급히 투자할 것.
- 코로나19 예방조치가 주민의 인권, 특히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
- 바이러스 대항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요구 및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치의 영향 완화를 요구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할 것.
- ‘교도소 및 기타 폐쇄적 환경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 성명’ (UNODC, WHO, UNAIDS, OHCHR)의 지침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하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구금자의 석방을 고려할 것.
-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만연한 부패에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
- 노동 선택의 자유와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포함하여, 최소 인권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체계 개혁을 수행할 것.
- 핵심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현행 노동 제도를 검토할 것.
- 국제적 제재가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 및 기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것.
- 유엔과 인도적 지원 단체에게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적절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혐의를 해결하고, 실종 친인척의 운명과 소재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현재 평양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외국인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하여 처우할 것.

- 법과 실무 모두에서 출입국에 관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송환된 사람들이 송환 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
-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국내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를 개시하고, 국가 방문을 초청할 것.

[한국에 대한 권고]

- 북한인권과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및 행정감사를 보류하고, 투명성 향상 및 시민 공간 보호를 위해 수용 가능한 조치에 합의할 것.
- 인권을 북한과의 협상에 통합시킬 것.
-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해 북한과 협력 할 것.
-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할 것.
- 북한에서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를 북한과의 경제 및 인도주의 협력에 통합시킬 것.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

[중국에 대한 권고]

-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주민에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할 것.
- 중국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선택한 국가에 비호를 구하거나 정착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고려할 것.
-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채택을 고려할 것.
- 북한이탈주민이 박해로부터 비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대표사무소 직원이 관련 국경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 중국, 북한, 한국, 미국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유엔의 다른 회원국의 참여하여, 인권 증진 및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 평화와 번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것.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관해, 제재를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의 합의를 시급히 재검토할 것.
- 코로나19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지원할 것.
- 유엔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가 북한에서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할 것.

- 평화협정을 진전시키고 인권상황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활용할 것.
-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행위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에서의 책임 규명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유엔에 대한 권고]

- 북한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
- 코로나19 예방조치 맥락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
- 북한과의 인권 관련 기술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것.
- 북한의 책임 규명을 계속할 것.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권고]

-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서화하며, 그 정보를 책임규명 노력의 지원과 북한의 법과 정책의 변화를 옹호하는 데 활용할 것.
-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평화 협정의 진전과 인권을 협상에 통합하도록 옹호할 것.
- 필요한 경우,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시민 공간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건설적인 참여를 모색할 것.

2)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quilar)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국가방문을 허용했다. 인권위원회(CHR) 시절에 특별절차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모든 특별절차를 통틀어 최초의 북한 방문이다.⁸¹⁾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주요 일정을 마친 후 5월 8일 북한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예비견해 및 권고를 발표했고, 2018년 2월, 제37차 인권이사회 회기에 맞춰 정식보고서를 제출했다.⁸²⁾

81)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임예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Online Series』, CO 17-14, (통일연구원, 2017).

8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her visi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7/56/Add.1 (8 December 2017).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법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접근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이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적·정책적 틀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포괄적으로 이행 및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장애를 포괄하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포용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⁸³⁾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 법적 및 정책적 틀에 관한 권고와 장애인 인권상황 정보수집, 낙인과 혐오, 접근성, 참여, 교육, 사회보장, 건강, 법적 능력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 권고를 제시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공여자 및 국제협력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국제협력]

- 포괄적인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장애 관련 전문 지식, 역량 강화 및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투자할 것.
- 모든 전략, 평가 및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권리를 주류화하고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할 것.
-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노력을 지원할 것.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은 북한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 신장과 개선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류와 협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한의 교류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교류 방식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우선 목표 중 하나로 하여 SDGs) 협력 방안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시사점

UPR 제도와 달리, 특별절차에서는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중국, 유엔과 시민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SDGs를 통한 북

83) *Ibid.*, para. 87.

한인권 개선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 유엔과 시민단체에 대한 권고가 있다. 국가별, 주제별 특별절차수입자는 해당 분야 인권의 독립전문가로서 원칙적으로는 비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이들 권고를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이유다. 북한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방문을 허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들을 주제별 특별절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 볼 국제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등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들 중 물, 위생 및 영양, 주거, 건강에 권리 등 북한이 수용 입장을 보이는 영역의 주제별 특별절차수입자가 북한을 방문해 해당 권리와 관련한 북한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면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UPR은 북한이 비교적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권고에 대해 수용 또는 거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절차를 통해 도출된 권고가 UPR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한편, 2020년 보고서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코로나19, 그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지식,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그리고 인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응답이 요구된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상황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유엔의 관련 절차에서 진지하게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공간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를 바탕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에 주목하며, 이것이 분단체제 하 남·북한의 억압적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한국 사회에서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3년 3월 21일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이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됐다.⁸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가장 최근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적시한 9가지의 북한인권 침해 사안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⁸⁵⁾ 동 조사위원회는 2013년 9월에 개최되는 제24차 인권이사회 및 제68차 유엔총회에서 구두 보고했으며, 2014년 2월 17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으며, 2014년 제25차(3월 3일~28일) 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서(written report)를 제출했다.⁸⁶⁾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권고이다.⁸⁷⁾ 본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다만, 2014년 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가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의 권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 중에서 남북한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목한다.

표 9.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일부)

91.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 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92.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과 관련국들은 국제인권법상 관련

84)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L.19 (18 March 2013); 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의의 및 과제”, 『Online Series』, CO 13-09, (통일연구원, 2013). <<http://www.kinu.or.kr/upload/neoboard/DATA01/co13-09.pdf>> (검색일: 2020.10.20.).

85) 이 이외에도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등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UN Doc. A/HRC/22/L.19 (18 March 2013), para. 5

8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7 February 2014) (이하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더 상세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UN Doc. A/HRC/25/CRP.1을 참조.

87)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para. 94.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93.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 및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94. 국제공동체 및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h)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i) 관련국들은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을 경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자 다자 지원을 하는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의 추진을 권고하고 그 일환으로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 이에 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1일 결의 31/18을 채택하여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범죄 피해자에게 진실과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전문가그룹 임명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했다. 인권최고대표는 2016년 9월에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와 방글라데시의 사라 호세인(Sara Hossain)을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의 독립전문가로 임명했고, 이들의 보고서는 2017년 3월 13일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제출됐다.⁸⁸⁾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과 권고를 제시하고 있

8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UN Doc. A/HRC/34/66/Add.1 (24 February 2014).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서문, II. 위임권한 및 방법론, III.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관련 기존 권고, IV. 책임규명 개념, V.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VI. 결론 및 권고.

다. 전문가그룹은 결론에서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책임추구를 위한 접근법이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전문가그룹은 책임추구가 북한의 맥락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상기하며,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경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북한 정부나 또는 국내 법률가가 참여하는 혼합 모델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가 없고, 한국, 일본, 중국의 국내법 체계는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한 일부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법적·정치적·실질적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지적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 고위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개시 가능성을 보고, 이 방법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⁸⁹⁾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정부, 모든 이해당사자, 유엔 회원국, 인권이사회와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 각각의 권고를 제시했다.⁹⁰⁾ 본 보고서의 권고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면에 책임 규명을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권고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결의 73/180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 내 인권상황 전반을 개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북한 정부와 유엔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⁹¹⁾ 본 보고서는 특히 A. 생명·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B.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C.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D. 국제 납치 및 가족 분리, E.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무총장은 결론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일차적 의무 주체자는 북한 정부임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확인했듯이 강력한 법적·정책적·제도

89) *Ibid.*, paras. 68-80.

90) *Ibid.*, paras. 81-88.

91)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4/268 (2 August 2019).

적 개혁을 통해 경제적·시민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국가방문을 허용하고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이어가기를 독려했다.⁹²⁾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을 환영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사무총장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이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및 안보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하여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엔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⁹³⁾

본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

- 국제관습법, 북한이 비준한 다섯 개의 핵심 인권조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 국가별정례인권검토, 특별절차수입자 및 조약기구 등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제시한 권고를 이행한다. 관련하여 해당 메커니즘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3차 정기보고서를 포함하여 기한을 넘긴 보고서를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할 것.
-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때 노동기준 등 국제 인권기준에 의거할 것.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을 시작하여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것.
-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가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해당국 내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특별보고관을 공식으로 국가에 초청하는 등 건설적인 협력을 시작하고, 기타 주제별 특별보고관도 국가에 공식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확인한 내용 및 권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국 내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A/HRC/40/36)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것.
- 정치범을 전원 즉각 석방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의적 구금사건을 즉시 처리하며, 재판절차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할 것.

92) *Ibid.*, paras. 61-62.

93) *Ibid.*, paras. 64-65.

-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의 인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유엔 관련 기관과 대화할 것.
-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식이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양질의 식량 접근이 경제적 및 물리적으로 가능토록 할 것.
- 일본,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이들의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납치된 이들과 관련된 기록과 생사를 확인할 것.
- 한국과 협력하여 가족분리 문제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남북 양측 가족이 연락을 이어가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는 제도를 마련할 것.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전 세계에 분포된 피해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
- 유엔 기관 및 인도적 지원 단체에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하고,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필요(needs)를 적절하게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고려할 것.
-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고려할 것.
- 인신매매 대응 노력의 하나로, 변칙적으로 국경을 넘은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인) 북한 국민을 보호하며, 이들이 보호받고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북한 내 인도적 및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자금을 제공할 것.
-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도적 상황에 의도치 않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경제 제재 조치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는 관계를 서술한 일반논평 제8호(1997)를 참고할 것.

표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8 (일부)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존중의 관계⁹⁴⁾]

...

9. 본 위원회가 제재조치의 부과여부를 결정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없지만, 모든 규약 당사국의 동 규약 이행여부를 감독할 책임은 갖고 있다. ...

10. 본 위원회는 이러한 고려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의무가 도출됨을 믿는다. 첫 번째 유형은 피제재국과 관련된 의무이다. 제재의 부과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사국의 관련 의무가 무효화 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상응하는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무들은 특별한 고난의 시기에 더 큰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본 위원회는 따라서 관련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를 면밀

히 조사하도록 요구된다. 제재조치로 인해 피제재국이 가능한 조치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후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피하게 약화될지라도, 해당 국가는 국민들이 상기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 관한 차별철폐를 보장하고, 제재조치가 사회내의 취약집단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타 국가들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11. 두 번째 유형은 제재부과, 유지 및 이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에 관련된 일련의 의무로서 국제사회, 국제·지역 기구, 혹은 개별 국가나 국가의 집단 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인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됨을 고려한다.

12. 첫째, 적절한 제재체제를 계획할 때 이러한 권리들을 완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조치를 승인하는 대신에 본 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영향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유엔기구의 창설, 인권존중에 기반하여 합의된 한층 더 투명해진 원칙 및 절차의 완성, 더욱 폭넓은 면제 상품 및 서비스의 인정, 필요한 면제 결정을 위해 합의된 기술적 기구들에 대한 승인, 재원이 풍부한 제재위원회 창설, 국제공동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취약성을 더욱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을 것, 전반적인 유연성 증대 등의 제안을 고려한다.

13. 둘째, 제재 기간 동안 동 규약의 조건하에 항상 요구되는 효과적인 감시가 행해져야 한다. 외부 당사자가 한 국가내의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유엔헌장 제7장하의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외부 당사자는 제재에 영향을 받는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책임을 진다.

14. 셋째, 외부 실체(entity)는 피제재국 내의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기술적인 국제 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 중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 즉 책임규명과 관련된 후속조치 이행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 중 북한 내 인도적 및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도적 상황에 의도치 않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한 저해 요인을 완화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러한 권고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19년, 2020년 권고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이 제재로 인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

9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8: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1997/8 (12 December 1997).

재 조치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 유엔의 해당 절차에서 제재의 해제 혹은 완화 여부를 검토·논의하도록 하는 데 한국 정부가 인권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⁹⁵⁾

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된 여성이 경험한 인권 침해 혐의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48/141이 인권최고대표에 부여한 위임 권한에 의거하며,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에 기록된 관행대로라면 북한은 국제인권법에 의거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UPR에서 약속한 바를 준수하지 않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조한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판단했다.⁹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북한 정부와 유엔인권메커니즘 간 협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특히 구금시설 내 인권 준수 정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협력 부문을 시급하게 고려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권고 중에서 유엔 회원국에 대한 다음의 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⁷⁾

- 실제 혹은 추정되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을 허용한다.
-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구금시설 내 인도적 필요를 평가하고 구금자에게 관련

95)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detain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문판:
<https://www.ohchr.org/Documents/Countries/KP/HR_Violations_against_Women_DPRK_EN.pdf>, 한국어판:
<https://www.ohchr.org/Documents/Countries/KP/HR_Violations_against_Women_DPRK_Korean.pdf> (검색일: 2020.10.20.)

96)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ate received: 11 April 2016], UN Doc. CEDAW/C/PRK/2-4 (1 June 201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97) OHCH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한국어판), pp. 32-33.

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 인권 감시 관계자가 구금시설 전수를 포함하여 해당국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
- 북한 내에서 국제 범죄, 특히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을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내 혹은 국제 재판에 세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제3차 UPR에서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권고한 여러 국가의 권고를 지지하지 않고 “주목한다”는 입장을 표했다.⁹⁸⁾ 다만,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아닌 기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는 지지했다.⁹⁹⁾

북한으로 강제송환 후 구금되는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본 보고서의 권고와 관련하여,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강제송환, 인신매매,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과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들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사전질의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있어, 이 분야를 직접적인 협력 의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앞서 나열한 권고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정책적 제도를 마련”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을 허용” 하는 방식의 완화된 접근을 통해 북한 내 구금 여성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9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Recommendation. 126.11.

9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Recommendation. 126.11.

3. 인권조약기반 인권메커니즘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다음과 같다.

표 11. 북한이 비준·가입한 조약 (2020년 10월 기준)

조약명	서명일	가입/비준일	발효일	유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가입)	1981.12.1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가입)	1981.12.14.	
아동권리협약	1990.8.23	1990.9.21	1990.10.21.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14.9.9.	2014.11.10.	2014.12.10.	
여성차별철폐협약		2001.2.27.(가입)	2001.3.29.	제29조 제1항
장애인권리협약	2003.7.3.	2016.12.6.	2017.1.5.	

이 절에서는 북한이 비준·가입한 인권조약 하 북한 정부에 대한 인권조약기구의 견해를 최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표 12. 북한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북한정부 보고서 제출	심의	위원회 최종견해
1차	1983.10.24.	1984.4.12.	
2차	1999.12.25.	2001.7.19.-7.20.	2001.8.27.

북한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자유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1983년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¹⁰⁰⁾ 1997년, 유

엔 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¹⁰¹⁾를 최초로 채택하자, 북한은 1997년 8월 25일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보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탈퇴규정이 없는 자유권규약의 경우 당사국 전체의 동의가 없는 한 탈퇴를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담은 답변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다.¹⁰²⁾ 김정일 체제 공식적인 출범 이후, 1999년 북한은 미뤄왔던 2차 보고서¹⁰³⁾를 제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2004년 1월 1일 까지 3차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2001년 7월 북한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01년 8월 27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자유권위원회의 2001년 최종견해¹⁰⁴⁾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을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표 13.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01년 최종견해 요약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형벌 완화	▪ 사형 대상 범죄를 33개에서 5개로 제한 환영
	조약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2001년 2월) 환영
	이산가족	▪ 2000년 6월 15일 선언 이후 대한민국과 당사국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세 차례 실시 환영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사법부의 독립	▪ 헌법상 중앙재판소가 최고인민회의의 하부기관인 점, 판사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적인 점, 형법상 판사가 “부당한 판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우려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권고
	규약과 국내법의 충돌	▪ 차기 보고서에 국내법과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인권 기구	▪ 권리 침해 시 독립적인 기구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기구	▪ 국제인권단체 및 국제기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인권 증진과

100) UN Human Rights Committee, *Initial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 October 1983], UN Doc. CCPR/C/22/Add.3 (14 November 1983).

101) 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Resolution 1997/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secret ballot by 13 votes to 9, with 3 abstentions, 21 August 1997, contained in UN Doc. E/CN.4/1998/2 (5 November 1997) pp.18-19.

102) United Nations, *Notificat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N.467.1997 (12 November 1997),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CN/1997/CN.467.1997-Eng.pdf> (검색일: 2020.11.20.).

103) UN Human Rights Committe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December 1999], UN Doc. CCPR/C/PRK/2000/2 (4 May 2000).

104)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생명권		식량 및 영양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와 국제사회와 협력해 1990년대 북한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가뭄과 기타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치가 미흡한 점을 우려하며, 생명권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6호에 따라, 영양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 등 영아 사망을 줄이고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조치 채택 권고
사형제		사형 가능 범죄 항목을 제한한 점 긍정적이거나, 5개 사형 대상 범죄 중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이며, 용어의 포괄성으로 인해 사형부가 주관적일 수 있고, 규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형법을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공개처형의 중지를 권고
죄형법정주의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성격과 경중이 유사한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준하여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제10조(유추적용 규정)는 자유권규약 제15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 제10조 폐지 권고
고문 및 가혹행위*		'법집행 일꾼'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려하며, - 국가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사건들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신속히 조사할 것 - 법집행 일꾼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구금 및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을 권고
피구금자의 처우		- 교화소 등 모든 구금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인도적 처우 보장 - 모든 피구금자들에 대한 충분한 음식과 적절한 의료 제공 -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허용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약 제8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노동법 개정
체포·구속 시 인권 보장		- 재판 전 구금 관행과 예심의 규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재판 전 구금의 기간, 사유에 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담을 것 - 체포나 구속 시 법관이 신속히 그 합당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피구금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가족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동의 자유		- 국내 이동 시 여행증명서 요구 폐지 검토 - 해외여행 시 행정허가, 외국인에 대해 출국비자(exit visa) 요구를 일반적 법규로 하는 것 폐지하고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것
외국인 추방 시 적법절차 원칙		외국인을 추방할 때 신중을 기해 집행한다고는 하나, 외국인 추방을 규율하는 법과 절차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 외국인을 추방하기 전에 충분한 보호 장치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외국인 추방을 규율하는 법률 채택을 검토할 것
종교의 자유*		종교인 현황 및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표현의 자유*		- 출판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외국 언론 접근 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 - 북한 언론인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개념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집회의 자유*	어떤 사유로 집회 개최를 불허하는지, 집회 개최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지 추가적 정보 제공
	참정권	- 새로운 정당 창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 창설 및 등록에 대한 법규가 없다고 북한 대표단이 설명하였으나, 이는 대표자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권(자유권규약 제25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완전히 보장할 것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보통·평등 선거에 따라 비밀투표를 행하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할 것)
	인신매매*	여성 인신매매 사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협력적 정신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성평등	-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 증진을 위한 조치 채택 - 주요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보수 수준에 관한 자료 제공

자유권위원회는 위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기 보고서에 따른 권고 사항 이행, △1년 안에 고문 및 가혹행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신매매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기타 권고 사항과 규약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3차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북한 정부에 요청하였다.

북한이 1997년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보하였으나, 1999년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점은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후 2004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제3차 국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반면, 다른 주요 인권조약은 추가로 비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중 사법부의 독립 보장, 강제노동 금지, 이동의 자유 보장, 새로운 정당 창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마련,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은 자유권규약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나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손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유권규약상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UPR에서는 자유권규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국가들의 권고도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유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와 같은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UPR이나 다른 주요 인권조약기구에서 나온 권고 중 자유권 관련 내용들에 주목하여, 북한이 유엔인권기구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자유권 상황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현실적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표 14.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정부 보고서 제출	심의	위원회 최종견해
1차	1984.12.18.	1987.3.23.	
2차	2002.4.9.	2003.11.19.-11.20.	2003.12.12.

북한은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하여 국가보고서를 현재까지 1984년 12월 18일(최초 보고서)¹⁰⁵⁾, 2002년 4월 9일(2차 보고서)¹⁰⁶⁾ 두 차례 제출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1987년과 2003년 지금까지 두 차례 북한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19일-20일 북한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03년 12월 12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2003년 최종견해¹⁰⁷⁾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표 15.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03년 최종견해 요약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 식량 생산 기반 재건 등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당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들의 노력 - 당사국이 위원회와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 무상의료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11년제 무상보편교육의 시행
규약 이행 저해 요인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안보, 기반시설 재건의 고비용 등 다방면에서 당사국이 직면한 어려움
주요 우려 사항 및	규약 이행	규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국제지원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포함 국제 및 지역기구와 국제 협력과 지

105)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itial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December 1984], UN Doc. E/1984/6/Add.7 (5 February 1985).

106)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April 2002], UN Doc. E/1990/6/Add.35 (15 May 2002).

107)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권고	협력	원 지속적 모색
	사법부 독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보장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규약의 조항이 국내법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와 국내법원에서의 규약 직접 원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 구제	사회권 관련, 신소청원법에 따른 개인 신소제도의 정확한 기능과 이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판례에 대한 정보 제공
	인권조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 -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주요 ILO 협약 비준
	성차별 금지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국내법 검토 및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를 택할 것
	노동권	일자리 혹은 더 나은 생활여건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중지를 위해 관련 국내법 검토
	단결권 단체행동권	독립적인 노동조합 결성권, 파업권 포함 노동조합에 관한 규약상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검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수당,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 지출을 위한 예산 증액과 취업 지원 (특히 여성) 방안 강구
	가족에 대한 보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교육권	- 자연재해로 인해 학습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동들의 학교 복귀를 포함한 아동의 교육권 보장 지원 노력 지속 -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장애에 대한 학생·교사·가족의 인식 개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훈련
	아동에 대한 보호	요보호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가정 양육 제공과 정규 교육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강화
	식량권	- 국제식량 원조에 대한 취약집단의 동등한 접근 및 우선적 식량 제공을 보장하는 적절한 장치 마련 -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및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데 관련 당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건강권	산전 보건서비스 및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 UNDP, WHO, UNAIDS 등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HIV/AIDS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혈액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인 예방 전략 구축
	위원회의 방문	▪ 위원회가 북한을 방문해 조연과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북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가장 마지막 심의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 2003년 권고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취약집단이 국제식량 원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및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 △산전 보건서비스 및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요보호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가정 양육을 제공하고 이들 아동들이 정규교육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학생·교사·가족의 인식을 개선할 것,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할 것 같은 권고 사항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권 상황의 개선은 북한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SDGs 이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규약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는데, 북한에 대한 2003년 권고에서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과의 국제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규약 이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포함하였다. 사회권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으로 제시하는 분야이자, UNICEF(유니세프),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권 중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SDGs 이행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량·영양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우선으로 하여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폭을 점차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유엔기구들을 매개로 한 북한인권 개선의 단계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표 16. 북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정부 보고서 제출	심의	위원회 최종견해
1차	1986.2.13.	1998.5.20., 5.22.	1998.6.24.
2차	2002.5.16.	2004.6.1.	2004.7.1.
3차	2007.12.10.	2009.1.23.	2009.3.27.
4차	2016.5.13.	2017.9.20.	2017.10.23.

북한은 1986년을 시작으로 2002년, 2007년, 2016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여 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8년, 2004년, 2009년, 2017년 지금까지 네 차례 북한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하였다. 가장 최근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7년 9월 20일에 있었으며, 10월 23일에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¹⁰⁸⁾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에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표기를 하여 구분하였다.

표 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17년 최종견해 요약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인권조약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2014.11.10.) 환영
	이행 사항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와 전반적 의무교육에 관한 이행 사항 환영
이행 저해 요소		당사국 대표단이 언급한 경제제재가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동의 권리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입법> - 아동권리보장법(2010) 채택 환영, 법률 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 - 법률 시행 지원 및 국제사회의 모범사례와 교훈 공유 위해, UNICEF 등과의 기술협력 모색
		<포괄적 정책과 전략>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2011-2020)' 채택 환영하며,

10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 폭력, 착취, 빈곤 관련 보호조치 포함 ▪ 계획 이행을 조정할 정부기관 명확히 설정 ▪ 계획 이행의 진척 사항 주기적 공개 ▪ 아동권리 보호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제공 ▪ 국가재난대응계획 수립에서 유엔 및 기타 파트너들과 조정 활동 강화
		<자원 할당> ▪ 경제적 궁핍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위한 예산 배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체계·프로그램·정책 강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활용 방법 주기적 검토 ▪ 보건·교육·사회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 및 도농 간 자원 공평한 분배 ▪ 소외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 최저선 설정하고, 경제적 궁핍, 자연재해 및 기타 비상상황에서도 예산 최저선 보장
		<자료 수집>* ▪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분류 ▪ 유관 부처에서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자료와 지표 활용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 가이드라인 고려 ▪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UNICEF 등과 기술협력 강화
		<독립적 모니터링> ▪ 독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한 조치 ▪ 재정, 수임사항, 면책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의 독립성 보장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ICEF, UNDP와 기술 협력 모색
		<전파, 인식제고, 훈련> ▪ 부모·보육교사·학교 교원·아동 및 일반 대중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 관련 전문 집단 대상 협약에 따른 책임 교육
		<시민사회> ▪ 독립적인 시민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 조성 ▪ 아동권에 관한 법률, 정책 등 수립·이행·평가에 아동권 단체 참여토록
	아동의 정의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법」의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개정
	일반 원칙	<비차별> 「사회주의헌법」 제65조와 「아동권리보장법」 제3조 등 차별금지 법률의 이행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아동차별 중단 ▪ 농촌과 오지 거주 아동, 북한국적이 없는 아동, 장애아동, 특히 그 중 여아와 관련한 차별금지법률의 이행에 관한 정보 주기적 공개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과 부모의 불필요한 분리 및 거주형 보호기관 위탁 방지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고 해

		석·적용할 것 ▪ 각 분야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마련 ▪ 정부 정책과 관행이 아동권에 미치는 영향 사전/사후 평가제도 수립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 영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발육부진과 저체중을 야기하는 아동 영양실조, 고된 신체적·정신적 활동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화
		<아동의 견해 존중>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진행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 개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출생등록 및 국적> ▪ 북한 국적 어머니를 둔 외국 거주 아동이 자신이나 어머니의 강제 복송 없이 출생을 등록하고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양자협약 체결 검토
		<표현의 자유> ▪ 아동의 표현의 자유 증진 ▪ 아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정보와 견해를 찾고 전달할 자유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박해 예방 및 근절 ▪ 종교적 관용 장려와 사회적 대화 추진 ▪ 종교의 자유 제한에서의 비례성 원칙의 적용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 채택 ▪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포함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효과적인 접근 보장 ▪ 강요된 성관계 포함 직장 내 강간에 대해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사생활에 관한 권리> ▪ 사법 및 건강 문제에서 아동의 사생활 권리 보호를 위한 법규 위반 시, 이를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 시행
		<정보접근권> ▪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포함해,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 증진 ▪ 아동이 “적대 방송 청취 및 적 선전물 수집·보관·유포”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형법」 제185조 등 관련 법률 재검토

	아동에 대한 폭력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SDG16.2와 관련해 - 강제 복송된 아동 포함,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명확하게 금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아동에 대한 일체 고문과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 - 고문 및 학대 혐의 수사 중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유죄 확정 시 처벌하고 재판 절차와 선고 결과를 공개할 것 - 법집행관 대상 아동권 교육 -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체벌> - 가정, 아동 관련 시설, 정치범 수용소 포함 모든 교정시설 등 모든 상황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 조속 검토 - 모든 교육기관에서 체벌금지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15세-17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교양 조치'에 체벌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체벌을 포함하거나 그에 필적하는 「형법」상의 형사 처벌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하지 말 것 - 부모와 교원 대상 긍정적이고 비폭력이며 참여적인 양육과 훈육 장려 조치 강화
		<폭력, 학대, 방임> SDG 16.2에 주목하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처벌법 검토 - 국경 지역 소재 거주형 보호기관과 보호소 내 아동 상황 평가 조속히 시행하고, 성적 학대 포함 아동에 대한 일체의 폭력행위를 수사·기소·처벌할 것 - 성매매와 결부된 여아 및 여자 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에 주의를 기울일 것 - 아동 대상 폭력 방지와 대처를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 - 폭력 방지책 수립에 아동 참여 방안 강구 - 아동 대상 폭력 사례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 강화 - 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기구와 협력 모색
		<상담전화> 무료 상담전화를 전국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
	가정환경 및 대안보호	<가정환경> - 부모의 공동 책임 증진 활동 및 아동의 교육과 발달에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활동 강화 - 부모의 아동 양육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지원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되는지 이혼 관련 법률 검토·확인 -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할 것 -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아동과 정기적 의사

		소통과 개인적 관계 형성을 허용·증진하기 위한 조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유엔의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 가이드라인과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를 환기시키며, - 가정 중심의 대안적 보호를 위해, 아동이 공공보호시설에 위탁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 진행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지원 - 장애아동 포함 아동의 공공보호시설 위탁 여부 결정 기준과 세이프가드를 아동의 필요와 의견, 최선의 이익 고려하여 수립. 부모의 이혼을 시설 위탁 근거로 간주하지 말 것 - 아동의 시설 입소와 가정위탁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절차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보고 및 시정 체계를 통한 해당 시설 모니터링 - 시설 아동의 상시적 상호작용과 사회재통합을 위해, 수용소 같은 시설 건립 정책 재검토 - 탈시설화 경험과 모범사례, 교훈 등을 위해 UNICEF 등과 기술협력 모색
		<입양> -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적 고려를 위해 입양법의 재검토와 양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규정 삭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1993년) 가입 고려
		<피구금 부모를 둔 아동> 부모의 범죄를 이유로 아동이 처벌·제재·구금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 포함, 수용시설에 구금된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기적 접견 보장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 SDG 4 및 11과 관련, - 장애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채택 및 장애아동을 포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 -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위해 효율적인 장애 진단 체계 수립 - 포용적 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 수립하고 특수시설 및 특수학급 배치 대신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 점진적으로 우선되도록 함 - 특수교사와 전문가 양성, 포용적 학급에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적 필요 개별적 지원 12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부합하도록 장애아동을 위한 9년제 교육과정 검토 -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
		<건강 및 보건 서비스> - SDG 3.2 및 3.8 관련, -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 농촌과 오지 포함 북한 전역 모든 아동에 대한 의약품 무상 또는 저가 공급 - 보건인프라 확충 및 보건인력 교육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나 질환 발생 감소 및 종식을 위한 정책 시행에 인권기반 접근 적용, OHCHR의 기술지침 고려 - 이를 위해, UNICEF와 WHO 등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모색

		<정신 보건> ▪ 아동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시행 및 아동의 발달상의 욕구 고려
		<청소년 보건> SDG 3.7 관련, ▪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 진행 ▪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 채택, 의무교육과정에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성 및 재생산 보건 교육포함 ▪ 비밀이 유지되는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보장
		<HIV/AIDS> ▪ 청소년 대상 HIV/AIDS 예방 관련 정보 제공 ▪ UNICEF와 UNAIDS, UNFPA로부터 기술지원 모색
		<영양>* SDG 2.1과 2.2 관련 ▪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실행계획'에 대한 독립적 검토 ▪ 아동 영양실조의 근본 원인 파악하고 아동의 급·만성 영양실조 관련 최신 정보 주기적 공개위해, 아동의 식량 안정 및 영양 관련 자료 체계적 수집 ▪ 공공배급을 통해 제공되는 식량의 영양과 품질, 제공횟수 포함, 배급제가 아동의 식량 안정과 영양에 미치는 효과 평가 ▪ UNICEF와 FAO로부터 기술지원 모색
		<기후변화가 아동권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유엔 국가팀과의 협력 환영. SDG 13.5 관련, ▪ 홍수와 가뭄 같은 기후 관련 비상사태로 식량 접근 차질 시, 아동에게 영양실조 치료 즉각적 제공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련 내용 교과과정과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 ▪ UNICEF 및 WFP 등과 지속적 협력 및 재해 위험 감소와 대응 관리, 대비 계획 등에서 아동권에 각별한 주의
		<생활수준> SDG 6.2 관련, ▪ 물과 위생, 영양 관련 개입 우선적 추진 ▪ 기술 및 '중력 기반 물 공급 시스템(gravity-fed water system)' 활용에 관한 남-남 학습교류 참여 권고 ▪ 주민이 생계를 꾸릴 기회 증진 및 촉진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직업교육 포함 교육> SDG 4 관련, ▪ 학습·휴식·여가·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방해하는 노동 수행을 아동에게 요구하지 말 것 ▪ 학교 진학, 교육 유형, 교사로부터 받는 대우와 관련, 아동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아동 차별 금지 조치 실시 ▪ 학교에서의 현금·식량·자재 기부 요구에 대한 효과적 금지 조치 조속

		히 시행 ▪ 교사의 학생 학대나 체벌 방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체벌의 실질적 금지,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교 중퇴 방지 ▪ 학생의 관심에 따른 과목 선택의 자유 포함,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증진 ▪ 농촌 지역과 오지 포함, 교육의 질과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 학습과 포용성,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의 역량 제고 및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해 아동 친화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치 시행 ▪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학업 성취도 정보 주기적 공개 ▪ 이러한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UNICEF 및 UNESCO 등과의 기술 협력 모색
		<교육의 목적>* ▪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재가 학문적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것 ▪ 아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평화·관용·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둘 것 ▪ 모든 연령 아동 대상 평화교육과정에서 평화적 갈등 해법 강조 ▪ 이와 관련, UNICEF 및 UNESCO로부터 기술 지원 모색
		<영유아 발달> SDG 4.2 관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사-아동 비율 적절히 유지, 양질의 보육·심리사회적 지원과 자극 제공,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
		<인권교육> ▪ 인권 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인권과 아동의 권리 반영
		<휴식과 여가, 오락,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 ▪ 아동의 휴식 및 여가의 권리 보장, 자신의 연령에 걸맞은 놀이와 오락 활동 선택권리 보장 ▪ 자신과 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식견을 기를 권리 보장
	특별보호조치	<송환아동> ▪ 송환 아동 및 송환된 북한 여성의 아동에게, 생명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 제공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협약」 가입 고려 <무력분쟁상의 아동> ▪ 평화 협상 진행 시, 아동 최선의 이익 충분히 고려,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우선순위 부여 ▪ 아동, 특히 남아 및 남자청소년에 대한 조기 군사화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모병 금지 조치 채택

		<아동노동 포함 경제적 착취>* SDG 8.7 관련, -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위험한 작업 사용 금지를 위해 노동 및 아동 관련 법률 개정 - 교육의 일부로 아동에게 '경제과제' 수행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 실시 및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아동의 동등 대우 보장 - 아동의 농사일 대규모 강제 동원 방지, 대규모 농업 동원 참여에 대한 최소 연령 및 작업시간 제한 규정 수립 18세 미만 아동의 돌격대 배치 관행 금지 및 모든 아동에 대해 학업 지속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 ILO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과 제138호 노동최소연령에 관한 협약(1973) 비준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고려 및 이와 관련 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기술 지원 모색
		<노숙 아동> - 밖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아동 수 조사 및 근본 원인 연구 - 노숙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복귀나 대안보호 위탁 등의 지원 제공, 아동 최선의 이익 온전히 존중,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발적 견해 충분히 고려
		<매매, 인신매매, 납치> - 인신매매 및 납치된 아동을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 적절한 회복과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억제·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비준 고려
		<소년 사법 행정> - 소년 사법 전담 제도와 절차 수립, 전담 판사와 검사 임명, 해당 판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 실시 - 법적 분쟁 중인 아동에게, 사회적 교양 조치 집행 기간 포함, 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자격을 갖춘 독립적 변호사의 무상 변론 보장 -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 최소화, 구금 중단을 위해 구금상황 주기적 검토, 아동과 성인의 구금 공간 분리,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 포함 피구금자의 처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 독립적이고 아동 친화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아동 민원 접수 및 처리 체계 구축, 모든 민원 사항 조사, 권리 침해확인 시, 해당 법집행관 기소·처벌
		<범죄 피해 아동과 증인> - 경제적 착취, 납치,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 포함, 모든 범죄의 아동 피해자와 증인 보호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 관련 문제에서의 사법지침」 온전히 고려 -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에 관한 조치 「아동권리보장법」과 기타 모든 관련 법률에 포함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권리협약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국제인권조약	▪ 주요 인권조약 비준 고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
	지역기구와의 협력	▪ ASEAN의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 위원회'와 협력 모색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항목에 걸쳐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전문기구와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 일반과 관련, 아동권리 관련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 및 국제사회의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니세프(UNICEF), 유엔디피(UNDP)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여성 및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도 장려하고 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또는 기술협력을 모색하거나 지속할 것을 권고한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과 가정 중심의 대안적 보호 모색(유니세프), 아동 대상 폭력 방지와 대응 강화(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기구),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아동의 의약품 접근권 증진 등(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청소년 대상 HIV/AIDS 예방 위한 정보 제공(유니세프, 유엔에이즈, 유엔인구기금), 아동 영양실조 퇴치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치(유니세프, 세계식량농업기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방안 수립(유엔 국가팀,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방해하는 노동 수행 요구 금지,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에 대한 기부 요구 효과적 금지, 교사의 학생 체벌 방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교 중퇴 방지, 성평등 증진, 학업성취도 정보 주기적 공개, 이해·평화·관용·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증진 등(유니세프, 유네스코), 아동의 노동 동원 방지(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여러 권리 영역에서 관련된 SDG의 세부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SDG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적학대 대응 강화(SDG16.2),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이에 필요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교사 양성 등(SDG4, 11),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감소와 아동 건강 증진(SDG3.2, 3.8), 청소년을 위한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과 교육(SDG3.7),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아동의 영양 개선

(SDG2.1,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SDG13.5), 물·위생·영양 및 생활수준 개선(SDG6.2),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에 대한 권리(SDG4), 영유아 발달을 위한 양질의 보육 지원 및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SDG4.2), 아동의 노동 동원 및 경제적 착취 방지(SDG8.7)에 대한 권고에서 SDG 세부목표를 연계하고 있다.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제3차 UPR 권고 사항 중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건강권·교육권·식량·영양에 대한 권리 분야에서 기술 지원 및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이행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이 포함되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 또는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이에 필요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교사 양성(SDG4, 11),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감소와 아동 건강 증진(SDG 3.2, 3.8),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아동의 영양 개선(SDG2.1,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SDG13.5), 물·위생·영양 및 생활수준 개선(SDG6.2),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SDG4.2) 등의 권고는 북한의 해당 SDG 이행과정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북한과 해당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간의 직접협력의 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표 18. 북한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정부 보고서 제출	심의	위원회 최종견해
1차	2002.9.11.	2005.7.18.	2005.7.22
2-4차	2016.4.11.	2017.11.8.	2017.11.22.

북한은 협약 이행에 관해 2002년 최초 국가보고서¹⁰⁹⁾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지연되었던 2차 보고서를 2·3·4차 통합보고서의 명목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출하였다.¹¹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2005년과

109)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itial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1 (11 September 2002).

110)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1 April 2016), UN Doc. CEDAW/C/PRK/2-4 (1 June 2016).

2017년 두 차례 진행하였다. 가장 최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7년 11월 8일에 있었으며, 11월 22일에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017년 북한의 국가보고서 심의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¹¹¹⁾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에 우선적 이행을 권고한 내용은 *을 표시하였다.

표 1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2017년 최종견해 요약

구분	주제	내용
긍정적 측면	입법조치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출산휴가 및 수유 휴식 시간 증대를 포함하여 임산부 여성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 노동보호법(2010년),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명시한 사회보장법(2008년)
	기구	National Committe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의 설립 등을 통해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
	인권조약	- 장애인권리협약(2016년) 비준 - 아동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년) 비준
이행 저해 요소		북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결정한 경제제재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일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위원회의 일반권고의 홍보 및 본 권고의 신속한 이행
	입법 및 차별적 법률의 시정*	- 삶의 전 영역에서 직·간접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의 포괄적 정의를 국내법에 채택할 것 - 모든 여성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18세로 상향조정할 것 - 여성권리보장법과 가족법상 배우자 간 화해에 대한 조항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권, 고용·사회·노동 권리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 개정할 것 - 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에 법률, 지침, 규정 공개할 것 - 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지침, 규정 공개할 것
	이전 권고의 이행	- 여성의 최저혼인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할 것 - 여성권리보장법과 가족법의 배우자 간 화해 조항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고용, 사회, 노동 관련 법규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 파악하고 개정하도록 법률 검토

111)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7 November 2017, UN Doc. CEDAW/C/PRK/CO/2-4 (22 November 2017).

		▪ 인트라넷과 인터넷 등에서 법률·지침·규정 공개
사법접근성		▪ 법조인 및 법학도의 협약 적용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 실시
여성 발전을 위한 체계		▪ 여성의 권리 효과적 증진 위해, National Committe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에 대한 자원 확보 ▪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성평등 증진 계획 채택·이행·평가 ▪ 국가기관과 조선민주여성동맹에 여성의 권리와 협약에 대한 정책 지침 제공 ▪ National Committee 가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해 권고한 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 인권기구		▪ 국가인권기구 설립
시민사회		▪ 여성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독립적 활동 보장
임시조치		▪ 고등교육, 사법부, 보안, 경찰 및 지도자 및 관리자급 직책 등 여성이 과소 진출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달성 위해 적극적 조치 실시 ▪ 고정관념에 기반한 직제분리 시정하기 위해 각 고용분야의 최소 여성비율 할당을 위한 특별조치 검토
고정관념		▪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 철폐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시행하고, 각급 학교 교육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 포함할 것 ▪ 교육과 미디어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이해 강화 ▪ 전략 이행을 통한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
여성에 대한 성폭력		공·사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5.2를 상기하며, ▪ 모든 유형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범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권리보장법 재검토, 여성에 대한 피해에 상응하도록 강간에 대한 양형기준 등 형법 재검토 ▪ 부부 및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을 성범죄에 포함하고, 비동의 상황을 고려할 것 ▪ 피해자의 사법구제 보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적절한 형 부과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쉼터 이용 보장, 사회적 낙인 방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 방지 노력 강화 ▪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사법부 및 경찰 대상 교육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 강화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 인신매매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채택 ▪ 여성 인신매매와 착취의 근본 원인인 여성의 경제적 상황 개선

		▪ 송환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고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내지 않으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 대상 강제낙태 실시하지 않을 것 ▪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 고위직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법정 여성 할당제 등을 분명한 기한과 목표 하에 채택하고 보안기관과 경찰에 여성 채용을 늘릴 것 ▪ 여성의 동등한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요건이라는 인식 제고 ▪ 여성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 지원
	국적	▪ 북한 여성의 무국적 자녀에 대한 국적의 소급적 부여 ▪ 당사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과 자녀가 강제송환당하지 않고 자녀가 출생 등록 및 국적 획득할 수 있도록 양자협정 검토
	교육	▪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향상, 교육 과정을 통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교내 리더십 관련 여학생과 남학생의 평등한 참여 장려 ▪ 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극복 노력 강화 및 여성이 소수인 학문 및 진로에 여성 참여 장려 ▪ 교육 관련 SDG 4의 이행을 위해 UNESCO 및 UNICEF와의 협력 강화
	고용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저임 직업을 할당하는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 재검토 ▪ 여성의 관리자급 및 지도자급 직책 참여 장려 ▪ 여성 고용 기회 개선, 여성의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남성의 은퇴 연령과 일치하도록 노동법 개정 검토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보와 통계 공개 ▪ 자녀출산 후 의무적 남성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공유제도 도입 등으로 남녀 간 가족 및 가사 책임의 평등한 분담 장려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 채택 ▪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포함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효과적인 접근 보장 ▪ 강요된 성관계 포함 직장 내 강간에 대해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건강	▪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포함 여성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 ▪ 청소년 대상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안전하고 저렴한 피임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접근성 증진 ▪ 교과과정에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차별적 태도를 다룰 것 ▪ HIV/AI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HIV/AIDS 감염 여성 및 여아를 위해 무상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
	농촌여성	▪ 농촌 지역 여자 청소년·여성의 대학 진학 장려 및 다양한 진로에 대한 안내와 학업 상담 프로그램 제공 ▪ 농촌 여성의 의료,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노력

		강화 ▪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농촌 여성들의 인식 제고
	여성 장애인	▪ 장애 여성 및 여아의 교육, 고용,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질에 주의를 기울여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여성 피구금자 및 송환된 여성*	▪ 교정시설 종사자의 여성 수용자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여성 수용자 대상 성폭력 및 기타 폭력 발생 시 신고절차 마련 및 효과적인 수사·기소 ▪ 불법 월경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침습적 신체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방지,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존중 등 강제 송환된 여성 수용자의 상황 개선 ▪ 국제기구와 유엔특별절차 등 독립적 기구들의 여성 구금시설 방문 허용
	혼인 및 가족관계	▪ 이혼의 여성에 대한 영향 파악 등 이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여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 제공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 입양 절차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 보장
	자료 수집 및 분석	▪ 성·연령·지역별로 분리하여 자료 수집, 분석, 전파하는 체계 개발 및 시행 ▪ 여성의 실질적 평등 실현에 대한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 사용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위원회 회의 시기에 관한 협약 제20조 제1항 신속한 수용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 협약 이행을 위해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활용
	SDGs	▪ SDGs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술적 지원	▪ 당사국의 개발 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지원 받을 것
	다른 인권조약 비준	▪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강제실종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후속조치 및 보고서	▪ 입법, 직장 내 성희롱, 여성 피구금자 관련 권고 사항(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2년 내 제출 ▪ 2021년 11월까지 제5차 정기보고서 제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도 여러 항목의 권고에서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및 지원을 모색할 것과 SDGs 이행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규약 이행 일반에 대한 권고로서는, 당국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과 SDGs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 세부 권리 영역에 대한 권고에서는 부부강간 포함 모든 성폭력을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법률 재검토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SDG5.2),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SDG4)와 관련해 SDGs와의 연관성을 환기시켰다. 교육에서의 성평등 증진과 관련해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와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아동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제3차 UPR에서 수용적 태도를 보인 영역,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포함 여성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우선하여 관련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권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표 20. 북한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및 심의 현황

	정부 보고서 제출	심의	위원회 최종건해
1차	2018.12.19.	2021-2022 예정	

북한은 2016년 12월 6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2018년 12월 19일 최초 국가보고서¹¹²⁾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가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해 장애인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장애인 당사자들 및 단체 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 실태를 파악하였고,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만나 협약 이행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¹¹³⁾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후 의학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던 법률상의 장애자에 대한 정의를 협약상의 장애인 정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¹¹⁴⁾ 북한은 장애자보호법 개정 이외에도 장애와 관련성 있는 국내법 전반을 협약상의 권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¹¹⁵⁾ 장애인 교정기구의 현대화, 직업훈련 증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커뮤니케이션 장벽 해소를 위한 활동 강화, 장애아동을

11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PD/C/PRK/1 [Date received: 19 December 2018] (10 October 2019).

113) *Ibid.*, para. 5.

114) *Ibid.*, paras. 7-9.

115) *Ibid.*, paras. 28-29.

위한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일련의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¹¹⁶⁾

북한 내 주요 장애인 인권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지역의 운영,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¹¹⁷⁾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¹¹⁸⁾이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¹¹⁹⁾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자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외에도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권고나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¹²⁰⁾ 나아가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협력 조항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외국정부와의 국제협력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¹²¹⁾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호소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비정부기구의 북한과의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남북 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권리 개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북한정부에 대한 권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SDGs 이행과정을 장애를 포괄하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권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차 UPR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때 정부대표단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를 북한이 수용한 만큼, 장애인 권리는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116) *Ibid.*, para. 30.

117) 이규창, 김수경, 이지순, 정은미, 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pp. 380-382.

118) UN Doc. CRPD/C/PRK/1 [Date received: 19 December 2018] (10 October 2019), para. 76.

119) *Ibid.*, para. 150.

120) *Ibid.*, paras. 7-9, 27-29.

121) *Ibid.*, paras. 199-206.

4. 소결

이 장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특별절차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관련 문서상의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분석하였다. UPR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은 국제인권보장체계에서 반복되는 권고 사항과 그러한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나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즉,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중 북한이 수용 입장을 밝힌 내용을 인권 관련 우선적 협력방안으로 두고, 해당 분야에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면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제1차 UPR에서 인권 대화와 협력은 수용하지만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후 UPR 절차와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인권조약의 보고 절차에는 참여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접근의 배경이 된다.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중 북한이 UPR에서 수용 태도를 밝힌 사항은 국제인권조약 준수 및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 등 미비준 주요 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입법 및 조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이산가족 상봉,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등이다. 또한, 최근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절차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소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권고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와 북한을 방문했던 장애인특별보고관은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구하고 지속해 나갈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준수와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집단 인권 보호, 국가인권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시작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등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전략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의 관련 대북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한 인권대화 또는 양자협력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북한과 경제적·인도적 협력을 진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하여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한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보고서에서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코로나 19, 그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전문지식,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그리고 인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였고, 유엔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상황에 대해 해제 검토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유엔의 관련 절차에서 진지하게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20년 보고서¹²²⁾뿐 아니라,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8,¹²³⁾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¹²⁴⁾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¹²⁵⁾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19년 보고서,¹²⁶⁾ 유엔사무총장 2019년 보고서¹²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공간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를 바탕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에 주목하

122)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5/388 (14 October 2020), paras. 5, 16, 47, 50(i), 54(a), 55(a),(b).

123)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8: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1997/8 (12 December 1997).

12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para. 4.

125)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7 November 2017, UN Doc. CEDAW/C/PRK/CO/2-4 (22 November 2017), paras. 8, 22.

12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0/66 (30 May 2019), paras. 11-13, 15, 25, 46(d);

127)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4/268 (2 August 2019), para. 7(e).

며, 이것이 분단체제 하 남·북한의 억압적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한국 사회에서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I. SDGs와 북한인권

1. SDGs와 인권

이 장에서는 2015년 SDGs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동향과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나아가 SDGs와 인권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SDGs를 활용한 인권 증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연계 검토하고, 국제인권기준과 SDGs를 활용한 북한인권 개선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가. SDGs와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1) SDGs 개요와 핵심 가치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194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를 담고 있다.¹²⁸⁾ SDGs는 빈곤 감축을 목표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던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로서 유엔과 회원국들은 해당 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2030 의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이 가장 먼저 지원받도록(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¹²⁹⁾’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전의 MDGs 체제가 남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우선, 적용대상이 개발도상국 중심이었던 MDGs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이행 주체임을 명시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파트너십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수립 과정에 있어서도 유엔은 약 3년에 걸쳐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 국제기구, 의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며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협의 과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협의는 MDGs 수립 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였던 개발도상국이 배제되었던 점과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논의한 과정 그 자체로 SDGs가 포용성과 총체성,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³⁰⁾.

128)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129) *Ibid.*, para. 4.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대 핵심 가치(5Ps)에 연계되어 제시되었으며, 빈곤, 젠더, 사회 정의와 같은 사회발전 관련 목표뿐만 아니라 물과 위생, 기후변화, 도시개발, 산업 식량안보, 평화 등 MDGs가 담아내지 못했던 영역까지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다¹³¹⁾.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초의 글로벌 사회 정책’¹³²⁾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범위와 목표 면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5Ps 중 사람(People)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서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과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건강한 삶 보장,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 등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며, 번영(Prosperity)은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화와 혁신, 사회기반 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불평등 완화 등 경제성장을 통한 모든 인간의 번영을 의미한다. 지구환경(Planet)은 안전한 식수와 위생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를 통해 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며, 평화(Peace)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강조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지속가능발전과 SDGs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SDGs 목표와 5Ps

5ps	목표	내용
사람 (People)	1. 빈곤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지구환경 (Planet)	6.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0) 김태균 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p. 69.

131)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p. 2.

132) Deacon, Bob. "Assessing the SDGs from the Point of View Global Social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Vol. 32, no.2 (2016) pp. 116-130.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번영 (Prosperity)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적당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산업화 증진과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축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불평등 완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평화 (Peace)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파트너십 (Partnership)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유엔 결의¹³³⁾>

2)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가) SDGs 이행 현황 점검 체계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여타 많은 국제규범과 마찬가지로 2030 의제와 SDGs 역시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SDGs 이행의 책무성을 더하고자 유엔은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설치하여 4년 주기로 회원국의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고위급정치포럼은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로 1992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대체했다. 회원국들에게는 자발적으로 각 국가가 자국의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여 자발적 국별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실시 결과를 고위급정치포럼에 주기 내 최소 1회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위급정치포럼은 매년 점검할 주요 주제

133)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thematic focus)와 중점 SDGs를 선정하고 주제별 검토(thematic review)를 실시하며,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 국별 리뷰 제출 시 해당 주제와 중점 목표의 이행 현황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³⁴⁾ 고위급정치포럼과 자발적 국별 리뷰 제도는 4년마다 회원국의 SDGs 이행 과정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SDGs 이행 노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자발적 국별 리뷰는 국가마다 역량에 따라 보고서 구조와 작성 방식이 달라 일관된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긴 어려우나, MDGs 체계가 명확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세우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국별 이행 상황을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이다. 고위급정치포럼에는 자발적 국별 리뷰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의 SDGs 이행에 대한 연례 경과보고서(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가 공개된다.¹³⁵⁾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2030 의제 이행의 연도별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목표별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 이밖에 SDGs 이행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¹³⁶⁾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가 있다. 동 보고서는 국별 이행 정도와 주요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2.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연례 주요 주제 및 중점 SDGs

구분	년도	연례 주요 주제 (thematic focus)	중점 SDGs (thematic review)	VNR 국가 수
1차 회기	2016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목표 1, 6, 8, 10	22
	2017	변화하는 세계의 빈곤퇴치와 번영 증진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목표 1, 2, 3, 5, 9, 14, 17	43
	2018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목표 6, 7, 11, 12, 15, 17	47
	2019	사람들의 자력화와 평등과 포용성 보장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목표 4, 8, 10, 13, 16, 17	47
2차 회기	2020	실천과 변혁의 길 촉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간의 행동과 실천	6개 주제 분야 ¹³⁷⁾ 중심 지난 4년 이행	47

134) *Ibid.*, paras. 72-91.

135) *Ibid.*, para. 83.

13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 전 세계 국가, 지역 네트워크,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 약 1,250개 회원.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평가 및 향후 10년 계획 논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감염병이 2030 의제 이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재조정	
	2021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촉진하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회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간의 행동과 실천의 맥락에서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경로 구축 (Sustainable and resilient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hat promotes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ing an inclusive and effective path for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in the context of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 1, 2, 3, 8, 10, 12, 13, 16, 17	
	2022	차기 유엔총회에서 합의할 예정		
	2023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홈페이지¹³⁸⁾>

나) 2020 SDGs 이행 현황

유엔이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SDGs 채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의 이행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2030 의제의 핵심 정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과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한다. 2020년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SDGs 이행의 진척상황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19가 SDGs 개별 목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모자 보건 증진, 전기 접근성 확대, 정부 내 여성 대표성 비율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식량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악화, 불평등 심화 등 다른 측면은 오히려 더 나빠졌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⁹⁾.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137) △인간 웰빙증진 및 빈곤퇴치(목표 1, 4, 6, 16, 17),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달성(목표 2, 3, 17), △지구 보호 및 복원력 구축(목표 12, 13, 14, 15, 1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 (목표 7, 12, 17) △경제적 이익 공유(목표 5, 7, 8, 10, 17),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실천 강화(목표 9, 11, 17)

138)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웹사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검색일: 2020.10.20.).

에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3.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주요 내용

•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빈곤 인구 증가 가능성. 약 7천 1백만 명의 인구가 절대빈곤 상태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됨. 소득 감소, 취약한 사회보호 시스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난과 기아 위기 증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⁴⁰⁾ • 약 16억 명의 비공식 경제 노동자가 위기로 인한 불완전 고용과 실업 문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들의 수입인 코로나 위기 발생 첫 달에 6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¹⁴¹⁾ •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빈민가 거주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 안전한 주택과 식수 부족, 공유 화장실 사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 미비, 과밀한 대중교통,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통에 처해 있음¹⁴²⁾ •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보건 및 예방접종 서비스 중단, 영양개선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2020년에 수십만 명의 5세 미만 사망자와 수만 명의 산모 사망자 추가 발생 가능성 있음. 여성과 아동 대상 가정폭력 신고 급증¹⁴³⁾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휴교로 인해 전 세계 학생의 90%인 15억 7000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¹⁴⁴⁾ 3억 7000만 명 아이들이 학교 급식 제공받지 못하게 됨¹⁴⁵⁾. 가정 내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환경 부족으로 원격 학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 제한¹⁴⁶⁾. 약 70개국에서 2020년 3월과 4월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서비스 중단¹⁴⁷⁾ • 절대빈곤에 처한 가정 증가, 빈곤 지역 아이들의 아동 노동, 조혼, 아동 밀매 위험 증가¹⁴⁸⁾ • 기후변화 심화¹⁴⁹⁾, 해양 산성화¹⁵⁰⁾, 육지 파괴 속도 가속화, 많은 수의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함¹⁵¹⁾.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만연¹⁵²⁾

<출처: 필자 작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 보고서¹⁵³⁾ 요약 발췌>

202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SDGs 이행에 대해 2015년 이후 1차 회기 4년간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으나 2030년까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⁵⁴⁾. SDG1(빈곤 퇴치), SDG9(산업화와 혁신, 기반시설 구축),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서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

139)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June 2020),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0/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2020.pdf>> p. 3.

140) *Ibid.*, p. 24.

141) *Ibid.*, p. 41.

142) *Ibid.*, p. 46.

143) *Ibid.*, p. 28.

144) *Ibid.*, p. 32.

145) *Ibid.*, p. 33.

146) *Ibid.*, p. 33.

147) *Ibid.*, p. 8 & p. 29.

148) *Ibid.*, p. 3.

149) *Ibid.*, p. 18.

150) *Ibid.*, p. 19.

151) *Ibid.*, p. 20.

152) *Ibid.*, p. 17.

153) *Ibid.*

154) *Ibid.*, p. 3.

났다. 또한, 절대빈곤 인구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9년 8.2%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6%로 줄어든 것이라 전망하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¹⁵⁵⁾.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교통망, 인터넷 연결과 접근성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SDG2(기아종식)과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3(기후변화 대응)은 진행이 더디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 서문에서 지적하듯이 코로나19는 SDGs의 이행에 차질을 빚었고, 17개 모든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 위기로 시작되어 전 인류에 대한 최악의 경제 위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유행의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일자리 감소와 생계 수단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최빈국, 군소도서국, 내륙개발국, 분쟁 취약국 역시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세계 무역이 13~32% 급감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대 40% 감소하며,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도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적 상황이 가할 충격은 이미 취약한 보건 시스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등 위기에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¹⁵⁶⁾. 이미 가장 취약하여 개발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SDGs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비롯한 삶의 질 저하와 인권악화 등 SDGs 이행 측면에서 상당히 퇴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유행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없다면 2030년까지 SDGs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나. SDGs와 인권 연계

1) SDGs의 인권 담론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인권

2030 의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권 실현을 추구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권과 개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SDGs 자체가 명시적으로 인권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 면에서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과 기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¹⁵⁷⁾ 이는 2030 의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¹⁵⁸⁾,

155) *Ibid.*, p. 24.

156) *Ibid.*, p. 3.

“모든 국가는 인종, 색깔, 언어,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 상태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강조하고 있는 2030 의제 문서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⁵⁹⁾ 더욱 중요한 점은 “의제가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부합하여 이행되어야 한다”¹⁶⁰⁾고 명시한 점이다. 특히 비전 항목에서 “우리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존중, 법치, 정의, 평등과 비차별, 인종·민족성·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평등한 기회가 있는 세상,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모든 아이들이 폭력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 모든 여성·소녀가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경제적 장벽이 제거된 세상,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가 충족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관용적이며 개방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세상을 기대한다”¹⁶¹⁾고 명시함으로써 인권이 2030 의제가 지향하는 비전의 주요 원칙임을 내세우고 있다.

MDGs가 ‘MDGs와 인권의 관계는 밤새 서로 지나가는 배처럼 서로 상대방이 있다는 인식조차 거의 없고 서로 지속적인 관여가 거의 없다¹⁶²⁾’ 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SDG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발전권 등 훨씬 폭넓은 범위와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에 접근하고 있다¹⁶³⁾.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

157)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para.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58) *Ibid.*, preamble, p. 1, "seek to realize the human rights of all".

159) *Ibid.*, para. 19. "the responsibilities of all State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disability or other status".

160) *Ibid.*, para. 18, "to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161) *Ibid.*, para. 8, "We envisage a world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the rule of law, justic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respect for race, ethnicity and cultural diversity; and of equal opportunity permitting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potential and contributing to shared prosperity. A world which invests in its children and in which every child grows up free from violence and exploitation. A world in which every woman and girl enjoys full gender equality and all legal,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to their empowerment have been removed. A just, equitable, tolerant, open and socially inclusive world in which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re met.

162) Alston, Philip,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7, No. 3 (2005), pp. 755-829, p. 825.

163) UN OHCHR. *Transforming Our World: Human Right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DGs/Post2015/HRAndPost2015.pdf>> (검색일:

서 인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SDG16(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은 출생신고와 정보접근권, 개인의 안전과 법치, 근본적인 자유 등을 포함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형태의 가난을 퇴치’ 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끝내고’ 등과 같은 설정을 통해 SDGs가 감축보다는 완전한 퇴치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MDGs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169개 세부 목표의 90% 이상이 국제인권기준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덴마크인권연구소의 분석¹⁶⁴⁾에 의해 뒷받침된다.

주지하듯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인권의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반영한 점은 2030 의제가 인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원칙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도달해야 함을 의미하며 국가 내부와 국가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 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권리 보유자이자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한다. 빈곤과 기회의 불평등, 자원의 부족과 접근성 부족 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뒤쳐져 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점점 더 배제하고 뒤처지게 하는 차별적 법률, 정책, 사회적 관행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¹⁶⁵⁾ 유엔은 이 원칙을 유엔의 모든 업무가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접근법으로 설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노력의 최우선으로 삼기 위한 공동 행동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¹⁶⁶⁾ 이에 따라 유엔은 유엔 시스템 전체에 걸쳐 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누가 왜 뒤쳐져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결방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진행 상황 추적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와 검토를 보장하며 이를 유엔의 프로그램과 회원국에 대한 정책 지원에 통합시키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협력체제의 6가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¹⁶⁷⁾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0.11.20.).

164) 덴마크인권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dk/learning-hub/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 (검색일: 2020.10.20.).

165) 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홈페이지.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leave-no-one-behind>> (검색일: 2020.10.20.).

166) 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A Shared UN Framework for Action*, UN Doc. CEB/2016/6/Add.1 (09 November 2016).

<<https://www.unsystem.org/content/equality-and-non-discrimination-heart-sustainable-development-shared-un-framework-action>> (검색일: 2020.10.21.).

167) 6가지 지침 원칙은 △Leaving no one behi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Resilience, △Sustainability, △Accountability 등이다.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2019-10/UN-Cooperation-Framework-Internal-Gui>

나) SDGs와 인권의 상호 연계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30 의제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아종식, 질병예방, 양질의 교육, 깨끗한 식수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평화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 등 SDGs의 개별 목표들은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는 물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성평등에 대한 SDG5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10은 명백하게 평등과 비차별 원칙의 실현을 지향한다.

유엔 내 인권 활동 증진과 조정 역할을 맡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이 연계되도록 크게 기여했으며 SDGs 채택 이후에도 SDGs와 인권과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인권조약기구가 2030 의제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며, SDGs 17개 목표별 연계된 인권과 해당 국제인권문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했다.¹⁶⁸⁾

표 24. SDGs 목표와 인권기준 연계

SDGs 목표	국제인권기준
1. 빈곤퇴치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UDHR art. 25; ICESCR art. 11; CRC art. 27]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UDHR art. 22; ICESCR art. 9; CRPD art. 28; CRC art. 26] • 경제생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CEDAW arts. 11, 13, 14(2)(g), 15(2), 16(1)]
2. 기아 종식	•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UDHR art. 25; ICESCR art. 11; CRC art. 24(2)(c)] • 세계 식량 공급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대한 권리[UDHR art. 28; ICESCR arts. 2(1), 11(2)]
3. 건강과 웰빙	• 생존권(특히 여성과 아동에 관해) [UDHR art. 3; ICCPR art. 6; CEDAW art. 12; CRC art. 6] • 건강권(특히 여성과 아동에 관해) [UDHR art. 25; ICESCR art. 12; CEDAW art. 12; CRC art.24] • 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ICESCR art.10]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UDHR art. 27; ICESCR art. 15(1)(b)] • 국제협력에 대한 권리(특히 건강권과 아동권에 관해) [UDHR art. 28, DRtD arts. 3-4; ICESCR art. 2(1); CRC art. 4],

dance-Final-June-2019_1.pdf> (검색일: 2020.11.20.).

168) UN OHCHR, Contributions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6 May 2016),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DGs/Post2015/HRTB_Contribution_26May2016.pdf> (검색일: 2020.11.20.).

4. 양질의 교육	• 교육권(특히 아동, 장애인, 선주민에 관해) [UDHR art. 26; ICESCR art. 13; CRC arts. 28, 29; CRC art. 23(3), CRPD art. 24; UNDRIP art. 14] • 교육에 대한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권리 [CEDAW art. 10] • 기술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일할 권리 [ICESCR art. 6] • 국제협력에 대한 권리(특히 아동, 장애인, 선주민에 관해) [UDHR art. 28; DRtD arts. 3-4; CRC arts. 23(4), 28(3); CRPD art. 32; UNDRIP art. 39]
5. 성평등	•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특히 사법, 정치, 공공영역, 경제적 및 사회생활, 가족 관계에서) [CEDAW arts. 1-5; CRC art. 2, 7, 11, 13, 16] • 가족계획의 권리 [CEDAW arts. 12, 16(1)(e); CRC art. 24(2)(f)] • 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ICESCR art. 10]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철폐 [CEDAW arts. 1- 6; DEVAW arts. 1-4; CRC arts. 24(3), 35]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ICESCR art. 7; CEDAW art. 11]
6. 물과 위생	•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접근할 권리 [ICESCR art. 11] • 건강권 [UDHR art. 25; ICESCR art. 12] • 농촌 여성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해 평등한 접근 [CEDAW art. 14(2)(h)]
7. 지속가능한 에너지	•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UDHR art. 25; ICESCR art. 11]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UDHR art. 27; ICESCR art. 15(1)(b)]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UDHR art. 23; ICESCR arts. 6, 7, 10; CRPD art. 27; ILO Core Labour Conventions and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노예, 강제노동, 인신매매 금지 [UDHR art. 4; ICCPR art. 8; CEDAW art. 6; CRC arts. 34-36] • 고용에 있어 여성의 동일한 권리 [CEDAW art. 11; ILO Conventions No. 100 and No. 111] • 아동 노동 금지 [CRC art. 32; ILO Convention No. 182] • 이주노동자의 동일한 노동권 [CMW art. 25]
9. 산업화 증진과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축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UDHR art. 27; ICESCR art. 15(1)(b)] • 정보접근권 [UDHR art. 19; ICCPR art. 19(2)] •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거권 [UDHR art. 25; ICESCR art. 11] • 여성의 금융대부 및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동일한 권리 [CEDAW art. 13(b), art. 14(2)]
10. 불평등 완화	• 평등과 비차별권 [UDHR art. 2; ICESCR art. 2(2); ICCPR arts. 2(1), 26; CERD art. 2(2); CEDAW art. 2; CRC art. 2; CRPD art. 5; CMW art. 7; DRtD art. 8(1)] •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 [UDHR art. 21; ICCPR art. 25; CEDAW art. 7; ICERD art. 5; CRPD art. 29; DRtD art. 8(2)]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UDHR art. 22; ICESCR arts. 9-10; CRPD art. 28] • 국제이주 조건 증진 [CMW art. 64] • 이주민의 소득 및 저축 송금권 [CMW art. 47(1)]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거권 [UDHR art. 25; ICESCR art. 11]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UDHR art. 25; ICESCR art. 15; ICERD arts. 5, 7; CRPD art. 30; CRC art. 31]

	• 장애인, 아동, 농촌 여성의 교통, 인프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CRPD art. 9(1); CRC art. 23; CEDAW art. 14(2)] •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CRPD art. 11]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2] •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1]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ICCPR, ICESCR art. 1(2)]
13. 기후변화 대응	•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2; CRC art. 24; CEDAW art. 12; CMW art. 28] •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1]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ICCPR, ICESCR art. 1(2)]
14. 해양 생태계	•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2; CRC art. 24; CEDAW art. 12; CMW art. 28] •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1]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ICCPR, ICESCR art. 1(2)]
15. 육상 생태계	•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2; CRC art. 24; CEDAW art. 12; CMW art. 28] •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UDHR art. 25(1); ICESCR art. 11]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천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ICCPR, ICESCR art. 1(2)]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 [UDHR art. 3; ICCPR arts. 6(1), 9(1); ICPED art. 1; UDHR art. 5; ICCPR art. 7; CAT art. 2; CRC art. 37(a)] •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 보호 [CRC arts. 19, 37(a)], including trafficking (CRC arts. 34-36; CRC-OP1)] • 정의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 [UDHR arts. 8, 10; ICCPR arts. 2(3), 14-15; CEDAW art. 2(c)] • 법적 인격권 [UDHR art. 6; ICCPR art. 16; CRPD art. 12] •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 [UDHR art. 21; ICCPR art. 25] • 정보접근권 [UDHR art. 19; ICCPR art. 19(1)]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 모든 사람의 자기 결정권 [ICCPR, ICESCR art. 1(1); DRtD art. 1(1)] • 모든 사람의 개발과 국제협력의 권리 [UDHR art. 28; ICESCR art. 2(1); CRC art. 4; CRPD art. 32(1); DRtD arts. 3-5] • 과학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UDHR art. 27(1); ICESCR art. 15(1)] • 통계 수집 및 이용 시 인권 존중과 윤리적 원칙 등 사생활권 [CRPD art. 31(1)]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료¹⁶⁹⁾>

테마크인권연구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SDGs와 인권의 연계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연구소는 SDGs와 국제인권기준의 연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실시하고, SDGs의 169개 세부 목표 중 92%가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며 인권 가이드¹⁷⁰⁾를 발간하여 목표별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관

169) UN OHCHR, *Summary table on the linkages between the SDGs and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DGs/Post2015/SDG_HR_Table.pdf> (검색일: 2020.10.20.).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0 의제가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이 수립해온 인권 규범을 기반으로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같은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가 개별 국가들의 SDGs 실행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SDGs와 인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SDG와 인권 데이터 탐색기(SDG-Human Rights Data Explorer)¹⁷¹⁾를 출범시켰다. 탐색기는 2007년 이후 유엔인권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약 15만 건의 권고와 관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거의 60%가 SDGs와 직접 연결되므로 개별 국가들의 SDGs 구현과 연관성이 높다¹⁷²⁾. 169개의 SDGs 세부목표와 특정 지역, 국가 또는 그룹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권고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2030 의제의 후속 조치와 검토를 촉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위의 인권 가이드는 이 탐색기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탐색기가 분석한 국제인권기준은 △유엔의 주요 인권기준(Cor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인권 관련 환경기준(Environmental Instruments), △기타 국제기준(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지역 인권기준(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의 5개 카테고리로 제시된다. 또한 탐색기는 권리 보유자를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여성과 소녀, 소수민족, 아동, 난민 및 망명자, 이주민, 장애인, 인권옹호자, 원주민, 내부 실향민, 노인 등 특정 그룹을 필터링 하여 그룹에 관련된 SDGs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¹⁷³⁾

170)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dg.humanrights.dk/en>> (검색일: 2020.10.20.).

171)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https://sdgdata.humanrights.dk/>> (검색일: 2020.10.20.).

172)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https://sdgdata.humanrights.dk/en/what-is-the-upr-sdg-data-explorer>> (검색일: 2020.10.20.).

173)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 <<https://sdgdata.humanrights.dk/en/groups>> (검색일: 2020.11.20.).

그림 3.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데이터탐색기의 북한 데이터: 북한에 대한 인권 권고와 SDGs 연계 정도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웹사이트¹⁷⁴⁾에서 발췌>

위 그림은 인권 데이터 탐색기를 활용하여 확인된 북한에 대한 인권기준 및 권고 사항 현황과 SDGs와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탐색 결과, 북한에 대한 UPR 권고는 697개로 이중 북한이 수용한 것은 35%이며, 특별절차는 37개,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조약은 98개로 나타나 모두 832개로 나타났다. 이 중 SDGs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332개로 전체의 40%로 나타났으며 이중 UPR 권고가 251개로 가장 많다¹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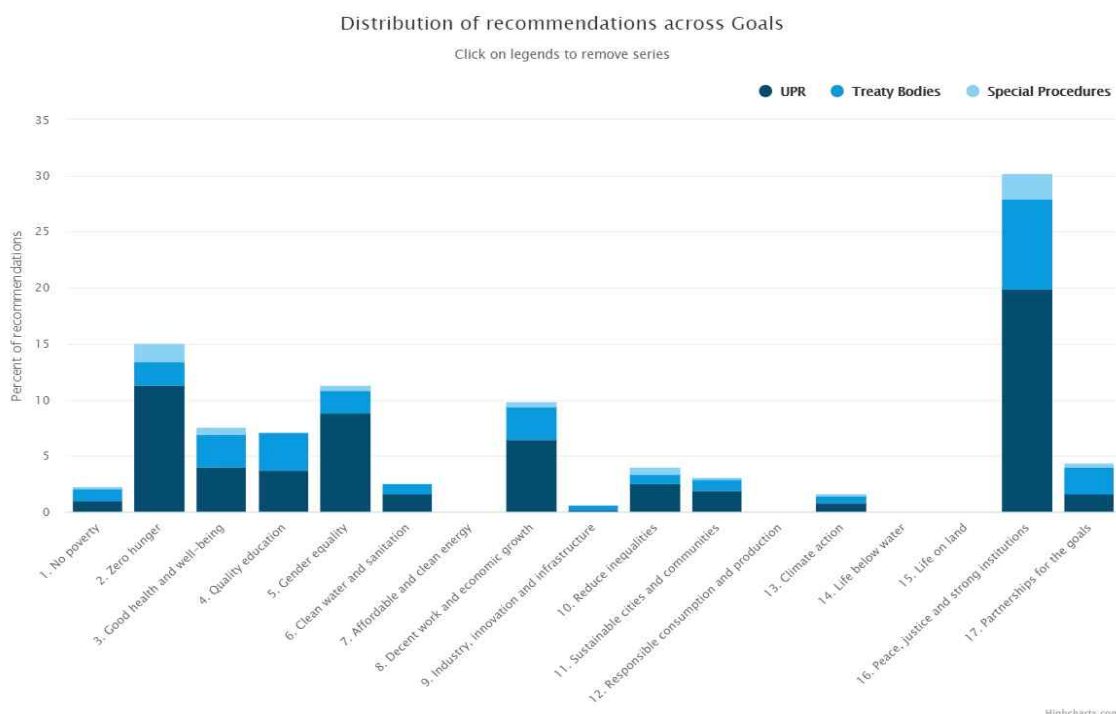
아래 차트는 SDGs 목표별로 연계 분포된 북한에 대한 인권기준 및 권고 사항이다. 17개 목표 중 목표 16번에 관한 권고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SDG16에 관한 권고 중 UPR 권고가 95개, 조약이 38개, 특별절차에 해당하는 권고는 11개이다. 다음으로는 SDG2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으며 (UPR 54개, 조약 10개, 특별절차 8개) 이어 SDG5, SDG8 순으로 권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2장에서 밝힌 제3차 UPR 권고와 SDGs 간의 연관성과 동일한 결과이다¹⁷⁶⁾. 이에 따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 과제가 거버넌스와 사법정의, 기아,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174)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북한 탐색 결과,
<<https://sdgdata.humanrights.dk/en/country/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검색일:
2020.11.20.).

175) *Ibid.*

176) *Ibid.*

그림 4.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데이터탐색기의 북한 데이터: 북한에 대한 인권 권고의 SDGs 목표별 분포 현황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웹사이트¹⁷⁷⁾에서 발췌>

이와 같이 SDGs와 국제인권기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 접근방식은 국제사회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도출, 정책 일관성, 효율성, 참여와 포용 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가능성과 한계

2030 의제는 각국 정부가 SDGs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 야심찬 의제와 목표를 기꺼이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수준의 검토는 SDGs 이행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국 정부들이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일부 국가들은 이행 의무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특정한 도전적인 문제는 제쳐두게 될 수 있다.

이때, 유엔인권대표사무소가 제시한 SDGs와 인권기준과의 연계 표와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 활용은 각 국가들이 당면한 인권 과제를 도출해 줌으로써 SDGs 이행 과정과 인권 개선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177)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

<<https://sdgdata.humanrights.dk/en/country/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검색일: 2020.11.20.).

있다. SDGs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시행, 모니터링과 검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체계적 적용은 SDGs를 통한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SDGs와 달리 본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조약은 SDGs 이행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인권 메커니즘은 SDGs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자발적 국별 리뷰나 SDGs 이행 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성과까지 염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개별 국가들이 SDGs 이행과정에서 목표별 관련 인권 권고를 연계하여 이행 성과를 공유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SDGs 이행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권 개선 노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이자 인권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인권 담론과 국제인권 메커니즘 참여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에게는 SDGs라는 보편적 목표를 통해 인권 개선 노력에 다소 완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한편, SDGs를 통한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업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인권 개선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려면 실질적 이행 차원에서 개발 정책과 인권 의무 간의 일관성을 높이는 더 많은 조치가 요구된다. 이행 의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명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구속력 있는 책임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반해야 한다. 현재 체계적으로 SDGs와 인권기준을 연계하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개별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인권기관에서 개별국가들에게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가 SDGs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와 관련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2030 의제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선언¹⁷⁸⁾으로부터 출발해, 극심한 불평등을 줄여야 빈곤을 종식시키고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MDGs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SDGs의 야심차면서도 잠재적인 인권 실현 의지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해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국제인권 메커니즘이 SDGs와 2030 의제를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회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DGs와 국제인권과의 연계는 불평등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법적 의무와 연결하고, 개발 결과의 불평등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어떻게 조장하는지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SDGs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국제인권

178)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p. 4.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들의 이행 노력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가) 국가인권기구와 SDGs 이행

SDGs의 인권적 접근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SDGs의 이행 책임을 개선하고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인권 관련 기관과 메커니즘 중 하나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를 들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제 인권규범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으로 알려진,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제 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¹⁷⁹⁾.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부서(OHCHR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 NIRMS)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임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1993년 국가인권기구의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HRIs, ICC)가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114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인권기구는 각 국가에서 인권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2019년 기준 A 등급으로 승인 받은 국가는 80개이며, B 등급 국가는 34개이다¹⁸⁰⁾.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루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한다. 2030 의제와 SDGs에 명시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SDGs 달성에 필요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책임 메커니즘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2030 의제가 채택된 지 불과 몇 주 후, 멕시코 메리다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회 회의¹⁸¹⁾에서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는 SDGs 달성을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2030 의제 실현을 위한 인권기반 접근방식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179) OHCHR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COUNTRIES/NHRI/Pages/NHRIMain.aspx>> (검색일: 2020.10.18.).

180)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홈페이지, <<https://ganhri.org/membership/>> (검색일: 2020.10.18.).

18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at Rol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8-10 October 2015, Mérida, Yucatàn, Mexico.

상호 역량강화 및 경험 공유에 협력하기로 한 메리다 선언(Mérida Declaration on NHRIs and SDGs)을 채택했다. 메리다 선언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SDGs 이행 관련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¹⁸²⁾. 인권기준과 연계하여 SDGs 이행을 국내에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표 25. 메리다 선언에 제시된 국가인권기구의 SDGs 이행 관련 주요 역할

-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보고
- 정부 자문
- 인식 제고 및 대화와 참여 촉진
- 이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개발과 강화
- 국가 지표 수립
- 정부 책임 촉구 및 의무 위반 조사
- 사법 정의, 구제와 회복에 대한 접근성 촉진

<출처: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보고서 발췌¹⁸³⁾>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인권 모니터링과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¹⁸⁴⁾. 여기서는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이 2017년과 2019년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아르헨티나 국가인권기구(Defensor del Pueblo de la Nación)는 특정 그룹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마련을 위해 수많은 주제별 연구를 실시하고 포괄적인 SDGs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¹⁸⁵⁾. 또한, 덴마크, 인도네시아, 케냐,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통계청과 파트너십을 맺어 데이터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취약 집단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국가인권위원회는 코스타리카의 SDGs 이행에 있어 모든 공공 기관 및 기타 부문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조정을 장려하며, 특히 SDG16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2017년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 코스타리카 최초의 SDGs 이행경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SDGs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의 자문위원 역할도 맡고 있다.¹⁸⁶⁾ 독일 인권연구소는 지난 몇 년간 독일이 유엔 인권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과 SDGs를 비교 분석하여 다수의 SDGs와 관련된 구

182)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ccelerators, Guarantors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2019), pp. 3-4.

183) *Ibid.*

184) Filskov, Nadj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June 2017).

185) *Ibid.*, p. 18.

186) *Ibid.*, p. 36.

체적인 이슈를 부각시키며 독일의 국내 SDGs 목표와 지표 작성 및 이행 점검 과정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¹⁸⁷⁾ 또한, 2016년 고위급정치포럼에 독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내어 독일 정부가 인권기구로 받은 권고를 SDGs 이행 지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¹⁸⁸⁾

표 26. 아르헨티나 국가인권기구의 SDGs 인권 모니터링 사례

- 아르헨티나 국가인권기구는 2016년 1월 종합적인 SDGs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함.
- 2017년 6월 SDGs와 명백히 연계된 57건의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매년 관련 국가 당국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됨.
- 아르헨티나 국가인권기구는 UPR 권고와 SDGs 사이에 중복되는 이슈를 매핑하여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대학,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UNDP 아르헨티나 사무소와 협력하여 아르헨티나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4번의 회의를 개최함.

<출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보고서¹⁸⁹⁾ 발췌>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민간 및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간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부문과 유형의 행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2030 의제의 맥락에서 이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며,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예로, 칠레 국가인권기구인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¹⁹⁰⁾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모든 인권 모니터링 의무 및 독립적 지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상황별 분석과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하여 다양한 SDGs 목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통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SDG16.b, SDG10.3 및 SDG5.1은 차별적인 법률 및 정책의 제거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 및 정책의 촉진 및 집행을 요구하는데 이때 국가인권기구는 차별적 정책과 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⁹¹⁾. 기존의 국제 및 지역의 인권 보고

187) *Ibid.*, p. 25.

188)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Germany's 2016 Report to the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ents by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810DIMR%20Comments.pdf>>
(검색일: 2020.10.18.).

189) Filskov, Nadj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June 2017),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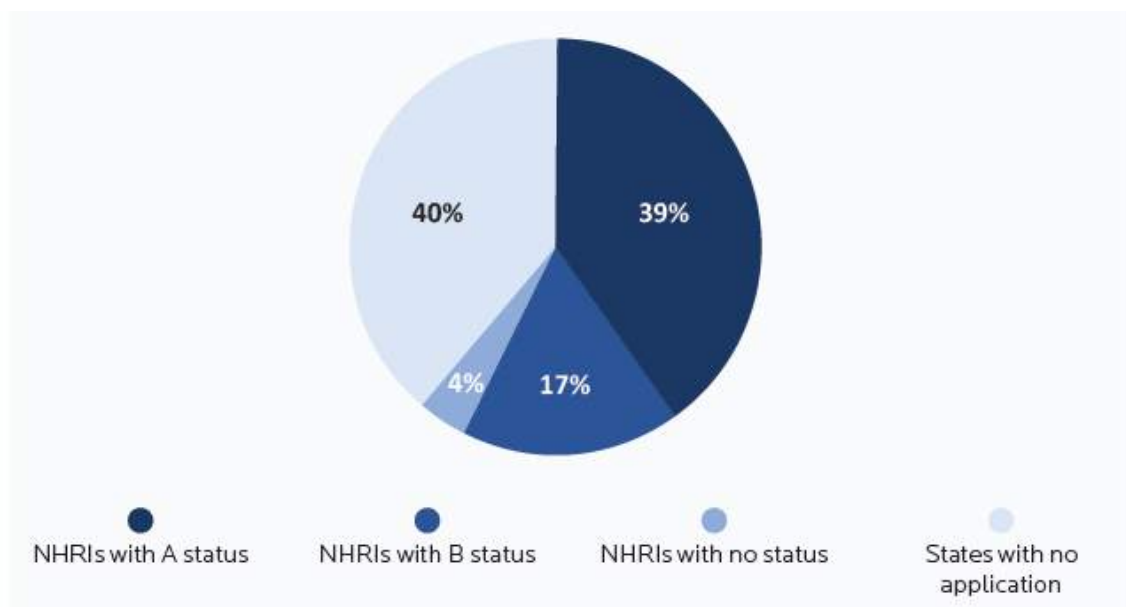
190)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ccelerators, Guarantors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2019), p. 4.

191) *Ibid.*, p. 4.

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국가지표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형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방식을 포함해 불평등과 차별의 패턴을 포착하고 식별해낼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SDG16의 글로벌 지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 하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분과위원회에서 파리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A, B 또는 등급 없음 지위를 부여받는다. SDG16.a의 글로벌 지표는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즉 A 등급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묻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의 약 39%인 76개 유엔 회원국이 A 등급 인증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B 등급의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한 나라는 32개이다. 유엔 회원국의 40%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¹⁹²⁾.

그림 5. 2018년 유엔 회원국이 보유한 국가인권기구 등급 분포



<출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보고서¹⁹³⁾ 발췌>

SDGs 이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구축의 중요성은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총회 결의안(A/70/163)은 ‘회원국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국가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경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모두를 위한 기본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모든 관련 유엔 메커니즘 및 절차에 국가인권기구가 계속 참여하고 심의에

192)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ccelerators, Guarantors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2019), p. 6.

193) *Ibid.*, p. 6.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194)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UPR에서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권고는 검토 중인 국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권고 중 하나이다. 공인된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73개 유엔 회원국이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를 수락했으며, 59국이 기존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수락했다.¹⁹⁵⁾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은 SDGs 이행 모니터링에 인권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시 SDGs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정부가 SDGs 이행 과정에서 인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SDGs 이행상황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행동계획 개발, 이행 모니터링, 인권 기반 접근법 적용에 대한 조언 제공 및 모든 프로세스의 참여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예로, 2013년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시 SDGs와 인권 연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유네스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다자간 협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SDGs의 이행 모니터링에 인권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후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가 협력하여 인권 관점의 SDGs 이행 모니터링 분석 프레임워크 도구를 개발했다.¹⁹⁶⁾

표 27. 스코틀랜드의 국가인권행동계획(NAP)과 SDGs 연계 사례

- 2013년 출범한 스코틀랜드의 국가인권행동계획(SNAP)은 국가 성과를 평가하는 틀인 국가성과 프레임워크(National Performance Framework, NPF)의 핵심에 인권을 두어 NAP과 SDGs, NPF 간의 통합적 연계를 고안했음.
- 스코틀랜드 정부는 NPF팀, SDG팀, 인권팀, 스코틀랜드 인권위원회(SHRC)를 결합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국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권에 기반한 성과 관리와 지표를 개발함. 스코틀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획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법의 적용을 지원하는 것임.

<출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보고서¹⁹⁷⁾ 발췌>

이처럼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국가와 다양한 행위자 및 국제 인권 시스템 간의 가교 역할, 인권기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인권 교육 등에서의 주제 전문성은 SDGs 이행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의 책임 메커니즘

194) UN General Assembly,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 Doc. A/RES/70/163 (10 February 2016). para 8, 15.

195)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ccelerators, Guarantors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2019), p. 10.

196) Filskov, Nadj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June 2017). pp. 18-19.

197) *Ibid.*, p. 19.

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¹⁹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심분 활용하는 것은 SDGs가 선언적으로 명시한 국제인권법과 조약과 긴밀히 연결하여 SDGs 자체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인권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SDGs와 인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의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인권기구가 SDGs에 내재된 인권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유엔 회원국 중 40%는 여전히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북한을 포함하여 베트남, 라오스,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당되며, 미국, 일본도 아직 국가인권기구가 없다.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나라들 중 일부는 UPR 등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를 받고 이에 대한 검토 단계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차, 2차 UPR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를 받고 수용했다.

여기서는 현재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나라 중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SDGs와 인권의 연계 노력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본다. 베트남의 경우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SDGs 국내 이행 전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인권적 접근을 살펴본다. 중국의 경우 WHO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건강권 측면에서 국가개발계획과 SDGs를 연계한 사례를 검토해본다. 두 사례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SDGs를 활용한 협력방안 모색에 실마리를 찾아본다.

① 베트남

■ 베트남-유엔 파트너십 전략 프레임워크¹⁹⁹⁾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지속적인 시장 기반의 개혁과 점진적인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빈곤율은 1993년 58.1%에서 2015년 7%로 감소했다²⁰⁰⁾. 베트남의 MDGs 이행 성과는 대부분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만큼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다양한 차원과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경제성장 둔화, 거시 경

198) Hosie, Alison, "Contributing to the Accountability Web: The Role of NHRIs and the SDGs",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3 March 2016). <<http://bit.ly/2tLVITB>>; Donald, Kate, "Promising the World: Accountability and the SDGs",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7 January 2016). <<http://bit.ly/2sGdQis>> (검색일: 2020.10.18.).

199)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The United Nations in Viet Nam, *One Strategic Plan 2017-2021*, (June 2017).

200) *Ibid.*, p. 20.

제 불안정, 새로운 형태의 빈곤 및 취약성과 불평등 증가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은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SDGs 이행과 인권적 접근 방식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 및 운영 프레임워크 전략 문서(One Strategic Plan 2017-2021)는 유엔이 베트남의 국가개발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2011-2020),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과 궤를 맞추고 있다²⁰¹⁾. 동 전략문서의 비전은 포용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SDGs의 상호연결성이 전략문서에 고도로 통합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이를 위한 유엔, 정부,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의 확대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전략문서는 SDGs의 중심 주제인 사람, 지구, 번영, 평화에 따라 4가지 중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를 통해 선정된 인권과 성평등, 대중 참여,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데이터, 파트너십과 혁신의 5가지 교차성 주제(cross-cutting themes)²⁰²⁾를 연계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파트너십은 △집단적 글로벌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발 정책 옵션 제공, △SDGs 실현을 지원하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 개발 지원 △인권, 형평성, 사람 중심 개혁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엔의 규범적 목소리와 요구에 충족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남남협력을 강화하여 베트남의 개발 공약 이행과 경험 공유 기회 증가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세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인권, 형평성 및 사람 중심의 개혁에 대한 유엔의 규범적 목소리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²⁰³⁾. 베트남 정부는 유엔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전략문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개발 계획 이행 전반의 인권적 접근 또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제 국가행동계획²⁰⁴⁾ 및 자발적 국별 리뷰(VNR)

베트남은 2017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 NAP)을 수립하고, SDGs를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Viet Nam SDG(VSDG) 115개의 세부목표로 재구성하여 국내화했다. 2005년 설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경쟁력향상협의회가 베트남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SDG NAP 시행의 주무부처이다 타 부처의 기획재정부

201) *Ibid.*,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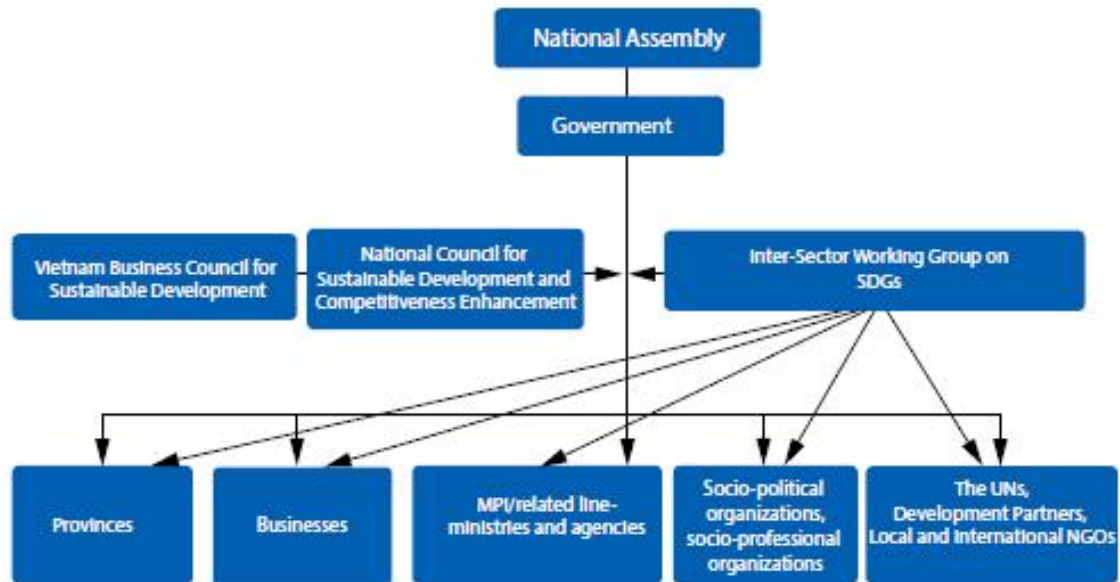
202) *Ibid.*, p. 13.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ublic participation, data for development and partnership and innovation”.

203) *Ibid.*, p. 13. “Meeting strong demands for a more robust UN normative voice on human rights, equity and citizen-centered reforms that leave no one behind”.

204) Government of Viet Nam,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May 2017).

서 및 지역의 기획투자부가 중점 실무를 맡고 일부 부처, 유관 기관, 지역에서도 운영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지원 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관여하고 있다. 국회와 베트남 조국전선(Viet Nam Fatherland Front) 및 사회단체 등이 SDGs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맡고,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부처, 관계기관, 단체 간의 조정 강화를 위한 부문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도 구성하였다.

그림 6. 베트남 SDGs NAP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출처: 베트남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²⁰⁵⁾ 발췌>

동 국가행동계획은 크게 5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그 중 4번째에서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가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 자원에 접근하며,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어린이, 여성, 노인, 빈곤층, 장애인, 소외지역 및 기타 취약계층 등 가장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SDGs의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²⁰⁶⁾.

베트남 정부가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에 제시된 목표별 이행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인권과 연계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국가행동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SDGs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지표에 포함시

205) Government of Viet Nam, *Viet Nam's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une 2018), p. 26.

206) Government of Viet Nam,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May 2017), p. 7. "Efforts will be made to leave no one behind and to prioritize those population who are most difficult to access, including children, women, the elderly, the poor, the handicapped people in isolated and remote region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켜 SDGs 이행을 통한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8. 베트남 SDGs 국가행동계획의 SDGs 세부목표와 인권협약 연계 항목

CRP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SDG 4.1 학령기 아동, 특히 소외지역 거주 아동 및 소수민족 아동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 메커니즘을 동원하고 도입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 및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²⁰⁷⁾
	SDG 4.3 b 사회복지 수혜자, 빈곤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한다. ²⁰⁸⁾
	SDG 4.5 2030년까지 장애인,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과 직업훈련에 균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²⁰⁹⁾
	SDG 4.5 b 직업교육을 사회복지 수혜자, 빈곤층, 극빈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훈련에 관심을 가진다. ²¹⁰⁾
	SDG 4.8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친화적 신축 교육시설과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교육시설을 필요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²¹¹⁾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SDG 5.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여성과 관련된 국가의 국제공약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가 나이 차이, 출생 시 성비의 불균형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하여 만든 권고 사항의 이행을 강화한다. ²¹²⁾

207) Mobilize and introduce effective mechanisms to support people in to sending children of school age to schools, particularly children in isolated, remote regions and especially disadvantaged regions and ethnic minority children. Carry out inclusive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8) Make increased efforts in implementing policies in support of social welfare beneficiaries, poor people, people in vulnerable circumstances,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have enabling conditions to access vocational education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209) By 2030, ensure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rai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thnic minority people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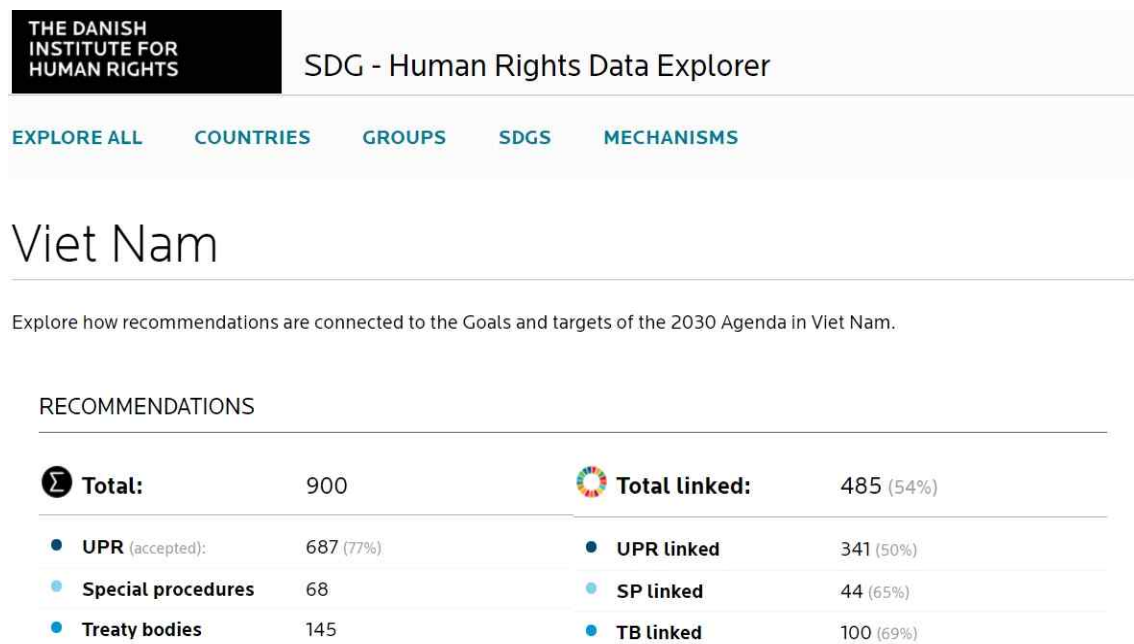
210) Expand vocational education to social welfare beneficiaries, the poor, the near-poor: give attention to the train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211) Ensure that newly built educational facilities that are child friendly,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repair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so that they can meet the required criteria.

212) Periodically review the country's international commitments relating to wome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Step up the implementation of all the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를 활용한 결과, 베트남에 대한 인권 권고는 모두 900개이며, 이중 54%인 485개가 SDGs와 연결되어 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목표 16번에 대한 권고가 월등하게 많으며 이어 SDG1, SDG4, SDG10, SDG8에 대한 권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고려한다면 추후 베트남 정부가 SDGs 이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목표들에 인권 기준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SDG16 이행 모니터링 지표로 베트남 정부가 받은 인권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에서도 SDG16 이행 과정에서 인권적 접근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7.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베트남 데이터: 베트남에 대한 인권 권고와 SDGs 연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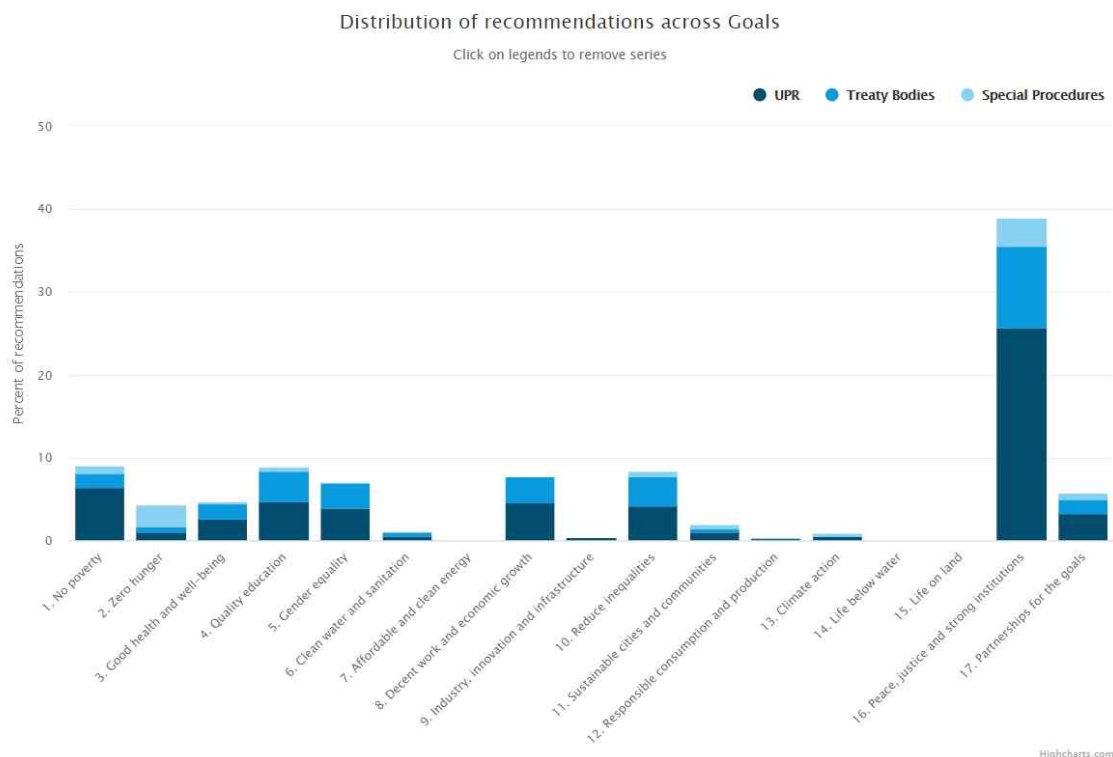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웹사이트²¹³⁾에서 발췌>

long-pending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EDAW Committee relating to differences in retirement age, imbalances in sex ratio at birth.

213)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베트남 탐색 결과,

<<https://sdgdata.humanrights.dk/en/country/viet-nam>> (검색일: 2020.11.20.).

그림 8.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인권 데이터 탐색기의 베트남 데이터: 베트남에 대한 인권 권고의 SDGs 목표별 분포 현황



<출처: 덴마크인권연구소 웹사이트²¹⁴⁾에서 발췌>

표 29. 베트남 2018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의 SDG16 이행 주요 내용

- 모든 국민의 사법정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주요 사법개혁과 입법개혁을 실시함. 형법, 민사소송법, 구금 및 임시구금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 종교 및 민간신앙에 관한 법률 시행 -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책이 모든 사람들의 정보 접근 보장, 베트남이 비준한 국제조약 및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호 등 SDG 16 이행에 기여 - 베트남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포용성, 참여, 대표성을 보장하는 16.7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 문서 공포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정 시도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활을 위한 제도 시행. 2016년 베트남 정부는 7월 30일을 '베트남 인신매매 반대 기념일'로 승인. 2011~2016년 인민법원은 1193건에 대한 1심 재판과 1130건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함. 2016-2017 베트남 관할 당국이 1500건 이상(인신매매 피해자 600명 포함)의 피해자 구조,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 지원, 심리 상담, 건강검진, 법률적 지원, 보조금, 직업훈련 제공. 2017년 5월, '아동법 시행 및 예방과 아동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행동의 달 시행. 국가아동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Children)와 아동을 위한 국가직통전화 핫라인 111을 설립 2007~2016년 정부 법률 지원 단체는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빈곤층, 소수민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해 51,721건의 변론을 지원함
--

214)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베트남 탐색 결과,
<<https://sdgdata.humanrights.dk/en/country/viet-nam>> (검색일: 2020.11.20.).

- 행정개혁 실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성과지수(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적용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적용되었음

<출처: 베트남 2018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²¹⁵⁾에서 발췌>

② 중국

중국은 2015년 10월부터 2030 의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국가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에 시작된 중국의 1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은 45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관리 책임에 따라 부서별로 배정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SDGs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중국국가계획(China’s National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²¹⁶⁾’을 수립했다. 중국은 2016년 첫 번째 자발적 국별 리뷰에 참여했고, 2017년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1차 보고서²¹⁷⁾를 제출했으며, 2019년에는 1차 보고서 이후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종합하여 2차 보고서²¹⁸⁾를 발표했다. 2021년 2차 자발적 국별 리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²¹⁹⁾.

중국이 제시한 SDGs 이행의 9가지 핵심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표 30. 중국 2030 의제 이행의 핵심 우선순위

- 빈곤을 완화하고 종식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통해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농업 생산 능력과 식량 안보 강화
- 혁신 중심의 개발 전략을 실행하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추진력 창출
- 산업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 감소
-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및 사회 서비스 개선
- 평등과 사회정의의 보호를 통해 복지 개선 및 모든 인간의 개발 촉진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 장벽 구축
-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후변화대응을 국가개발 전략에 통합
- 자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촉진
- 국가 거버넌스 개선 및 법치에 따른 경제사회 발전 보장

<출처: 중국 1차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 요약문²²⁰⁾ 발췌>

215) Government of Viet Nam, *Viet Nam’s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une 2018), pp. 77-87.

216)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ptember 2016).

2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ugust 2017).

2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ptember 2019).

219) 유엔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http://sdg.iisd.org/news/ecosoc-president-announces-hlpf-2021-vnr-presenters/>>

(검색일: 2020.11.20.).

220)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Summary of China’s A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uly 2016).

중국은 동 계획문서의 4장인 이행을 위한 접근법을 설명하는 장에서,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거버넌스 제도와 통치 역량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제도 구축과 민주주의 향상, 법적 기반에 따른 국정 운영과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²²¹⁾. 불평등을 다루는 SDG10을 내재화한 세부목표 10.3에서 구체적으로 평등한 참여와 개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여성, 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리와 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²²⁾.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SDG16에 대해서도 세부목표 16.3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법치의 향상, 국민들에 대한 사법 지원 시스템, 구제시스템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²²³⁾.

여기서는 중국이 WHO와 함께 실시한 보건 정책 사례를 통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권적 관점을 반영한 SDGs 이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²²⁴⁾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744ChinasNationalActionsonthe2030Agenda%20\(final\).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744ChinasNationalActionsonthe2030Agenda%20(final).pdf)> (검색일: 2020.10.18.).

221)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ptember, 2016), p. 11, "China will step up the legislative work to improve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develop socialist democratic political system, foster advanced socialist culture, innovate on social governance, safeguard citizens' rights and enhance people's livelihood, safeguard national security, protect the eco-environment and improve government functions. It will also take targeted efforts to build a comprehensive, scientific, effective and law-based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222) *Ibid.*, p. 48, "Safeguard social equity and justice and protect people's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and equal development. Advance scientific and democratic legislation to build a complet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Create and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fair and healthy competition and equal access to capital and market opportunities. Establish a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al protection system that better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women, min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223) *Ibid.*, p. 63, "Deepen judicial reforms to establish a judicial system that is just, effective, and authoritative. Improve the judicial protection of rights and the judicial supervision over government power. Improve judicial division of labor and checks and balances. Improve the rule of law in terms of social governance. Establish a public legal service system that covers both urban and rural areas. Improve the legal aid system and judicial relief system."

224)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gr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Health in All Policies: Case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2017).

표 31. 중국의 ‘모든 정책에서의 보건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Health in All Policies (HiAP): Action plan for promoting healthy China - outline of the Health China 2030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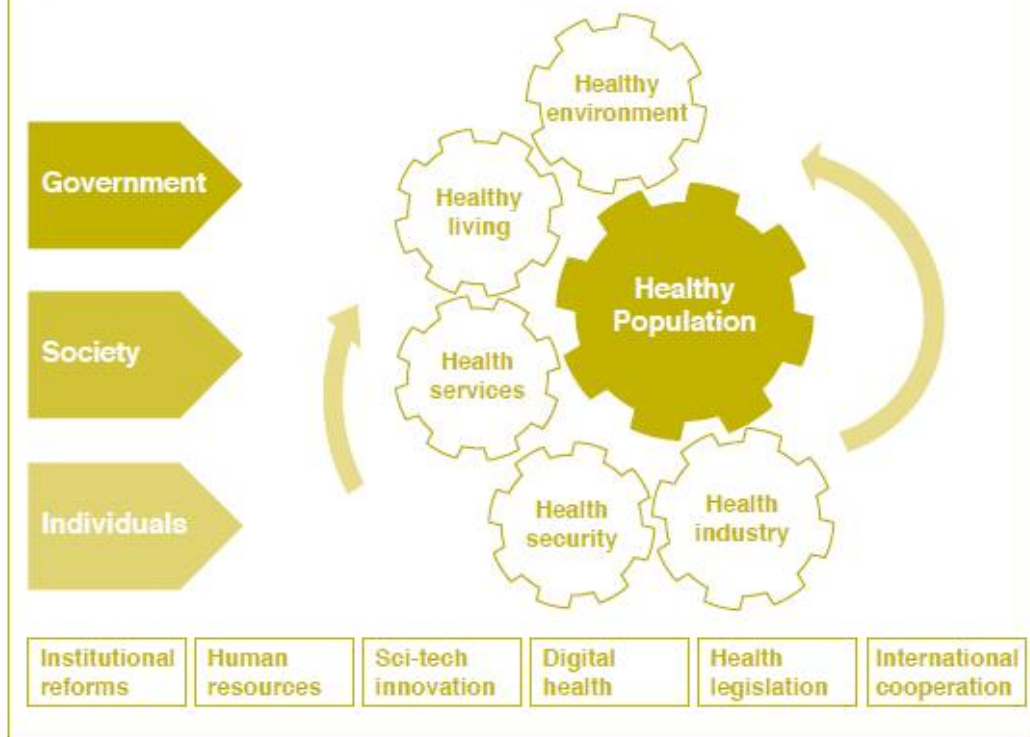
- 2015년 제18차 CPC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건강한 중국 건설’에 합의, 2016년 3월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체육총괄청, 환경부 등 20여개 부처 참여 초안 작성 실무단과 전문가 패널 설치. 국가 중장기 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와 실시. 지자체, 산업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 2016년 8월 19~20일 전국보건의료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 8월 26일, 중앙 정치국 회의는 “건강한 중국 2030 계획 개요안(the Healthy China 2030 Planning Outline)”을 검토하고 비준.
- 2016년 10월 25일 CPC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15년 내 건강한 중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중장기 국민건강계획 수립. 사회주의 사회의 근대화와 번영을 위해 인구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요 접근법.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2030 의제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 실행계획은 WHO의 ‘하나의 건강(one health)’의 10대 개념을 고수하며, 개발 의제에 건강을 우선과제로 부여, 보건과 의료 발전을 위한 지침과 원칙을 정의. 공공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보건 개발을 포함, 건강한 생활과 생태계, 사회경제적 발전모델의 형성을 촉진, 모든 국민이 전인적, 평생 건강증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Figure 1. Staged goals of the Outline of Healthy China 2030 Plan



- 비전
 - 인구보건 중심으로 공공정책 수립 전 과정에 건강증진 통합
 - 건강한 생활습관, 생태계, 사회경제적 발전모델의 개발
- 목적
 - 건강한 중국 건설의 근본적인 목표는 건강한 인구를 유지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평생 욕구에 초점을 맞춰 더 나은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공평하고 접근가능하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생활방식과 작업 및 생활환경, 의료 시스템과 같은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다룰 필요 있음.
 -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보편적인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적 장치를 혁신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와 예방, 치료 및 재활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평생 건강의 수요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 우선순위 파악, 개입의 강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치료와 보호 제공. 국민의 전방위적 건강 유지 보호 필요
 - 2020년, 2030년, 2050년 건강한 중국을 위한 3단계 개발 목표 설정
 - 건강이 개발 의제의 최우선으로 간주. 사회경제발전 계획에서 건강 목표를 강조, 공공정책 입안 및 시행에서 보건의 우선순위 정하고 보건의 수요를 공공 투입으로 조달하고 기본적인 보건과 의료 제공. 정부 주도의 보건 개혁
 -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및 하위 그룹간의 건강 불평등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서비스 형평성 확대. 비영리 기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가용성 보장을 목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보장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
- 건강한 중국 2030 액션플랜 개요 틀
 - '하나의 건강' 관점에서 SDGs와 보편적 건강관리(Universal Health Care)요건과 연계하여 건강한 생활, 보건관리 서비스, 보건안보, 보건환경, 보건관리 시장에 관한 5가지 전략과제 제안, 5대 전략과제 수행을 위해 제도개혁,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혁신, 정보서비스, 입법, 국제교류협력 실시, 전방위적인 의료개혁 추진. 주요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 계획과 정책의 건강영향종합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실시.
 - health in all, health by all, health for all 기조
 -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여성연맹, 장애인연맹, 기타 사회단체 대표, 비공산당, 무당파 그룹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 추진, 공동 TF 구성
 - 복수 소스의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자금 조달 보장. 보건에 대한 공공 재정 투입 증가. 경제 낙후지역은 중앙정부의 양도대금 지급계획에서 우대.
 - 감독과 모니터링은 공공규제, 산업개발, 사회적 감시 등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 보건 분야 법규 정비. 의약품과 보건기관 승인정책 개편. 공적 업무와 정보 공개. 보건 표준, 프로토콜 및 지침 개발.
 - 지방분권과 행정 간섭 감소. 저장성, 상하이, 산둥성 일부 지방에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운영그룹이나 건강관리위원회 조직하여 업무 조정과 제안

Figure 2. Framework of the Outline of the Healthy China 2030 Plan



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 보건문화 육성, 보건교육 강화, 보건문해력 향상,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가정과 개인에 개입과 멘토링. 보건교육은 국가 커리큘럼의 일부로
- 국가영양계획 개발 및 실행, 스포츠와 피트니스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다양한 인구집단, 스포츠 운동과 의료 서비스 결합한 질병 관리, 의료서비스의 혁신적 모델 개발

② 의료 서비스 최적화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 집단 중심으로 예방·치료 대책 병행. 기초 공중보건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 촉진, 통합진료전달체계 구축, 가족 주치의 계약 기반 진료제공 촉진, 의료전달방식 혁신, 비감염성 질병 예방,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③ 건강보장 개선

-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공공병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순환체계와 메커니즘 개혁 추진. 국가 마약 대응 정책 개선, 건강보험 지급방식 개혁, 지속가능한 건강보호역량 확보하기 위해 상업적 보험옵션 개발

④ 건강한 환경 조성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관련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산업오염원 배출관리 종합계획 추진. 종합적인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식품과 의약품 안전 보장. 생산 안전과 직업 건강 개선. 도로교통안전 강화

⑤ 의료산업 개발

- 의료 산업의 다원적 구조 구축, 의료 산업의 다원화, 의료관광 등 새로운 형태의 건강서비스 개발, 피트니스, 레저, 스포츠 산업 촉진

- 애국건강운동위원회 회원 기관(Member institutions of the current Patriotic Health Movement Committee)
 -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 Ministry of Agriculture
 -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The Propaganda Department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 Ministry of Civil Affairs
 - Ministry of Finance
 - Ministry of Human Resource and Social Security
 - Ministry of Transport
 -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 Ministry of Water Resources
 - Ministry of Commerce
 -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Communist Youth Leagues, All-China Women's Federations
- 거버넌스와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하여 강력한 행정력 작동. 액션플랜의 시행은 15년간, 대상과 과제의 세부사항을 정의하고 이행프로세스 운영. 5가지 전략과제에 대한 13가지 핵심 지표 설정. 전반적인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 서비스 및 보호, 보건 산업 및 제도적 장치 정의.
 - 액션플랜 이행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기타 정책 문서 수립과 시행 요구
 - 핵심 지표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부처 간 세부과제 분포와 모니터링 및 평가전략 수립. 매년 진행상황 평가와 중간검토 및 최종평가 실시.
 - 동 액션플랜을 기반으로 제13차 보건의료 5개년 계획, 제13차 의료개혁 5개년 계획 등 보건 분야 핵심 개혁, 개발계획 발표.

다) 시사점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SDGs를 통한 국내 인권 증진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북한은 1차, 2차 UPR의 권고 중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과 인권침해 대응 국가제도 구축 권고를 수용하긴 했으나 아직은 인권 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가인권기구가 없고, 일당제 사회주의국가로서 동질한 정치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와 인권 연계 노력에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SDGs 이행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다.

자료의 한계가 있으나 2018년 자발적 국별 리뷰를 실시한 베트남의 경우 2021년 자발적 국별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게 준비과정과 이를 위한 국내 이행 거버넌스 형성,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 SDGs와 인권 메커니즘의 결합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SDGs의 인권 원칙을 반영하여 여성, 어린이, 노인,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SDGs 국가행동계획 안에서 SDG4와 SDG5와 인권조약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권고 결과 권고의 30%가 SDG16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권고 중 SDG16번에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베트남이 이후 SDG16번의 이행을 인권기준과 연계하여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북한과 공유한다면, 아직 SDGs 이행을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WHO라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하에 SDGs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이라는 목표에 기반한 국가 보건정책인 “건강한 중국 2030 계획”을 수립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동 계획은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국민건강계획으로, SDGs와 그 이행과정이 인권 관점에 기반한 국가의 보건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계획을 통해 중국은 보건과 의료 발전을 통해 단지 건강뿐만 아니라 성평등, 취약계층 포용, 산업 발달, 일자리 창출, 도로교통안전 강화, 교육 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SDGs의 다른 목표들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동 계획이 유엔인권 메커니즘과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존권, 건강권을 비롯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건강권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권리,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접근할 권리, 장애인, 아동, 농촌 여성 등 취약계층의 교통, 인프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 등 SDGs 목표별 연계된 국제인권기준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서술할 북한-유엔 전략계획의 4대 전략 우선순위 중 첫 번째인 식량 및 영양 안보 관련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SDGs 이행 환경 및 현황

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1) 북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 정부는 2016년 9월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유엔 전략계획)”에 합의했다.²²⁵⁾ 본 전략계획은 북한 외무성과 유엔전략계획 운영위원회의 주도로 입안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북한 내에서 진행될 유엔의 활동에 대한 합의사항들을 담고 있다. 유엔은 전략계획의 목표를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의 본질을 “단순한 물자지원이 아닌 국제적인 원칙과 가치, 표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략계획 수립의 근간이 된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략계획 문서는 전략의 틀을 담고 있을 뿐 개별사업을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평가와 모니터링의 실현 가능성 역시 담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과 북한 정부 간의 협력에 있어 북한 정부의 주도성 (leadership and ownership)을 존중하는 것이 유엔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셋째, 유엔의 활동은 자원 전달이 아닌 기술과 지식, 그간의 경험 전달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국가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넷째, 전략계획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개발과 인도적 접근을 동시에 취한다. 다섯째, 여러 분야에 걸쳐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

이 일반원칙에 따라 수립된 북한-유엔 전략계획은 주민들의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제고함으로써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 개발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법 (cross-cutting approaches)에 근거하여 식량 및 영양안보 (Food & Nutrition Security), 사회개발 서비스 (Social Development Services),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데이터와 개발관리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의 네 가지를 전략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²²⁶⁾

첫째, 식량 및 영양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신

225)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226) *Ibid.*, pp. 16-22.

이 원하는 식량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며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및 영양안보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생과 보건, 돌봄과 같은 조건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전략 우선순위 두 번째인 사회개발서비스와 연동되며 SDG2와 SDG9가 이에 해당된다. 식량 및 영양안보는 그동안 유엔의 대북사업의 주요 목표였지만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남아있다. 유엔은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결핍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북한 사회의 장기적 개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자급량을 증대하여 모든 사람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표 32.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 안보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전략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 안보 관련 SDGs 목표 SDG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SDG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성과목표 1.1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 1.2 모든 가계가 언제든지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제고 1.3 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²²⁷⁾
--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번역본>

둘째,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는 교육, 보건, 물과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SDG3, SDG4, SDG6에 해당한다. 북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초중등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MDG2, MDG3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WASH의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 물과 관련 위생시설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²²⁷⁾ 보건 역시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의료장비와 물자의 부족 및 의학 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4년 사회인구보건조사(Social and Demographic Health Survey)에 따르면 북한인구의 기대수명은 72세로 향상되었으며 모성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6명으로 감소하였다. 기존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율은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전염병에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예측되며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개발서비스와 관련된 계획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UPR에서 북한정부가 수용한 일부 권고 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227) Ibid., p. 18.

표 33.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관련 SDGs 목표 SDG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228] SD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SDG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성과목표 2.1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의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2.2 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제공 2.3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2.4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 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 보급 2.5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번역본>

셋째,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은 유엔의 대북사업의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난 위기 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7, SDG11, SDG12, SDG13, SDG15에 해당한다. 북한은 산림파괴와 토양침식 등의 환경문제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지며 이러한 취약성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식량과 영양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한 북한의 생물다양성 보존 역시 이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유엔은 북한 내부의 환경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과거의 취합된 정보들에 따르면 북한은 주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이와 관련해 재난 대비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등 기후변화에 관련한 여러 국제협정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²²⁸⁾

228) Ibid., p. 19.

표 34.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3: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SDG 목표와 성과목표

전략 우선순위 3: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SDGs 목표 SDG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를 조성한다. SDG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SEP] SDG13: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한다.[SEP] SDG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성과목표 3.1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SEP] 3.2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원에의 접근 3.3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 [SEP]
--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번역본>

넷째, 데이터와 개발 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는 유엔이 대북사업을 공개되고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의 세 가지 전략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역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은 북한 정부의 요청 및 사업 진행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진행된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MDGs에서 SDGs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 있어 국제표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것이며 인권분야의 국제 규범 및 표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네 번째 전략우선순위는 앞의 세 가지 전략우선순위와의 연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데이터와 개발 관련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표 35. 북한-유엔 전략계획 전략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 관련 성과목표

성과목표 4.1 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인도·개발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 4.2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SEP] 4.3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번역본>

유엔의 통합적 접근법은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적인 인간개발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²²⁹⁾ 해당 접근법은 첫째, SDGs를 북한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고, 둘째, 인권 기반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취하며, 셋째,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를 지원하고, 넷째,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섯째, 북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여섯째, 성과 기반 관리 (result-based management) 등의 사업원칙을 아우른다.

전략계획은 2015년부터 2년간 준비되었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기존 유엔개발계획(UNDP)등 유엔기구가 진행해온 사업들을 2016년으로 종료하고 2017년부터 5년간의 새로운 추진 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유엔기구들은 분야에 따라 북한 정부와의 양자 논의를 통해 계획을 추진, 조정하며 매년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상주조정관이 공동의장을 맡고있는 유엔전략계획 운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며 유엔은 전략계획 실행기간 중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정기검토를 통한 전략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가 진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²³⁰⁾

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SDGs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MDGs 이전부터 그 이후의 국제사회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이 대기근을 겪었던 1995년 시작되었다. 이때의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지원이 대북지원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5년 9월, 긴급구호가 아닌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²³¹⁾ 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한 협상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당시 북한은 유엔상주조정관 유엔 북한팀과 함께 대북 개발지원 활동 5개년 전략을 수립하고 MDGs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M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²³²⁾

2005년 북한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대북지원사업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심의 물자지원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229) *Ibid.*, p. 8.

230) *Ibid.*, pp. 9-10.

231) 강동완,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통일과 평화』,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p. 261.

232) 임을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pp. 137-164.

서서히 감소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지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2005년 이전까지는 인도적 지원이 전체 대북지원의 47~82%를 차지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16%까지 감소하였고, 사회 인프라 지원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6.12%를 차지하였다.²³³⁾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MDGs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은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내외부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유엔기구의 북한진출이나 MDGs 이행을 위해 유엔의 관리 및 평가 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대외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적인 환경과 주권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²³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와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이어 2003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그리고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뒤이은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718호)와 2009년 5월 25일에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1874호)가 이행되면서 북한의 MDGs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MDGs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이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매우 제한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MDGs 이행 5개년 계획은 5년이라는 프로젝트 사이클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연장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방향이 다시 2005년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²³⁵⁾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MDGs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스트 2015의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²³⁶⁾ 북한은 포스트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 의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2020년 7월 자발적 국별 리뷰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²³⁷⁾ 뿐만 아니라 북

233) 박지연, “UN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제19권 제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pp. 123-147.

234)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UN Doc. A/65/PV/6 (21 September 2020), pp. 52-53.

235) Noij, Frank. & Fauveau, Vincent. “UNFPA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fth Programme Cycle, 2011-2015/6”, UNFPA (2015), pp. 10-60.

236)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237) Statement by Ri Su Yo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at the UN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s://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RiSuYong_UNGA2015.pdf> (검색일:

한의 「경제연구」의 최근 논문들은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와 과학기술, 생태환경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으로서 현 세대의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후대들의 수요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국제사회의 SDGs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²³⁸⁾

2016년 5월 제 7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북한은 SDGs의 정책방향과 북한의 정책방향의 일치를 강조하였고, 2016년 4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의 SDGs 달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제거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력, 풍요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행동 프로그램”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²³⁹⁾ 이와 같이 북한은 SDGs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연설,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공감과 SDGs 이행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 것을 확인한다. (2016.4.21. 리수용 북한외무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고위급 회의)

유엔식량 및 농업 기구의 협조가 성원국들에서 지속개발목표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어야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 리념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와 성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빈곤청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다. (2017.7.4. 장천식 대표단장, 제40차 FAO 총회)

북한이 자립의 기치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 9. 30. 김성 주유엔대표부 상임대표, 유엔총회 일반토의)”²⁴⁰⁾

2020.11.15.).

238)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20), pp. 93-119에서 재인용.

23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s a program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ledges to eliminate social inequality and poverty on a global scale, give full rein to human dignity and creative ability and guarantee affluent lives not only to our generation but to the future generations.”, Statement by H.E. Mr. RI SU YO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Thematic Debate o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21 April 2016 <<http://statements.unmeetings.org/media2/7657570/dprk.pdf>> (검색일: 2020.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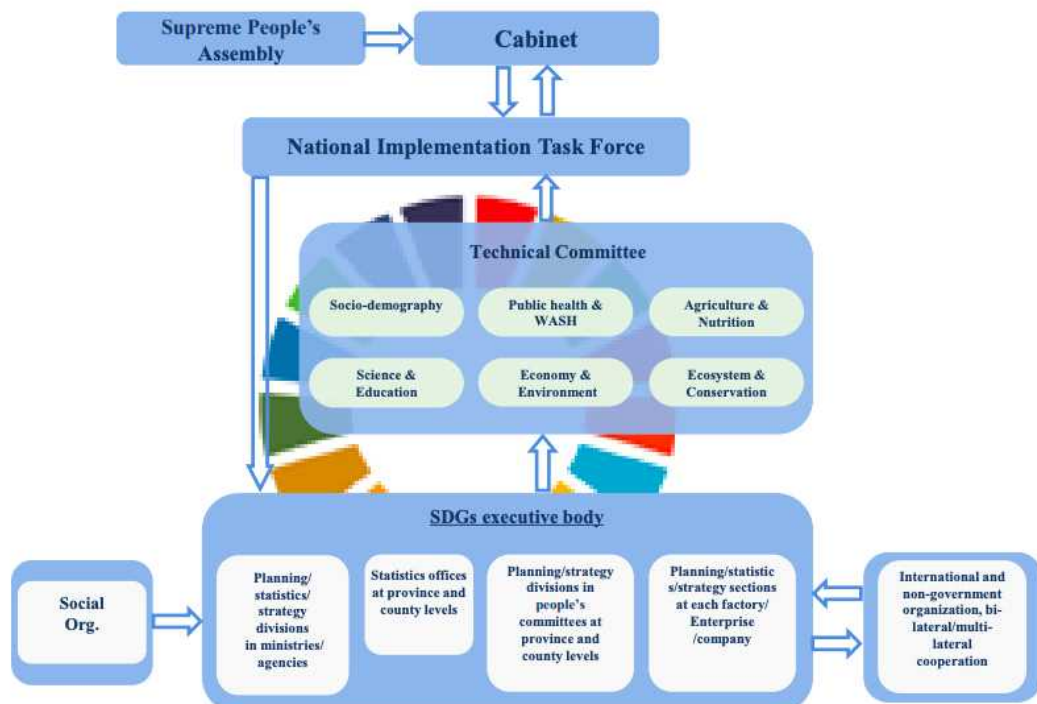
240) Ibid.

나. 북한의 SDGs 이행 노력과 도전과제

1) 북한 SDGs 이행 목표와 국내화 노력

북한은 2016년 5월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5개년 전략은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⁴¹⁾

그림 9. 북한 SDGs 이행 체계



<출처: 북한 발표 자료 인용²⁴²⁾>

북한의 5개년 전략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인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와 그

24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4&koreanChrctr=&dicaryId=238>> (검색일: 2020.6.20).

242) 북한 대표,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발표자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9.10.15.-16.).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ession%201-3.%20Country%20Presentation_DPRK.pdf>(검색일: 2020.7.10.).

방향을 같이 한다. 2016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 역시 이 5개년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²⁴³⁾

지난 2019년 북한은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의 지표로 구성된 SDGs를 현지화 하여 17개 목표, 89 세부목표, 130개의 지표로 구성된 북한 버전의 SDGs를 수립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SDGs 이행전략은 SDGs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분야별 계획에 통합하는 것으로 SDGs 2, 6, 7, 15를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SDGs 이행에는 국가조정위원회와 외무성, 중앙통계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⁴⁴⁾

표 36. UN SDGs와 북한 SDGs

	UN SDGs	북한 SDGs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농업과 식량자급력의 지속적 발전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문명화된 삶과 웰빙(well-being)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노동자의 지식노동자화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장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보장 및 모두를 위한 위생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
목표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자급적, 지식기반 경제를 확립하고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현대적인 정보기술과 과학의 기반 위에 국가경제를 세우기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인민의 지

243)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UN Doc. A/71/PV/17 (23 September 2016), pp. 47-50.

244) 북한 대표,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발표자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9.10.15.-16.).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ession%201-3.%20Country%20Presentation_DPRK.pdf> (검색일: 2020.7.10.).

		위와 역할을 강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보다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 보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응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안, 바다 및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회주의 체제의 통합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우호적인 파트너십 개발

<출처: 필자 작성, 내용 참고: ESCAP 남상민 부소장 발표자료²⁴⁵⁾ 참고>

북한은 2020년 자발적 국별 리뷰에 참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직전까지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주최의 자발적 국별 리뷰 준비 워크숍에 2019년 2회,²⁴⁶⁾ 2020년 1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²⁴⁷⁾ 북한은 SDGs의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2)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최은희(2020)는 정보 제공의 한계와 체제의 차이 등으로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은 상황에서 SDGs의 이행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기 보다는 북한이 어떤 이행의 잠재력을 가지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⁴⁸⁾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 역시 북

245) 남상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담론의 북한 적용”,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북한주민을 위한 SDGs 활용방안 발표자료, 2019.12.13.

246) ESCAP

<<https://sdgs.un.org/un-system-sdg-implementation/economic-and-social-commission-asia-and-pacific-escap-24510>> (검색일: 2020.7.13.).

247) 남상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담론의 북한 적용”,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북한주민을 위한 SDGs 활용방안 발표자료, 2019.12.13.

248)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오름, 2020).

한은 SDGs 이행 단계가 아니라 이행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북한의 SDGs 이행 잠재력을 가늠하기 위하여 북한의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유관 국제기구 및 국내 연구기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북한-유엔 전략 계획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현황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는 관계로 그 한계가 분명함을 밝힌다.

① 전략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SDGs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SDGs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2019년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소비 수준은 매우 낮으며 식단의 다양성 역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 농업의 주요 생산물인 쌀, 옥수수, 감자가 북한 주민들의 주요 식단으로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부족하며, 식량 수급에 있어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친지들에게 식량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⁹⁾

또한 군인을 제외한 북한 전체 인구의 71.5%에 해당하는 1750만 명이 공공배급 시스템을 통해 식량을 보급 받고 있으며 28.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은 그 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1월 이후, 공공 배급 시스템은 1인당 배급량을 300그램으로 줄였다. 전년 대비 80그램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⁵⁰⁾

그림 10. 북한의 공공배급시스템 이용 인구비율

Total Population	PDS-dependent population	Cooperative/ State farmers
24,584,652*	17,581,362	7,003,290
	71.5%	28.5%

*Army staff is excluded as explicitly stated in data provided by CBS.

<출처: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2019)>

SDG2의 세부목표 2.1의 측정지표는 영양결핍 유병률(POU), 식량불안정경험치(FIES)이다. 유엔의 SDGs 국가별 프로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영양결핍유병률(POU)은 47.6%에 이른다. 이는 MDGs 종료 시점인 2015년 44.5%보다도 2.1% 증가한 수치이다.²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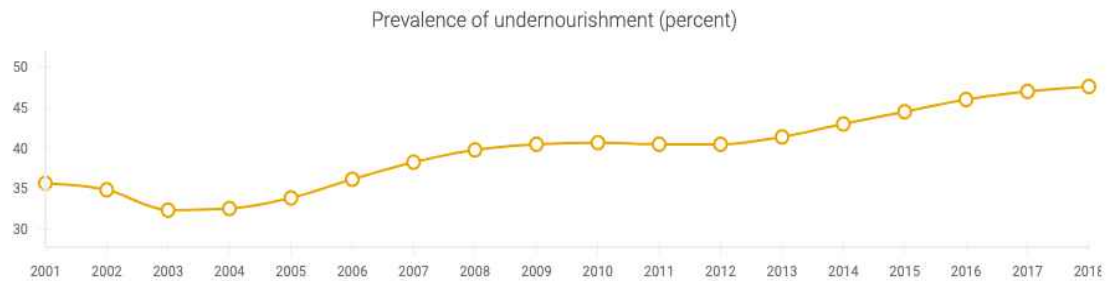
249) UN World Food Program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ay 2019), pp. 11-12.

250) *Ibid.*, p. 29.

251) UN SDG Country Profile, DPRK, Goal 2.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2>> (검색일: 2020.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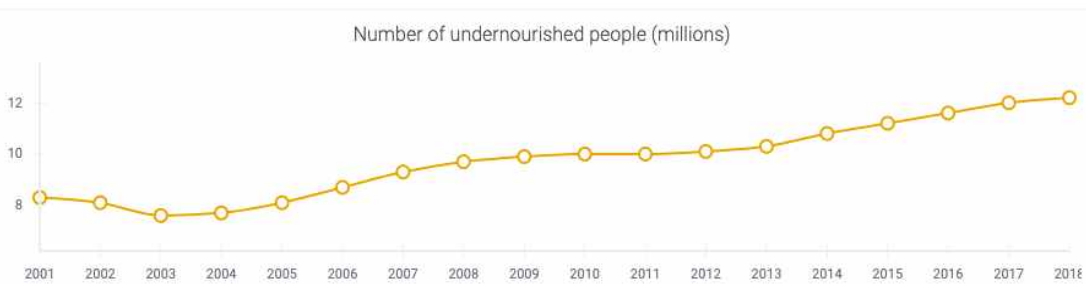
그림 11. SDGs Country Profile, DPRK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⁵²⁾>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2001년 830만 명에서 2015년 1,120만 명, 2018년 1,22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5세 이하 아동의 발육 부진의 경우, 2000년 12.2%에서 2017년 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³⁾

그림 12. SDGs Country Profile, DPRK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⁵⁴⁾>

이러한 결과에는 북한이 농업 및 식량안보와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과 유엔 역시 동 그룹의 영양결핍문제에 인도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019년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 참석한 북측 대표는 해당 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아쉬움을 공유하기도 했다.²⁵⁵⁾

유니세프의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인구 620만 명 중 45만 명이 필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설사를 앓았던 762,775명의 아동들이

252)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 (검색일: 2020.11.15.).

25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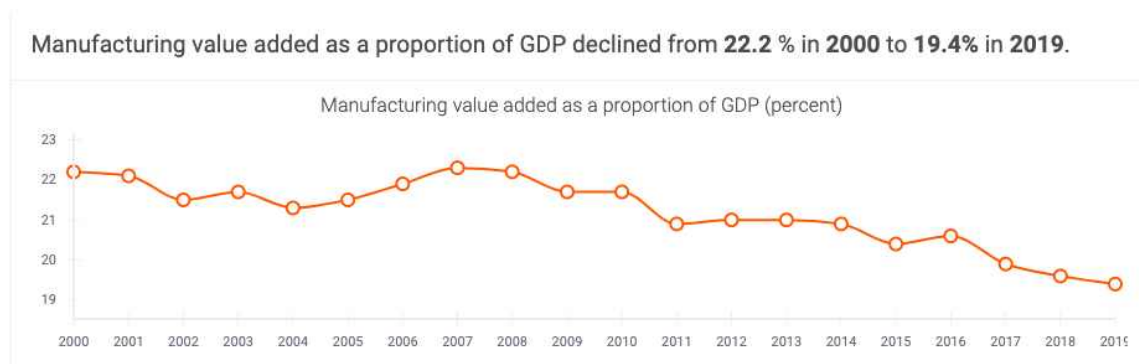
254) *Ibid.*

255) 북한 대표,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발표자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9.10.15.-16.).

경구재수화염(Oral Rehydration Salt)을 공급 받았으며 9만2330명의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들이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받았다. 또한 6개월에서 23개월의 영유아 49만8천명을 포함한 15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가정 식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타민 A가 들어간 영양 분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⁶⁾

농업과 관련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에서 잠업, 축산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지속해왔으며,²⁵⁷⁾ 국제 NGO들은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 개선을 위해 식량 지원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²⁵⁸⁾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업 인프라에 타격을 입음으로써 북한의 식량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9년 태풍으로 인해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도 지역에서 6,36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²⁵⁹⁾

그림 13. UN SDGs Country Profile, SDGs 9.2.2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⁶⁰⁾>

또한 유엔의 국가별 SDGs 프로필에 따르면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19년 19.4%로 감소했으며 북한의 1인당 제조 부가가치 역시 2015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135.8 달러에서 2019년 123.1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¹⁾

통계청의 2019년 북한 주요 통계지표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제조업은 감소세에

256) 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2019).

<<https://www.unicef.org/media/73706/file/DPRK-SitRep-End-of-Year-2019.pdf>> (검색일: 2020.10.11.).

257) 최용호 외, 「개혁·개방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북한농업동향」, 제21권 제3호 (2019), pp. 99-106.

259) 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2019).

<<https://www.unicef.org/media/73706/file/DPRK-SitRep-End-of-Year-2019.pdf>> (검색일: 2020.10.11.).

260)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 (검색일: 202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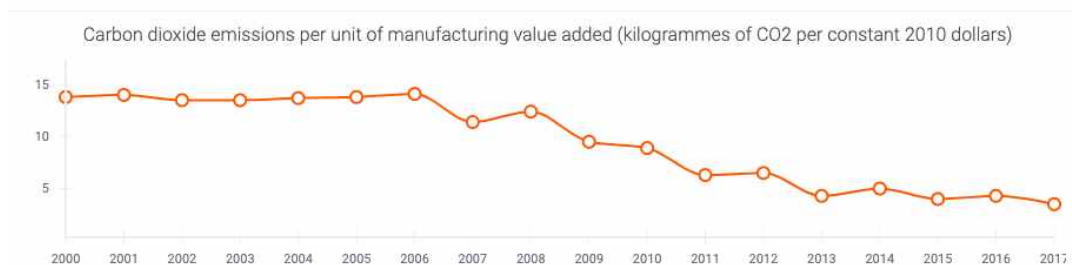
261) *Ibid.*

있다. 북한의 산업별 실질국내총생산의 추이를 보면 2018년 농림어업생산액은 6조 9,210억 원으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제조업은 5조 6,310억 원으로 1990년 기준, 11조 8,35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북한의 국내총생산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33.0%), 농림어업(23.3%), 제조업(18.8%), 광업(10.6%) 순으로 나타났다.²⁶²⁾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꾸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산업화 동력 부족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2016. 6)에서 제시된 제7차 당대회 결정사항에도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²⁶³⁾ 북한의 친환경적 정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⁶⁴⁾

그림 14.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SDGs Country Profile, DPRK)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dollar of manufacturing value added at constant prices of 2010 decreased from 13.8 kg in 2000 to 3.5 kg in 2017.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⁶⁵⁾>

②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SDGs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SDGs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SDGs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북한은 1990년대 10만 명당 120명 이상의 매우 높은 모성사망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199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89명에 도달하여 매우 안정적이다.²⁶⁶⁾ WHO에 따르면 북한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262)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9), pp. 97-108.

263)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국가전략」, 제25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9), pp. 5-31.

264) 빙현지 외,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pp.20-22.

265)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 (검색일: 2020.11.15.).

나타났는데,²⁶⁷⁾ 이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회복되지 못한 보건 인프라의 문제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최근 WHO 결핵 보고서에 따라 결핵 고위험국가로 재분류되었으며,²⁶⁸⁾ 말라리아와 간염 역시 타 국가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편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염병이든, 만성질환이든, 응급치료든 북한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경우,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보편 의무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년 9월 25일 제12차 최고 인민 회의 제6차 회기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 12년제 보편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사회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보육 5년,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졸업반 1년과 고등학교가 졸업반까지 운영된다. 특수 교육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9세부터 19세까지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 9년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²⁶⁹⁾

유네스코가 정리한 SDG4 국가 현황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교육 시작 연령은 유아교육의 경우 5세, 초등교육은 7세, 중등교육은 11세, 고등교육은 14세이다. 기초 문해력 초등학교 2, 3학년 기준 남학생 94.7%, 여학생 94.8%로 총 94.8%의 성취율을 보이며 수리능력의 경우에는 남학생 80.1%, 여학생 83.8%로 총 81.9%의 성취율을 보였다. 또한 5세 이하의 아동의 87.7%가 사회심리적 웰빙과 건강 면에서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⁰⁾ MICS 2017은 북한의 7~14 세 아동의 문해력 및 수리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95%가 성별, 시골-도시, 지방 또는 부 상태에 따라 사실상 차이가 없는 높은 능력을 보였다. 기초 수리력은 평균 84%로 지역 편차가 나타났다. 자강도 (67.3%), 함경북도 (73.7%), 평안북도 (72.8%)는 북한 전체 평균에 밀돌았다.²⁷¹⁾

266) World Health Organization,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xecutive summary*, (2019).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27596>> (검색일: 2020.10.13.).

267)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Statistics* (2020).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2070/9789240005105-eng.pdf>> (검색일: 2020.12.1.).

268) “북한 결핵 발생률 세계 5위…WHO ‘결핵 고위험국가’로 재분류”, 『연합뉴스』, 2020.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038300504>> (검색일: 20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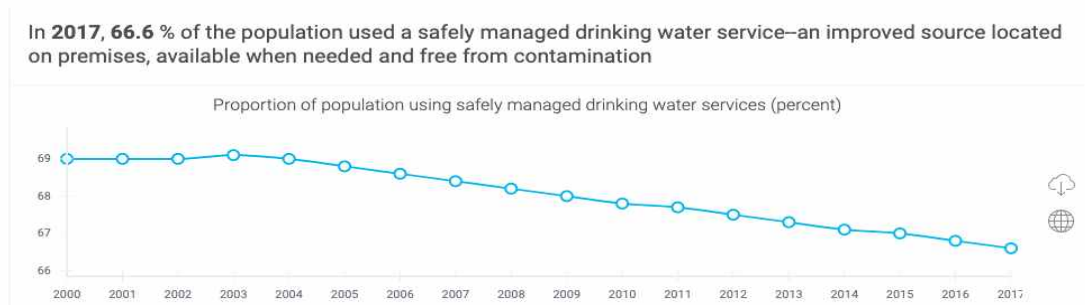
269)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제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 3-16.

270)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4 COUNTRY PROFILE, DPRK*.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untryprofiles/KP.pdf>> (검색일: 2020.11.1.).

271)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p.161-165.

건강권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식수의 경우,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60.9%만이 위생적인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이 보장되는 식수에 대한 접근성은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큰 편으로 도시인구의 71.3%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농촌은 44.5%에 그쳤다.²⁷²⁾ 또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역시 도농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양 거주 가구의 98.7%의 접근성을 가진 반면, 황해남도 73.2%의 접근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오염되지 않은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⁷³⁾>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여러 기간산업들이 무너지면서 2002년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국의 보고서는 수자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⁷⁴⁾ 위 표에 따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위생적인 식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급수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북한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2003년 시작되어 점차 강화되어 온 대북제재의 영향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진행한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단은 SDG6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식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국제기준에 맞는 100%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표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²⁷⁵⁾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는 다른 동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중력을 이용한 자연적 물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2002년 시작한 이 공사는 지난 17년 동안

272) Ibid.

273)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6>> (검색일: 2020.11.15.).

274) UNOCHA, *DPRK SECTOR REPORT: WATER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June 2002), p. 2.

275) DPRK,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NEA MSH Forum, 2019.10.15-16).

약 2만9천리(11,600km)에 해당하는 관수 체계를 확립했다고 전해진다.²⁷⁶⁾ WASH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급수 시스템 덕분에 약 16,000 명이 8개의 보육원과 유치원, 6개의 학교와 2개의 보건 시설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²⁷⁷⁾

③ 전략 우선순위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SDGs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SDGs 13. 기후변화 긴급 대응
SDGs 15.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SDG7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8년 에네르기관리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해양, 연료 전지 등 6개의 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데이터베이스화 계획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북한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목표 설비용량인 500만kW는 현재 북한의 주요 전력 설비인 수력 발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1990년대 시작된 북한의 에너지난은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고, 2001~2017년 기간 중 연평균 약 0.4%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원유도입량은 -0.6%, 발전용량 역시 -0.06%의 연평균 감소세를 보여 2017년 총 발전량은 235억kWh를 보였다.²⁷⁸⁾

이렇게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은 북한의 SDGs 이행에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석탄 발전 증대를 추진하였으나 오랜 대북제재로 인한 자원의 한계들로 인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에너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전력 생산 체계로는 현재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너지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²⁷⁹⁾

SDG11의 경우, 토지주택연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은 약 588만가구이며 당시 가구당 인구수 3.9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핵가족 비율은 31.5%, 대가족은 66.3%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가구원수는 핵가족 기준 3.02명, 대

276) “北, 17년 동안 전국에 ‘자연흐름식물길’ 2만9천리 확립”, 『통일뉴스』, 2019.10.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29>> (검색일: 2020.11.15.).

277) UNICE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Annual Results Report*, (2019).

<https://www.unicef.org/eap/sites/unicef.org/eap/files/2020-05/EAPRO%20WASH%20Results%20Report%202019_FINAL.pdf> (검색일: 2020.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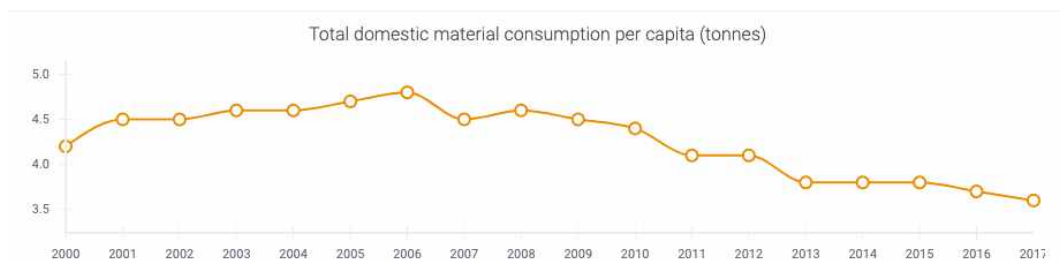
278) 곽대중, “북한 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향”,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18), p. 22.

279) *Ibid.*, pp. 23-25.

가족 기준 4.42명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는 평양이 326만 명으로 거주인구가 가장 많았고, 평안남도 405만, 함경남도 307만 등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두드러졌다. 집합주택은 평양 중심 수도권의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았을 때 이동의 비율이 높지 않아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신규주택 수요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생률 증가 및 결혼 등을 이유로 하는 신규 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무상 주택 배분 정책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택부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⁰⁾

또한 북한의 2016년 기준 PM2.5 초미세먼지의 연중 평균농도는 입방 미터당 31.0 마이크로로그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HO의 안전 수준인 입방미터 당 10 마이크로로그램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6년 북한의 총에너지 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은 2016년 기준 8.8 Mtoe (IEA, 2018b)로 같은 해 한국 282.4 Mtoe (IEA, 2018b)의 3%에 불과하나 북한의 대기오염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 여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 오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¹⁾

그림 16. UN SDGs Country Profile, 12.2.2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²⁸²⁾>

SDG12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SDGs 국가별 프로필을 통해 SDG12 지표들은 12.2.1 GDP당 자원의 범위와 12.2.2 1인당 국내자원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2.2.1의 GDP당 자원의 범위를 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재료 발자국 (사용된 주요 재료의 양)은 2017년 기준 GDP 단위당 6.4kg으로 집계되었으며 북한의 1인당 자재소비량은 2000년 1인당 4.2 미터톤에서 2017년 1인당 3.6 미터톤으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자재소비량은 15.7 미터톤에서 15.9 미터톤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²⁸³⁾

280)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건설보고서」, 제15권 제0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281) 여민주 외, “북한의 대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35권 제3호 (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pp. 318-335.

282)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12>> (검색일: 2020.11.15.).

한국 무역협회 남북협력실은 2019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을 분석하고 있다. 비제재 품목이 주를 이루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에서는 식량과 의약품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수출에서는 시계, 가발, 모형, 신발, 축구공 등 비제재 임가공 제품과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비제재 광물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²⁸⁴⁾

2020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구조는 코로나로 인한 대외거래 악화로 부족한 외화사정과 제한된 외화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품목들(식량,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은 제재 하에서 가능한 외화벌이 품목이 연속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수출품목이 수입보다 더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내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고 공식화되면서 더욱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 규모와 경제생활 수준도 향상되어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²⁸⁵⁾ 아직까지 북한의 SDG12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SDG12가 북한의 소비와 생산 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SDG13과 관련해서 북한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1994년 12월 5일 비준하였고 2005년 교토의정서, 2016년에는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북한은 당사국들이 권고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각각 2002년, 2013년에 제출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권고에 따라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단에 대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했다.

북한은 국가결정기여를 통해 북한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00년 기준 65714GgCO₂e로 같은 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 총량 40GtCO₂e의 0.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9tCO₂e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다. 이것에 기반하여 북한은 2030년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을 6.5tCO₂e로 예측하고 이는 현재보다는 증가한 양이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결정기여에서 북한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보다 8%를 더 감축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국제사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40.25%를 감축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10가지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조건부 기여에 대한 19가지 우선순위 항목과 기후변화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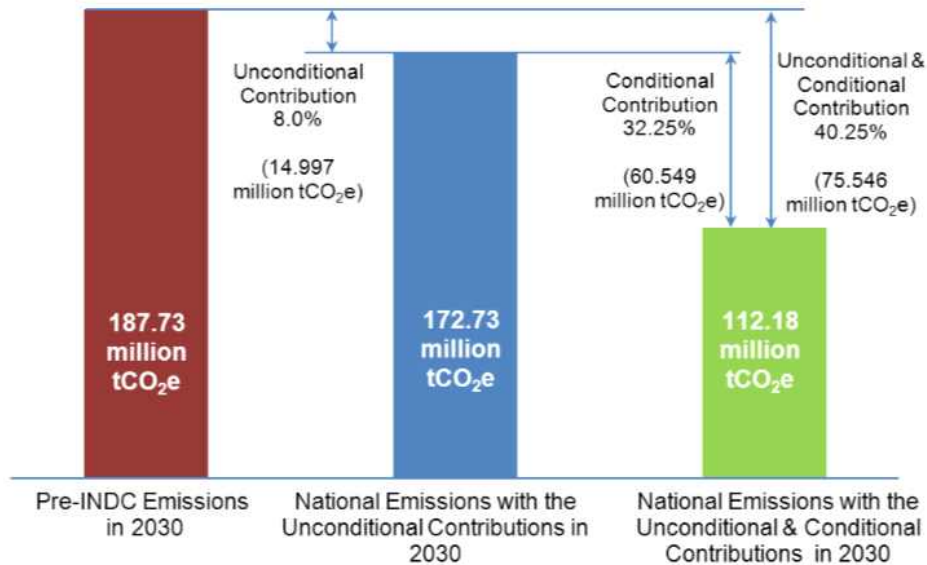
283)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 (검색일: 2020.10.16.).

284) KITA, “2019 북한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남북경협리포트」, 제2호 (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2020).

285)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의제별 대응계획도 제시했다.²⁸⁶⁾

그림 17. NDC, DPRK(2016), Contribution to GHG Emissions Mitigation



<출처: 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²⁸⁷⁾>

북한의 NDC를 통해 북한이 SDG13 이행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기후위기에 대응에 있어 북한이 가진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후위기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잠재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누차 친환경적인 산업에 대해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도들을 행하고 있다.

SDG15의 경우, 2012년 4월 27일 김정은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²⁸⁸⁾ 토지관리 사업과 더불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는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것을 포함하는 환경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주문의 내용들은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다.

286) NDC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016).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Korea%20First/DPRK-INDC%20by%202030.pdf>> (검색일: 2020.10.17.).

287) *Ibid.*

288)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5.9, pp. 1-4.

이어 산림 조성 및 복구를 위한 ‘산림포고문’ (2015년 3월 17일)을 발표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산림과 관련된 시설(양묘장)내에서 다른 작물들을 키우는 것과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림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금지하였다.²⁸⁹⁾ 뿐만 아니라 개발 원칙 중 하나로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대표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2014년 7월 23일)을 들 수 있다.

라선경제지대 환경보호규정 라선경제지대에 개발, 건설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제19조)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벌금의 부과 대상 행위유형 17가지를 열거하는 등 제재처분이 명시되어(제65조)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단속,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²⁹⁰⁾

북한은 조선록색후원기금(Korea Green Fund, KGF)을 2014년 10월에 설립하여 경제와 환경 분야에서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금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후원도 받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SDG15의 주요 요소들을 북한 자체의 환경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의 북한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me), 랍사르 협약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관련 회의에 담당자가 참여하는 등, 습지보호 및 철새보호, 생물다양성과 관계된 국제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문덕 습지(철새)보호구와 나선 습지(철새)보호구가 랍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북한은 랍사르 협약 17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문덕과 금야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지정되면서 EAAFP의 35번째 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개의 랍사르 습지(문덕과 나선), 2개의 EAAFP 사이트(문덕과 금야), 5개의 생물권보전지역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금강산)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²⁹¹⁾

289)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9), p. 67.

290) *Ibid.*, p. 68.

291) *Ibid.*, pp. 72-74.

표 37. 북한이 습지 관련 참석하고 있는 회의 목록

	회의명	장소	주요 참가기관	비고
2017.12	황해와 발해만을 포함한 조간대 습지 관리와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중국 영성	IUCN, HSF, EAAFP, Ramsar, RRC-EA, ME, MOF, MoLEP 등	서해/황해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논의
2018.02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준비회의(Pre-COP)	스리랑카 칠라우	RS, RRC-EA, IUCN, HSF, ME, MoLEP 등	
2018.04	기후변화대응 동북아시아 산림경관복원 및 복원력에 관한 워크숍	중국 베이징	APAFRI 회원	
2018.07	서해/황해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회의	중국 상하이	RRC-EA, IUCN, HSF, MoLEP, WWF China, WWF Hong Kong 등	RRC-EA 습지 관리자 교육과 함께 진행됨
2018.10	제13차 람사르 당사국총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RS, RRC-EA, IUCN, HSF, MoLEP, EAAFP, ME, MOF 등	사이드 이벤트 개최
2018.10	ESP 아시아총회	인도 데라둔	ESP 회원	ESP 아시아 정부간회의 참석
2018.12	제10차 EAAFP 파트너 회의(MOP)	중국 하이난	EAAFP 파트너	
2018.12	제24차 UNFCCC 당사국총회	폴란드 카토비체	UNFCCC 당사국	
2019.03	서해/황해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회의	중국 베이징	RRC-EA, IUCN, HSF, ME, MoLEP, EAAFP 등	규정(Term of Reference) 논의

<출처: 최현아(2019)에서 인용²⁹²⁾>

식량농업기구(FAO)의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603만ha로 2010년의 624만 2천 ha에서 21만 ha가 줄어들어 10년 만에 거의 평양 면적(2천 629제곱킬로미터, 26만ha)만큼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FAO가 처음 집계를 시작한 1990년에는 691만 2천ha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년 동안 90만 ha가 사라진 것이다.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도 지난해 토론회에서 위성 영상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 황폐화 면적이 1999년의 163만ha에서 2018년에는 262만ha에 달했다며, 황폐율이 28%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산림녹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병해충 피해와 산불, 관련 정책 미비 등 이유로 주민들이 나무를 계속 연료 대용으로 쓰는 것을 심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보았다.²⁹³⁾

292) Ibid.

293) “FAO, 북한 산림 10년 새 평양시 면적 사라져”, 「VOA Korea」, 2020.7.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fao-nk-deforestation>> (검색일: 2020.11.15.).

④ 전략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하게 고려되는 SDGs 목표들

SDGs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s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유니세프의 2017년 MICS 보고서는 가구별 전기사용과 취사연료, 인터넷 접근성 및 건축 자재, 침실의 숫자 등을 바탕으로 부와 관련한 지표(Wealth Index)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재력 최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도시는 60%, 농촌은 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도시가 6.4%는 농촌이 41.2%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도농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농격차는 지역격차와도 연결되는데 행정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평양시는 최상위 40% 가구의 비중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량강도로 조사되었다.²⁹⁴⁾

그림 18. UNICEF MICS 보고서 재력 지표 지역 간 분포

Table SR.2.3: Wealth index 20-40-40
Percent distribution of the household population by wealth index 20-40-40, according to area of residence and provinces, DPR Korea, 2017

	Wealth index 20-40-40			Total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0 percent lowest	40 percent middle	40 percent highest		
Total	20.0	40.0	40.0	100.0	32,455
Area					
Urban	6.4	33.6	60.0	100.0	19,779
Rural	41.2	50.0	8.8	100.0	12,675
Province					
Ryanggang	63.2	18.9	17.8	100.0	1,013
North Hamgyong	17.3	41.3	41.4	100.0	3,213
South Hamgyong	28.9	39.4	31.7	100.0	4,290
Kangwon	21.8	39.1	39.1	100.0	2,062
Jagang	32.0	37.9	30.1	100.0	1,826
North Pyongan	15.6	44.0	40.4	100.0	3,799
South Pyongan	9.7	55.7	34.6	100.0	5,545
North Hwanghae	9.3	58.9	31.8	100.0	3,294
South Hwanghae	47.7	31.1	21.2	100.0	3,278
Pyongyang	0.4	13.4	86.2	100.0	4,136

<출처: UNICEF MICS 보고서>

SDG17은 아디스아바바 개발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의 수단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목표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경우, 대북제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받거나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는 SDG17이 지향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유엔 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엔기구와 북한 외무성이 합의를 도출해왔던 과정이 이루어졌

29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p. 16-19.

으며, 그렇게 수립된 전략계획을 실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SDG17은 실행될 수 있으며 실행되고 있다. 북한-유엔 전략계획의 실행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상주팀(UNCT)은 북한 외무성과 유엔개발계획(UNDP)로 구성되는데 북한상주팀은 북한-유엔 전략계획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SDG17은 SDG16과 마찬가지로 SDGs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결과이자 동시에 SDGs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이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북한-유엔 전략계획은 그 핵심적인 목표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특히 “취약계층”의 좋은 삶(well-being)을 위한 북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²⁹⁵⁾ 영양상태가 좋고, 건강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인간 개발”을 목표로²⁹⁶⁾ 취약집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다양한 지원은 영양공급, 식단의 다양화, 영양실조 아동의 치료, 미량영양소 결핍 해결, 구충 사업 등을 포함한다.²⁹⁷⁾

① 여성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9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4년 만인 2016년에 2,3,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하였다.²⁹⁸⁾ 북한은 이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²⁹⁹⁾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5%만이 여성이며, 정부 중앙 정부 관료 역시 단 10%만이 여성이라는 것이다.³⁰⁰⁾ 하지만 SDG5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권리보장법이 채택된 2010년을 계기로 북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여성 참여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5)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p. 8.

296) *Ibid.*, p. 13.

297) *Ibid.*, pp. 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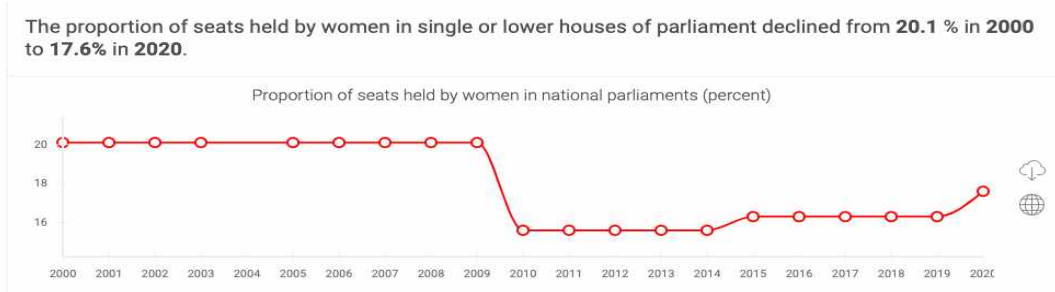
298) 통일부, 북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관련자료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6&category=&pageIdx> (검색일: 2020.11.22.).

299)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UN Doc. CEDAW/C/PRK/2-4 (2016).

300) Security Council Report,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314.

그림 19. SDGs Country Profile, DPRK



<출처: SDGs 국가별 프로필³⁰¹⁾>

국제의원연맹(IPU)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함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의회 내 여성참여율 전체 193개 조사대상 국가 중 123위를 차지했다.³⁰²⁾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에 여성은 모두 112명이었다. 성평등 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SDG5의 지표인 5.1.1은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존재여부를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5.1.1의 지표를 충족한다. 하지만 측정지표인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의석비율과 과 5.5.2, 여성 관리직 비율로 보았을 때 북한의 성평등 이행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 또한 법적인 체계로 해결될 수 없는 북한 사회 내부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들은 여성을 돌봄 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노동에 노출시키고 노동 과중의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³⁾

2019년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세계은행,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0년~2017년 모성사망률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 모성사망비는 2000년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 139명에서, 2005년 120명, 2010년 106명, 2015년 91명, 2017년 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⁴⁾ 이는 세계 평균 모성사망비인 10만 명당 211명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모성사망률인 10만 명당 11명과 비교했을 때는 8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의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국제 기분에 따라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미 국무부는 북한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가로 분류한

301)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12>> (검색일: 2020.11.15.).

302) IPU Parlin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10&year=2020>> (검색일: 2020.11.15.).

303)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오름, 2020), pp. 241-292.

304) World Health Organization,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xecutive summary*, (2019).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27596>> (검색일: 2020.10.13.).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³⁰⁵⁾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임을 짚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사례 중 하나로 30,000명의 어린이가 중국 남성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출생하여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착취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 등도 다루고 있다. 이는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권리 침해는 아동의 권리 침해와도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발효된 대북 경제제재의 경우, 인도적 지원은 제재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재의 영향은 인도적 지원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³⁰⁶⁾, 북한이 서명국으로 참여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여성들에게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⁰⁷⁾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2019년 10월 발간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한 해에만 최소 3천968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3천193명이 5세 이하 유아이고, 72명은 임산부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³⁰⁸⁾

② 아동

유니세프의 최근 북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상황과 관련한 지표들은 2017년에 시행되었던 MICS에 비해 대부분의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³⁰⁹⁾ 영유아 및 5세 미만아동의 사망률은 매우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지

305) U.S. Department of State, *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6/2020-TIP-Report-Complete-062420-FINAL.pdf>> (검색일: 2020.11.15.).

306) OHCH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UN Doc. OHCHR/A/72/394 (18 September 2017), para. 6; see also *id.*, OHCHR/A/73/386 (19 September 2018), paras. 20-21.

307)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CO/2-4 (22 November 2017), p. 2.

308) Korea Peace Now,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2019). <<https://koreapeacenow.org/wp-content/uploads/2019/10/human-costs-and-gendered-impact-of-sanctions-on-north-korea.pdf>> (검색일: 2020.11.15.).

309) UNICEF, *The national context for children's and women's rights in DPR Korea*, (2019), p.3 <<https://www.unicef.org/dprk/media/686/file/Sitan%202019.pdf>> (검색일: 2020.11.15.).

표 역시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영유아 사망률 및 영양실조에 대한 지표 값의 지속적인 감소는 3살부터 5살까지 유아들의 유아교육 등록률이 73%로 상대적으로 높기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 등록률은 97%에 달한다.³¹⁰⁾

이런 결과는 5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1차 의료 인프라의 개선이 반영한 결과로 유네프는 2019년 1년간 북한 정부와 함께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인구 620만여 명 중 45만여 명이 필수약품을, 76만여 명의 아동에게 경구재수화염(Oral Rehydration Salt)을 제공하였으며, 9만여 명의 아동에게 중증 및 경증 영양실조에 대한 치료 제공하고, 23개월 이하 영유아 49만여 명을 포함한 150만여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비타민 A가 들어간 영양 분말을 공급받는 등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했다.³¹¹⁾

또한 아동 결혼과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의 비율도 현저하게 낮아져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네프는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유청소년기의 공교육 등록률 역시 96%로 나타나 북한 아동들이 대부분 보편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²⁾ 하지만 가용 데이터의 부족으로 북한의 실제 장애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네프에 따르면 2014년에 진행되었던 장애와 관련한 설문 조사에 기반한 추정치로 북한의 장애 유병률은 약 6.2%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평균인 10~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북한 전역의 장애아동의 현황을 충분히 담은 것인지는 불확실하다.³¹³⁾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첫째, 장애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에 모든 아동을 포함시킬 것과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정책 우선순위로 확보할 것, 셋째, 장애진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넷째, 장애아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사 및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을 권고했다.³¹⁴⁾

이렇게 영유아 사망률과 영양실조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성공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유엔 전략계획에서 지향하는 북한 당국의 북한주민 지원 활동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의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는 또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

310) *Ibid.*

311) 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2019).

<<https://www.unicef.org/media/73706/file/DPRK-SitRep-End-of-Year-2019.pdf>> (검색일: 2020.10.11.).

312) UNICEF, *The national context for children's and women's rights in DPR Korea*, (2019), p.3 <<https://www.unicef.org/dprk/media/686/file/Sitan%202019.pdf>> (검색일: 2020.11.15.).

313) *Ibid.*, pp. 29-31.

314) *Ibid.*,

다. 이런 맥락에서 유니세프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점진적 제재 해제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³¹⁵⁾

표 38. 북한 취약계층별 인권 현황 관련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관련 SDGs 및 정리

취약 계층	국제인권기준	UPR, 특별절차, 조약기구 북한 관련 권고 사항	북한-유엔전략
여성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 (CEDAW arts.11, 13, 14(2)(g), 15(2), 16(1)), 여성의 생존권과 건강권(CEDAW art.12), 여성과 소녀의 교육권(CEDAW art.10), 차별받지 않을 권리(CEDAW arts 1-5),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식(CEDAW art.1-6, DEAW arts. 1-4; CRC arts. 24(3), 35), 동일한 고용의 권리(CEDAW art.11; ILO Conventions No.100 & No.111), 금융 신용에 대한 동일한 권리보장(CEDAW art. 13(b), 농촌여성의 인프라 접근성 보장(CEDAW art.14(2))	- 여성의 동등한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보장 - 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극복 노력 강화, 여성이 소수인 학문 및 진로에 여성 참여 장려 -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사법부 및 경찰대상 역량 강화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 및 저임직업 할당하는 노동관련 법률과 정책 재검토 - 농촌 여성의 의료,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노력	- 사업원칙 (SDG 5) -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SDGs 3, 4, 6)
아동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CRC art.6, 24, CRC ICESCR art.2(1); art.4), 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CRC arts.23(4), 28(3)), 아동노동금지(CRC art.32; ILO Convention No.182)	- 영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발육부진과 저체중을 야기하는 아동 영양실조, 고된 신체적·정신적 활동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화 - ILO 협약 제182호와 제138호 비준을 위해 ILO 가입고려 및 기술지원 모색	- 사업원칙 (SDGs 10) - 전략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SDGs 2, 9)
영아, 임신 부	모성보호(ICESCR art.10)	-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실행계획에 대한 독립적 검토 - 임신 및 수유중인 여성포함 여성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	- 사업원칙 (SDGs 10) - 전략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SDGs 2, 9)
장애인	장애인의 교육접근성 보장(CRC art.23(3), CRPD art.24, 3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CRPD art.9(1)),	- 교육, 사회보장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포괄적 이행 촉구,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주류화 - 장애여성 및 여아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 정보수집 분석	- 사업원칙 (SDGs 10) - 전략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SDGs 2, 9) -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SDGs 3, 4, 6)

315) Ibid., pp. 87-89.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유엔은 북한-유엔 전략계획을 통해 북한에서 수행하는 유엔 활동의 목적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자원 이전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원칙과 가치, 규범과 노하우를 이전함으로써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개발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DGs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개발로 접근해가는 유의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처해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도록 하는 장기적인 접근의 예시로 북한-유엔전략계획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 식량과 영양안보 개선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과 수유중인 여성, 5세 이하 아동의 영양 상태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명시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앞으로의 발전을 이어갈 세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으로 단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지원의 교차점을 짚은 것이라 볼 수 있다.

SDGs는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조응하는 북한 내부의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SDGs는 현재 그 어떤 통로보다 더 효과적인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장과 3장에 걸쳐 살펴본 북한인권 개선 과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인도적 위기는 북한-유엔 전략계획이 제시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국제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SDGs를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지원 수요 중심으로 즉각적인 지원과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SDGs의 개별 목표마다 북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2020년 들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일절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 및 민간 기구 등을 통해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SDGs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양자 구도의 정부 주도성을 낮추며 민간 차원의 활발한 다자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한국 정부는 SDGs를 통해 북한의 농업과 보건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가 이미 SDGs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SDGs의 모든 목표들은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SDGs는 북한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전략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관련 과제

식량 및 영양안보 분야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식량 자급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때의 식량 자급량은 북한 주민들의 단기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북한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재배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연구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유엔전략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16%에 달하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의 수확 전후 손실량을 감소시켜 농업생산량을 높이는 보관 및 운송 시스템 수립이 시급하다.³¹⁶⁾ 2020년의 경우 태풍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줄어든 비료 수입량의 영향으로 북한 전역의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³¹⁷⁾ 셋째, 북한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을 높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생산된 식량을 가공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0년의 6.15 선언과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 2007년의 10.4선언과 이에 후속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 등을 통해 북한과의 농업관련 양자협력사업의 틀을 마련해 두었다.³¹⁸⁾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는 종자생산 및 가공 시설 협력,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협력, 산림녹화와 병해충 방제 분야에서의 협력 등 농업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 합의된 농업협력사업도 이행하도록 명시하여, 2005년 합의된 5개 분야의 농업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³¹⁹⁾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합의된 농업협력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9. 2005-2007년 남북 농업협력사업 합의 내용

•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 • 농업·수산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추진

316)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p. 17.

317) “북 수해 곡물 수확 30만t 감소 예상…식량 부족량 최대 122만t”, 「VOA Korea」 2020.9.2.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dprk-foodshortage-flood-typhoon>>

318) 김영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제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p. 36.

319) *Ibid.*, p. 37.

-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조속히 추진
-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
- 과수·채소·잡곡·축산 분야 및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표 40. 기존 남북 간 합의서의 농업협력사업 구분과 내용(2005-2007년)

구분	농업협력사업의 구성	근거(합의서)
협동농장 협력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영농기술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종자 관련 협력	현대적 종자 생산 시설 지원 종자 가공·보관·처리 시설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농업과학기술 협력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 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 예보, IPM 기술 협력 검역·방역 기술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남북경제공동위원회(2007)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개별 분야 협력	축산·과수·채소·잡곡·특용작물 분야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농수산협력분과위(2007)
산림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남북총리회담(2007)
투자 장려	수출·투자 확대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투자 가능)	10.4 선언(2007) 남북경제공동위원회(2007)
서해평화협력지대 경제특구 건설	수출·투자 확대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투자 가능)	10.4 선언(2007) 남북경제공동위원회(2007)

주: ()는 명시적으로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 내용상 추진 가능하며 추진 효과가 높은 협력사업임.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2005. 8. 19)」; 「10.4 선언(2007. 10. 4)」;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서(2007. 12. 6)」;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2007. 12. 15)」.

<출처: 김영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6월호, p. 37에서
재인용>

하지만 2010년의 5.24 조치 및 2016~17년 유엔의 대북제재(2270~2397호)와 미국의 제재조치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양자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유엔 전략 계획의 최우선순위인 식량 및 영양안보 개선을 위한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및 영양 분야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남북 간 합의된 각 협력 사업별 추진의 목표와 단계를 재검토하고 추진체계를 점진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내부적으로 다져야 한다. 이러한 준비작업의 참고사례로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2007)」의 구성 및 협의 사례가 있으며³²⁰⁾ 이러한 협력은 축산업과 어업 등 각 분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320) Ibid., p. 38.

② 전략 우선순위 2: 사회개발서비스 관련 과제

북한은 1명의 의사가 130-150가구를 담당하는 호 담당 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인프라처럼 보건인프라 역시 구축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차 의료 장비와 약품 등 물자 부족과 낙후된 의학기술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협력을 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단순 의약품 지원이나 치료용 영양소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5년부터는 보건의료 분야 전반으로 서서히 범위가 확장되는 듯 했으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대북지원금이 2007년 1,983억 원에서 2008년 438억 원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다시 단순의약품 지원 형태의 협력으로 축소되었다.³²¹⁾

이후,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 2013년 국제기구를 통한 결핵약품, 의약품, 영양식을 지원하고 WHO와 UNICEF를 통해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등을 소규모지만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에 이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2016년 2월) 결정으로 남북 양자 간의 인도적 협력은 대부분 중단되었다.³²²⁾ 그리고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문에는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2조 4항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동선언문의 형식을 통해 언급된 남북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향후 관계 개선에 따라 해당 분야의 추가적인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³²³⁾

남과 북은 2007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통해 의료시설 현대화와 의료물품 생산 및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협력 등의 사안을 합의한 경험이 있다.³²⁴⁾ 이러한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이 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며,³²⁵⁾ 제19대 국회에는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5362)이 제출되었고,³²⁶⁾ 제20대 국회에는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80)이 제안되기도 했다.³²⁷⁾

321) 박훈민,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법제연구 18-19-2-5 (한국법제연구원, 2018), pp. 37-38.

322) *Ibid.*, p. 39-40.

323) *Ibid.*, p. 71.

324)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https://dialogue.unikorea.go.kr/ukd/a/ad/usrtaltotal/View.do?id=148>> (검색일: 2020.11.25.).

325) 박훈민,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법제연구 18-19-2-5 (한국법제연구원, 2018).

326) 윤종필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3880 (2016.11.28.) [폐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H5K0Y5Q2J9H1M6V1X8E5H9C8X7J3> (검색일: 2020.11.25.).

327) 정의화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1915362 (2015.05.29.) [폐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N6O1R1U2Q8J1R0M3Y6J0V6X4S6S8> (검색일: 2020.11.25.).

북한의 감염성 질환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유엔 전략계획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맞추어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긴급 의료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은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는 북한 정부의 예방의료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³²⁸⁾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부와 유엔의 합의사항을 참고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긴급의료물품 및 위생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을 통해 유엔 및 국제기구의 관련 활동을 촉진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18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이후 멈추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관계 변화와 대북제재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한을 공동운명체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있었으나,³²⁹⁾ 북한정부는 코로나19와 태풍의 복합적 재난 속에서도 외부의 지원을 일절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³³⁰⁾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의 방안은 난망하다.

③ 전략 우선순위 3: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과제

북한-유엔 전략 계획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북한 사회가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우선순위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북한이 과거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실들로부터 북한 사회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³¹⁾

남과 북은 이미 2000년대부터 꾸준한 재난 대응 협력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경험이 있다.³³²⁾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2006년 4월)에서는 자연재난 방지를 포함하는 협력 사업 관련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해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 공동 방지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³³³⁾ 2009년 9월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우리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328)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p. 19.

329) 이승현 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이슈와 논점」, 제173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330) “북한, 외부지원 거부 선언…‘재해협력→대화복원’ 구상 난망”, 「연합뉴스」, 2020.8.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4106000504>> (검색일: 2020.10.11.).

331)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p. 21.

332) 남북한 양자 간의 재난대응관련 논의는 강택구 외,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하고 이어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을 통해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이에 합의한 바 있다.³³⁴⁾ 하지만 2020년 8월에도 북한은 임진강 황강댐을 수문을 통보 없이 열어 방류한 바 있다.³³⁵⁾

임진강 수해방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 재해 대응의 최선은 예고를 통한 예보이다. 따라서 자연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하게 재난대응 협력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연구와 정보 및 알림 등을 포함한 북한의 자연 재해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보기술 이전과 관련 정보 교류, 남북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자연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검토 및 정비 등의 과제가 있겠다.

333)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법무부, 2008), p. 221.

33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5&dicaryId=46&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20.11.26.).

335) “이인영 통일장관 “북한 임진강 황강댐 일방적 방류 유감””, 「한겨레」, 2020.8.6.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6678.html>> (검색일: 2020.10.11.).

표 41.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관련 SDGs 및 북한인권 현황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		북한 성과목표	연계 SDGs	국제인권기준	UPR 권고 사항	북한 현황
1	식량 및 영양 안보	1.1 농업 원예 아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기공의 지속가능성 제고	SDG 2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DHR art.25;ICESCR art.11;CRC art.27), 사회보장권(UDHR art.22;ICESCR art.9;CRPD art.28 CRC art.26),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CEDAW arts.11,13,14(2)(g),15(2),16(1))	• 영아, 임산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증진	• 2019년 기준, 북한 식량안보 취약인구 비율 2013년 대비 약 12% 증가, 전체 주민의 92%가 만성적 식량부족. • 북한인구의 40%가 긴급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함.
		1.3 기압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SDG 9		• 식량권 및 교육관련 개선조치	
		21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알츠하이머의 개선 및 알코올과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으로 서비스 보장	SDG 3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UDHR art.3; ICOPR art. 6), 건강과 인성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DHR art. 25; ICESCR art.12), 교육을 받을 권리(UDHR art.26; ICESCR art.13),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ICESCR art. 6)	• 건강, 교육, 영양, 식량 안보분야 국제기구 협력	• 2019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인구 620만 명 중 45만 명에 필수약품품 처방. • 모성사망비는 1990년대 10만 명당 120명,2017년 기준 89명에 도달, 2020년까지 10만 명당 45명 목표 • 만성질환 사망률 84%, 결핵 고위험 국가, 응급치료 제한적 • 북한인구의 60.9%만이 위생적인 식수에 접근 가능, 북한 전체 가구의 약 36%가 오염된 식수 음수(농촌지역은 54%)
2	사회개발 서비스	보건	SDG 4		• 국제인권규약 준수, 협조 및 추가가입	• 2015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공급규모의 36%, 연평균 약 44%씩 감소
		물과 위생	SDG 6			
		생태계 관리	SDG 7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UDHR art. 25; ICESCR art.1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UDHR art.25; ICESCR art.15; ICERD arts.5,7; CRPD art.30; CRC art.31),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PD art.11), 장애인에의 이동권보장(CRPD art.9(1); CRC art.23 CEDAW art. 14(2), 천연인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COPR ICESCR art.1(2))	•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 표현의 자유 보장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치	• 북한은 UN 전략계획 전반에 인권 기민접근(RBA)과 성과기반관리(RBM)를 도입하기로 함
		기후변화 대응	SDG 12			
3	회복 탄력성 & 지속 가능성	재난 위기관리	SDG 13			
		3.3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수행	SDG 15			
4	데이터와 개발 관리	4.1 사업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신뢰할만 한 인도 개발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기능성 제고			(*)1,2,3차 권고 사항 중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 관련 권고 사항)	
		4.2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4.3 국제 조약 협약 기제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대기 전환 보고 체계 강화		148 -		

4. 소결

이 장에서는 SDGs와 2030 의제의 인권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북한의 유엔 전략계획과 SDGs에 대한 태도와 이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SDG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발전권,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인권의 관점을 의제 전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덴마크인권연구소의 자료는 국제인권기준과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SDGs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SDGs 이행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제인권기준과의 상호 연계성을 통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SDGs를 통한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기구가 SDGs를 활용하여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로부터 향후 북한이 SDG 16과 국가별인권정례검토 권고 등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방안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는 부재하지만 국가개발계획 안에 SDGs와 인권기준을 연계하여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DGs 이행의 인권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유엔 전략 계획 중심으로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의 4대 전략 우선순위와 SDGs와의 연계성을 검토했다.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현황 분석은 만성적 식량위기, 보건위기, 기후위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위기까지 중첩되어 매우 복잡한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적 우선 과제가 북한-유엔 전략계획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다는 점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제II장에서 제시된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과제와도 맞물리므로 북한의 SDGs 이행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을 활용한 인권적 접근이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북한이 당면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수용 태도를 밝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내용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SDGs가 대북협력의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IV. 관련 기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 분석

1.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본 연구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그리고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진이 제Ⅱ장과 제Ⅲ장에 담은 분석과 비교,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전문가 49명에게 설문에 대한 서면자문을 요청하였다. 이 중 18명이 서면자문에 응하였다. (개별 응답지는 부록 참조)

질문은, 본 연구의 주제인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접근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즉 북한 인권상황과 그간의 개선 노력과 유엔인권제도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개입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이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하여 문항을 선택하여 자문의견을 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북한 인권상황과 그간의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그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노력과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 인권규범에 기초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북한의 인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유엔인권제도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의 효과,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의 북한인권 심의가 북한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SDGs와 인권을 연계한 지원 사례 중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노력의 도전과제와 한계 및 시사점, SDGs 이행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이끌어낼 때 필요한 조건과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추가로 이 영역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물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개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 분야 기술협력과 지원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례, 인권기술협력 분야와 북한 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 및 기타 감

염병 대응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42. 전문가 자문의견 질문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1. 북한 인권상황과 그간의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1-1. 그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1-2.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 제재에 대해 인권에 바탕을 둔 입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북한의 인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유엔인권제도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평가	
2-1.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대북 인권결의안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2-2. 그 동안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의 북한인권 심의가 북한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주십시오.	
2-3.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4.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유엔인권조약기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	
3-1. SDGs와 인권을 연계한 지원 사례 중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베트남,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등 특정 국가의 SDGs 연계 인권 증진 노력 사례)	
3-2.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노력의 도전과제와 한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3. 위 질문에 이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4. SDG 이행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조건과 향후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내부 및 국제사회 포함)	
3-5. 위 질문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개입	
4-1. 인권 분야 기술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2. 인권기술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3. 북한 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대응 등과 관련하여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 또는 협력 분야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전문가 응답의 주요 내용

설문에 자문의견을 주신 전문가는 국제 인도적 지원기구 1명, 유엔 기구 2명, 북한이탈주민 관련 시민단체 1명을 포함한 시민단체 3명, 학계 12명 등 총 18명이다.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표 43. 설문 응답자

분류	이름	소속기관
국제기구	Nazanin Zadeh-Cummings	Centre for Humanitarian Leadership
북한이탈주민	황진솔	더 브릿지
시민사회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정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학계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도경옥	통일연구원
	문경연	전북대학교
	박순성	동국대학교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서보혁	통일연구원
	서창록	한국인권학회
	이원웅	한국인권학회 북한인권분과
	임예준	고려대학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유엔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익명 요청)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질문별, 응답자별로 응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권상황과 그간의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1-1. 그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A.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와 활동,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
전단지 살포 등 거짓이나 감정적 자극 등 형태는 없어야.
탈북민 분들의 인권에 대한 활동이 충분하지 않음.
- B.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음.
많은 기관들이 현상유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C. 실제 효과 적더라도 국내외의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논의가 크게 발전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등 객관적 실태 파악 노력 평가.
자유권 영역에서 사회권으로 확장,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견인 인식 증대.
- D. 북한 접근 불가로 정보수집과 객관적 독립적인 조사 활동에 근본적 한계.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정부, 정부간기구 등 노력 평가.
접경 지역 현장 조사, 증언 수집, 미디어 분석, 위성사진 활용,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애드보커시 등의 활동 높이 평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노력 결실.
정보 수집의 제약 조건이 최근 증대,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 제기하는 배경.
북한의 특성과 불안정한 남북/북미 관계 등 예측불가능의 정세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실질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존재. 정세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 필요.
- E. 국내외 인권단체의 다양한 노력,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
- F.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인식차에 따라 편차가 큼.
보수 진보 모두 진정성 있는 정책 부재.
- G. 탈북자들의 증언, 과대표 되고 있음.
이에 기초하여, 북한 당국을 적대적으로 보는 행태는 인권 개선 효과에 어려움.
- H.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이 정치화, 이념화되어 인권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에 실패.
한국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 NGO들도 영향 받음.
유엔 인권제도의 여러 가지 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함.

- I. 국제기준에서 볼 때 북한인권 상황은 전반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열악.
 다만, 인권 관련 국가기구 증설은 평가할 대목.
 북한 기준으로는 일부 호전: 김정은 정권 들어 교육권, 문화권 등에서 정책 개선.
 2020년 들어 제재 강화, 코로나19 사태, 자연재해 등으로 상황 악화.
- K. 국제기구, 관심 국가들, 국내외 시민사회의 관심과 압박은 북한 지도부의 경각심과 북한 내 법과 제도의 형식적 변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가져옴.
 인권 문제를 ‘이유’ 또는 ‘명분’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축소된 것은 제약요인.
 핵문제와 다른 사안 연계가 북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제동을 건 측면 있음.
- M.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와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북 반응 증대.
 특히 취약계층 인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COI 이후 북한은 부인 단계에서, 양보행위를 반복하는 ‘전술적 양보 단계’에 들어섬.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대응이 결합하여 느리지만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 조짐 보임.
- O.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대해 북한은 거부 일변도 태도 보임.
 UPR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치적 색채가 약한 조약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유지, 홍보 의도도 있음.
 미국의 대북인권 개선 노력은 주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관련 단체 재정지원 중심.
 외부 정보유입이 북한주민의 비공식 정보접근에 미친 영향 평가하기 어려움.
 미국의 경우 인권유린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 적음.
 북한이 체결한 유엔전략계획에 인간개발, 인간중심의 개발, 젠더 문제 등 포함, 의미.
- P. 북한 인권단체나 기관들의 활동, 너무나 정치화됨.
 활동이 실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것인지 의문.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북한인권을 접근하거나 인권 전문성 갖춘 단체 거의 없음.
- Q. 개인 인권과 SDGs 통한 인권증진 관심과 운동 환영할 일, 단 정치적 양극화 줄여야.
 코로나 19는 북한에서의 활동, 북한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에도 도전
- R. 북한 인권문제 접근, 유엔 회원국마다 다르고 우선순위도 달라.
 북한인권을 독립적 객관적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중요성 높아.
 북한 접근성 제약과 북한 시민사회 부재가 정확한 인권상황 파악에 제약, 도전
 이러한 제약으로 북한인권 대응이 북한 주민의 이익보다 관심국의 이익(북핵 문제 등)에 더 영향 받음.
 전환기 정의와 같은 주제에서 북한 주민들과 협의하기 불가능.

1-2.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 제재에

대해 인권에 바탕을 둔 입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북한 경제에 직접적 타격, 북한 시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시민이 아닌, 정부를 압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방법 어려움.
북한 시민과 북한 정부를 구분할 수 있는 대북제재 정책이 제시되어야.
- B.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침.
특히 2017년 이후 부과된 대북제재는 민생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 생존권 압박.
북한 주민들의 민생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 취해야.
무차별적인 대북제재는 재고될 필요가 있음.
- C. 제재의 효과로 2018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사회권 침해 더 심각해짐.
대외수출을 하던 북한의 기업소 다수가 문을 닫음, 이익을 보던 주민 생계도 위태.
국제기구 역시 인도주의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원 불가능, 철수.
- E. 대북제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부정적인 영향: 북한의 폐쇄성, 당적 통제 강화됨.
북한주민의 식량권,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사업 큰 제약.
대북제재와 관련한 인권 중심적 입장은 ‘결자해지’ 필요북한, 유엔안보리와 협력해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지원에 대하여 선별적인 지원이 허용되어야.
- F. 실증적 연구는 부족, 지속적 위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
기본적으로 어떤 제재이든 취약계층의 인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제재를 지지하기 어려움. 유엔 대다수 보고서의 일반적 결론이기도 함.
- G. 대북 유엔결의안 2397호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엔 면제승인 위원회의 예외 조항, 현실에 적용 안 되고 있음.
식량 복송 등, 구매 자금을 송금, 운송 불가능으로 물자 구매 자체가 불가능함.
과거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이란 제재 영향 보고서, 북한 현실과 유사.
인권상황 개선은 국제적 제재로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관료주의 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기재로 활용되고 있음.
국제사회와의 접촉 확대와 자유로운 물적, 인적 왕래 등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H. 대북 제재는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과는 별개로 취해진 조치.
인권정책과 연계할 사안 아님,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에 기여한 바 없음.
- K. 취약계층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특히 보건 분야.
북한 경제의 전반적 침체는 2000년대 이후 경제의 시장화를 후퇴시키는 요인.
북한 시장경제의 발전은 경제적 자유와 대외경제관계의 확장, 경제 분권화를 가져올 것임.
반면 대북 제재 하에서 시장화는 부정적 경향(불평등, 편중화, 특수계층 형성 등)을 강화.
스마트제재는 분명한 한계 또는 딜레마를 노정함, 다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함.
- M. 북한도 유사할 것임: 제재가 생명권, 생활수준,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에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완화하기 위한 노력 북한과 국제사회 양측에서 필요.

현재 개별 국가와 유엔 제재는 ‘포괄적 제재로의 회귀’에 가까운 고강도 제재.

사회권규약위원회의 1997년 일반논평 ‘경제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존중의 관계’ 참고해야.

- O. 최근 5개의 대북제재는 포괄적 제재에 가까움: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심화.
대북제재의 장기화, 부정적 북한 이미지로 인도적 목적의 모금, 조달, 수송 등 어려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제약 요인 작용.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8에 근거, 제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 P. 유엔의 대북제재가 분명히 북한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
유엔-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외화벌이 진출과 무역, 경제, 주민생활에 침체를 가져옴.
대북제재는 유엔 결의안 취지대로 군사적 제재로 국한해야.
인권을 고려한 대북제재 이행방안이 있어야 함.
- Q. 제재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인도적 지원 축소 등. 제재면제 조항 비현실적.
- R. 북한 국가가 인권 보장의 일차적인 책임: 표현과 집회의 자유, 법치, 평등한 자원배분.
동시에 제재 부과 국가도 인권 영향 최소화할 의무 있어: 특히 핵심 사회권에서.
북한 국가 역시 제재의 영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평가, 모니터링 보장해야.

1-3.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북한의 인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감염 확장세라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유사할 것임.
- B.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 시장 활동 위축, 소득감소, 생활고 심화로 이어짐.
북중 국경 차단으로 필수약품 수입 급감, 각종 생필품 공급 감소.
- C.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임.
국경통제로 북중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
북한 내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및 ICRC 등의 활동도 제한되었을 것임.
- E. 국가권력과 중앙당 통제가 강화되어, 이동과 거주이전, 사생활 감시와 통제 높아짐.
북중 무역의 감소로 장마당 시장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음.
북한주민의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F. 정보 부족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대부분 국가에서처럼, 이동의 자유, 영업과 장마당 등 경제활동 위축 클 것으로 예상.
- G. 기초적인 경제생활을 제약하고 있음, 배급 불안정 계층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가중.
원료 수급 장애, 원자재의 공급 부족은 전체적 필요물자 생산에 큰 타격임.

식량과 보건의료 물자(약수, 주사기, 수액세트 등) 공급 부족으로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불가능.

H.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 상황 파악 어려움.

국경통제와 국가의 감시강화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사정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K. 보건 상태의 악화, 경제활동의 위축, 거주·이동의 자유 제약, 대외 접촉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각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쏟을 관심과 여력도 제한됨.

M.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의 엄격한 이동제한조치, 사람과 물류의 이동 제한.

국경봉쇄로 인하여 국제기구와 NGO의 업무 및 활동이 제약을 받음.

코로나 여파로 탈북민들의 수가 급감, 북한 주민들의 현 상황 파악에 어려움.

O.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그러나 진단, 환자운용 등 의료체계는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

가장 전통적인 ‘차단’과 ‘격폐’라는 봉쇄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음.

상품 유입의 차단, 지역 간 이동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활에 크게 악영향.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삼중고. 식량 접근 크게 악화.

영양 결핍 상황과 지역 의료시설 약화로 전반적인 건강권 악화가 초래됨.

P. 북한주민의 삶에 큰 영향, 수만 명 격리, 검사 중.

낙후한 보건의료 환경에 국경 봉쇄가 큰 영향.

관광자원 조성 및 관광 전략,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코로나19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 매우 큼.

Q. 코로나19 큰 영향, 북한의 엄격한 조치 지지함, 취약한 보건제도의 인정이기도 함

북한 주민의 탈북과 재난 대응이 더 어려워져서 우려됨.

R.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권 실현, 식량위기와 기아 및 영양실조 상황이 더 어려워짐.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보고관의 최신 북한 보고서 참조: A/75/271, A/75/50326.

국경봉쇄와 국경무역 중단이 식량과 인도적 물자 제공, 인도적 활동에 타격을 줌.

2. 유엔인권제도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평가

2-1.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대북 인권결의안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국제사회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면에서는 효과 있음.

B. 북한, 인권개선 압박을 받고 있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야기함.

대북 인권결의안이 북한 체제를 고립, 압박하기 위한 수단처럼 비치는 것은 안 됨.

대북결의안을 명분으로 내부체결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

- C. 북한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주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 있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결의 채택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가그룹이 있음.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주제별 특별절차가 보다 설득력이 있음.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구체적으로 개선 중심 접근 필요.
조약기구와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활용한 접근이 북한 반응에 더 효과적임.
- E. 국제사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음.
- F. 국제적 인권압력 효과 크지만 북한 내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
북한의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 수단이 없기 때문.
- G.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매번 강한 반발, 체제 압살 의도로 인식.
유엔의 인권결의안이나 북한의 미국인권보고서 모두 인권을 매개로 정치적 행동.
북측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반발만 부추기는 방법 외에 다른 대응의 모색이 필요함.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존중과 교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
- H.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결의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증대. 압박 효과.
북한의 인권조약기구 가입과 UPR 적극 참여는 장기간 지속된 결의안의 효과임.
- I.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인권결의에 반발
결의안은 관심, 우려, 협력방향 등 종합적, 정례적 의사표명이므로 일관된 입장 표명 필요.
북한이 인권대표사무소와의 기술협력에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를 고려해야 함.
결의안에 인권대표사무소 언급을 전략적으로 제외해 양측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UPR 참여에 주목, 실효적인 대책 개발 필요, 관련 유엔전문기구들과 협업이 중요.
안보리에서의 간헐적인 북한인권 논의는 정치성, 비일관성 등으로 인권개선 효과 의심.
- J.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 설립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 형성.
과거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유엔의 접근방식과는 질적 차이가 있음. 이러한 국제기구의 방향성은 남북한 관계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위해 설치한 독립전문가 보고서: 책임규명방안과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못 미침.
OHCHR 서울사무소의 주된 임무 역시 형사책임규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키타나: 탈북자 문제 및 남한 대북인권정책도 다룸.
2017년 이후로는 유엔 총회 결의 등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연계 논의도 본격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역시 최초로 북한 주민 문제가 거론됨.
핵과 인권문제를 연계하려는 미국發 움직임이 국제사회를 향해 가속화 되고 있음.

트럼프 정부 시기 시작된 미국 국제법학자들의 대북 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유의해야.
다만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포괄적 제재’의 요소를 내포한 제재,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

- K. 초기에는 상당한 압박. 지금은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함. 인권결의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방안 모색해야 함.
- M.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모니터링, 북한 당국의 환기와 국제사회 관심에 기여.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성(visibility) 유지 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적임.
- O.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북한은 선택성, 이중성,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
정치적 성격이 약한 조약기구, UPR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P. 지난 30년간의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매우 긍정적, 지속적 영향을 미침.
2000년대 미국주도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은 정치적 논의로 비화된 측면이 있음.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인권결의안을 거부,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함.
조선인권협회 등이 결성되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의 하나.
- R.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안이 긍정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우선순위로 가져옴.
인권최고사무소의 후속 보고서와 서울사무소가 회원국의 인권상황 인식과 판단 증진시켜.

2-2. 그 동안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의 북한인권 심의가 북한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주십시오.

- B. 북한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C. UPR에 북한이 충실히 참여. 그 과정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의식 높아짐.
참여 인원, 다양한 정보 등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듯.
제3차 UPR을 위한 국가보고서, 조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서 인식 증대 보임.
인권 개선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입법적인 측면에서 변화 감지됨.
예)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제정 등
- E. 북한 당국의 참여와 발언을 유도. 일부 북한 국내법제 정비에 도움이 됨.
- F. 실증이 어렵기에 평가하기 어려움. 지금까지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 보임.
- G. 북한도 200여 개의 유엔 가입국 중 하나로 유엔 기구 및 조약을 매개로 국제 활동을 전

개하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자국의 활동을 정상국가로 포장하고 그 어떤 국가보다 인민들을 위한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인권기구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음. 다만 그러한 포장 기술과는 달리 현실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국가의 정책을 감시할 언론의 역할이 부재한 북한에서 인권상황의 검증 자체가 불가능함.

H. 특별절차와 달리 북한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몇 조약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 무조건 보편적 인권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장애인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음.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줌.

I. 북한은 가입한 인권협약위원회들과 보고서 제출 및 권고안 반응 등으로 비교적 협조적. 해당 인권협약별 핵심 사안, 즉 북한인권 개선에 분수령이 될 만하고 북한이 반대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개발.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도록 압박과 회유의 전술 균형적으로 전개. 북한이 유의·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ILO 가입,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 가입에 집중.

J. 2013년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 정부 및 주요 가해자들의 책임 부과 시작. 국제 형사 처벌과 체제 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단순한 접근법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 국제사회는 북한 내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보호와 정책 변화 방안 모색해야. 통합적 시각 절실: 인도적 지원은 식량·생존권 증진에 기여, 인권개선은 인도주의 수단. 유엔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북한의 내적 변화를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지적. 대화와 소통, 상호교육, 이산가족간의 왕래, 교류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현재 요구됨. 지속적으로 북한 정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함.

K. 북한의 법과 제도 변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법(헌법, 법률 등)과 제도(기관, 교육, 명령서 등)를 어떠한 계기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M.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의 북한인권 심의는 북한의 자발적인 동의 및 참여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권 정책 및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인권조약기구는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설사 ‘보여주기’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취약계층 인권 관련 분야에서 북한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O. UPR 참여, 법제도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 있었음.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국제협력에는 긍정적 태도 변화 있음.

자유권과 사회권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이뤄지지 않음.

- P.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체계적인 보고서를 제출,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인 노력.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들, 탈북자의 증언/주장, 북한 비난 기관과 단체들 과다 반영.
예로서 정치범수용소 관련: 성찰적 접근이 아니라 관행적 방식, 실제 현실과 차이.
독선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향은 시정해야 함.
- Q. 국가별정례인권검토는 북한과 유엔인권제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
장애인권 분야는 긍정적 변화 보여: 북한의 국제사회 협력 의지 보여.
단, 평양 이외 지역과 정신적 장애 영역 포함시켜야 함.
- R. UPR은 peer review, 장점과 단점 동시에 있음. 북한은 인권조약기구에도 참여.
이런 채널들을 통해 국제사회 북한과 대화와 전문적 협력을 늘려야.
그러나 북한의 인권제도 참여가 실제 인권증진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확인 어려움.

2-3.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A. 잘 모르겠음.
- B.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
- C.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인권 기준에 입각해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E. 인권의 보편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함. 남북협력사업, 남북대화, 평화와 안보를 위한 보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F. 보편적 인권 원칙에 따른 일관성이 중요. 북한 내 실질적인 인권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와 상황논리에 따른 입장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G. 남북은 분단 상태, 여전히 정전체제에 묶여있는 적대 국가, 동시에 통일 지향.
남북의 특수성 검토 필요,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이슈는 정치화된 상황.
남한 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 취해야. 정권에 따른 행동변화 패턴에 수정이 필요함.
- H.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K. 한국 정부의 유엔의 조치에 동참하는 태도를 보여야. 소극적 행동은 문제.
유엔 인권기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시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이를 위해 정부 실무자와 인권활동가·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력 필요.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제안을 국제사회에 소개, 움직여야.
- M. 한국 정부의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재참여 시 갈등 유발할 것.
특별보고관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소극적으로 비춰질 가능성.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 이해시켜야.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내부에서 인권 개선의 여건 조성 방식 -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유리되지 않도록 해야.
인도적 지원 단체 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 NGO와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개입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 필요.
- O. 공동제안국, 찬성 등 채택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외교를 강화해야 함.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도 종전,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북한인권 개선에 중요한 기반 인식.
인권, 평화, 발전(개발) 등 유엔의 핵심 가치들과 남북 교류가 상호 연계, 강화됨.
- P. 한국 정부는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 후 유엔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결의안의 내용과 방향을 조정해 나가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R.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관련 제도와 협력 지속해야.
기존 유엔인권기구의 결의안과 서울사무소 등 특별절차 등 중요해.
한국이 북한과의 개입에서 온전한 인권기반 접근을 취하기를 희망함.
한국에서 북한인권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2-4. 국가별정례인권검토와 유엔인권조약기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A. 잘 모르겠음.
- C. 국제사회에서의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논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어진 범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E.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어렵다면, 시민단체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유엔 등에서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F. 북한이 정식으로 참여하여 북한 내 인권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함. 예) 남북인권협력 의제화. 유엔과 함께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차원의 인권 협력 프로그램 구성.

- G.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으로, 식량 안보, 건강권, 환경권 등의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
- H. 북한과의 관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다르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인권이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됨. 핵무기 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인권원칙에 대해 방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북한인권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한국의 연성권력을 키우는데도 방해가 됨.
- I. 북한과 협력해오고 있거나 해왔던 경제, 식량, 보건, 개발 관련 전문기구들의 역할을 지속하여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를 갖도록 함.
북한과 유엔전문기구의 협력에 한국이 해당 전문기구의 일원으로 참가해 남북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조화시키도록 함.
- J.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북한이 상당수 권고에 대해 수용, 법제도적인 조치, 취약계층 인권, 평양 시민 중심 통계 문제.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인도주의 사안 생략. 인권교육 진행 없음.
향후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는 특별절차상의 전문가그룹 방북 허용, EU등 유엔회원국들과의 인권대화 등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북한 내 역량구축이라는 취지하에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위한 초석을 도모할 수 있음.
- K. 인권 개선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경험을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필요함.
가능하다면 남북한 사이의 비공개 전문가 회의도 도움이 될 것임.
- M.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조약기구에서 북한 입장 분석하여 추후 남북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에 활용해야 함.
한국 내 북한인권 상황 조사결과와 북한 주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더욱 중요.
부정확한 북한 정보 유통 - 정확한 정보,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 O.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에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는 인권외교 강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객관적 조사에 기반하여 인권 대화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국 내부의 다양한 견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인권 NGO와의 협력을 강화함.
- P.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는 역할이 다를 것을 강조함.
유엔으로서도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한국 정부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대북인권개선 정책임. 두 가지 양립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Q. 한국 정부가 북한의 UPR 참여를 지원해야 함.

R. 한국 정부는 북한 UPR에서 의미 있는 질문과 권고 제시 및 권고 이행 지원을 할 수 있음.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

3-1. SDGs와 인권을 연계한 지원 사례 중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베트남,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등 특정 국가의 SDGs 연계 인권 증진 노력 사례)

A. 네팔 마이크로 비즈니스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및 유엔 지원 사업

B. 북한의 경제사회개발 우선순위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개입해야.
이런 과정과 병행해 인권이슈에 접근.
베트남과 국제기구 협력 사례가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하나, 최선의 사례는 아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역량,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을 주목해야.

C. 베트남

F. SDGs 제정 및 실행 5년차라 별로 참고할 사례 찾기가 쉽지 않음.
캄보디아, 라오스: 대인지뢰와 불발탄 제거를 SDG17로 채택, SDG 연계 프로그램 참조.
농촌 지역의 발전권과 평화권을 동시에 추구한 흥미로운 사례.

G. 북한 요청으로 시작된 WHO, WFP, UNICEF 등의 평양 상주 25년째 지속.
이들 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SDGs를 매개로 사업, 기저에 인권 연계 프로그램 지속.
WHO의 2007년 북한 보건의료 개선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를 구축 참조.
이 사업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평가됨.

J. 유엔 북한협력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 인권기반접근,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의 관점을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북한인권 증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역할에 주목해야.
UPR에서의 북한 반응,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매우 유의미함.

P. 몽골에서의 코이카 사업: 교통, 통신, 인프라 등 4대 사업도 참고할 사례.

R. UPR 권고 이미 SDG 연관성 높아. 산모 사망률, 기아와 영양실조 대응, 젠더 평등, 법치 확립 등 다수 분야에서.

북한과의 SDGs 협력은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임.

2021 북한의 SDGs이행 국가검토(VNR)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3-2.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노력의 도전과제와 한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현재까지 인권증진에 있어 옹호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함.
- B. 북한은 SDGs를 잘 이해하며,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함.
북한 방식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따른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표가 필요.
북한의 자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협력은 매우 필요할 것임.
2021년 1월 채택 예정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SDGs의 접목이 필요.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
- F. SDGs에 대한 피상적 인식은 오류 (유엔 보고용, ODA 사업용 등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인권과 무관한 탈정치적 경제 또는 환경적 의제로 인식)
인권, 즉 인권기반접근 지속가능발전에 왜 중요한지, 필수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
- G. 자유로운 접근과 상시적인 협업이 필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
이를 위한 인력과 자본의 한계가 난제.
공여자와 수혜자를 매개해 주는 현지 관리인원(응답지 표현)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
- H. SDGs는 인권 기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권 책임성을 묻기 매우 어려움.
인권에 기반한 SDGs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과 강한 협력 필요.
- O. 17개 목표와 인권이 각각 연계될 때 16번 목표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중단기적으로 개선 되기는 어려울 것임.
- P. 북한의 국제기구 활용 관행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 이끌어내기 쉽지 않음.
김정은 집권부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욕 - SDGs 통한 협상 가능성 높을 것.
북한 안보 위협 중시하는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음.
북한에 대한 지원과 개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국내의 보수적 여론도 부담.
- R. SDGs 실현에 정보 접근, 이동의 자유, 취약계층 보호, 불차별 등 인권가치가 기반.
북한은 큰 도전 -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단체들 접근권, 정보, 조사에서 제약이 커.
SDGs는 핵심 인권관심, 특히 사회권과 연계성 높아. 북한인권 증진의 한 과정.

3-3. 위 질문에 이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북한 인권증진 활동은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안이 좋음.
북한 체제의 특성, 폐쇄성 고려해서 접근해야.

- F. 역설적으로 북한의 SDGs 수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SDGs 16에 명시된 거버넌스 원칙으로서의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 정책 도입 가능.
- G. 주요 유엔 인권기구들의 평양 상주사무실도 방문 등 활동에 제약 여전함.
30년 가까이 끊임없는 투명성 확보 문제로 싸움이 있음.
2019년 8월 북한은 유엔 상주기구들의 인원 축소 요구, 투명성 확보는 더욱 어려울 듯.
- H. 인권에 기반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무시한 북한개발협력은 성공할 수 없음.
- J. 기반 시설이나 제조업 같은 부문보다는 식량, 농업,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의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군비 축소도 발전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K. 인권-발전(개발) 결합의 성공적 경험은 국가 단위보다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발견.
추가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지원이 성공하였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개발지원 성공이 인권 개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도 살펴보아야.
- O. SDGs의 17개 목표 중 북한당국이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 협조적인 분야, 북한이 중점을 두는 여성, 아동, 장애인과 관련된 목표들과 인권개선을 연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P. SDGs 사업 진행, 북한은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빈곤, 건강, 에너지, 경제성장과 사회기반 확충 등 대부분 북한의 필요 사업
외부세계의 정보침투와 문화침투, 와해 시도는 극도로 경계. 신뢰구축하면 협력 가능.
- Q. 북한 내 변화를 위해 협력할 시민사회나 기층 단체가 북한 내에 없음.
SDGs로 북한과 협력하려면 당국의 정책, 태도, 협력 방식에서 개선이 있어야.

3-4. SDG 이행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조건과 향후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내부 및 국제사회 포함)

- A. UNDP 북한 현지 사무소의 협력 경험, Choson Exchange의 창업 교육도 진행 중.
북한 사람들의 역량과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아진다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연계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음.
- B. 북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당국의 주민 통제도 비례해서 강화.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자 전망.

- F. 유엔의 SDGs 이행 역량강화 프로그램 (통계와 데이터, 참여적 개발 - 인권기반접근). 유사한 경험을 지닌 국가의 사례 공유 (몽골, 베트남, 등)
- E. 아동인권분야,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사업
- G.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정상국가로의 움직임을 본격화함.
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주국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임.
유엔 상주기구들의 인권 감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맥락 중 하나라고 판단됨.
인도적 지원 보다 개발협력으로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한 사업 추진해야.
- H.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권 대화를 시도해야 함. 장애인, 여성, 아동 분야부터.
- I. 심각성과 인권 확장성,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 식량/보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
WFP/FAO, WHO의 대북사업에 한국인을 해당 기구 직원으로 참여시킴.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대북지원을 전개해 북과의 신뢰, 남북 인권협력의 기반을 조성함.
- K. 대북 제재의 해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재개, 북미 대화와 협상 필요.
이를 위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각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
북한인권 개선과 SDGs 이행 간 연결성: 개발과 인권 사이의 연결성과 차이가 있는지?
권리기반 개발지원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활용할 필요.
- O. 식량안보, 영양, 사회개발 등 UN전략문서는 SDGs의 목표를 상당히 반영함.
또 인권기반접근을 수용하고 있어서, 협력 이행 과정에서도 중점을 두어야.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북한 지대한 관심, 적극적 행보. 기후변화 관련 인권증진 도모해야.
산림복구, WASH 등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 P. 북한과 대화: 북한을 정치문화적 특성, 사회경제적 생활수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북한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진정성이 북한의 대화 참여에 기여할 것임.
SDGs 목표에 대해서 북한은 매우 긍정적, 이 분야의 대화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사업을 허락받는 정치외교적 노력 필요.
북한은 지속가능한 농업,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산림녹화에 관심.

3-5. 위 질문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민간 기관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의 경제자립을 위한 실제적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소통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함.

- E. 북한전문가와 국내 아동인권분야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북한실정에 맞춘 접근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F.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단계에서는 별로 없어 보임.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
- G. 모든 인권 이슈에 대응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국제사회에 분단의 고통과 연관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을 설득하고 행동을 제시해야.
국제 제재가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설득해야 함.
남한에서도 분단으로 인한 사고의 편향성 넘어서, 통일, 화합, 교류를 지향하는 방안, 인권 기반 논리, 공생공영 방안을 모색해야.
탈북민 인권문제 개선에 관심 필요: 남한 사회에 적응해 존엄하게 사는 방안 모색해야.
- H. 원칙을 세워주는 일.
- I. 인권정책 거버넌스 증진을 위해 연수, 교육, 공동사업 등 기술협력을 강화.
- K. 북한 개발 지원 및 인권 개선 관련 국제시민사회(INGOs)와 정보 교류(국가인권위원회 중심) 및 재정 지원(정부, 특히 KOICA가 국제시민단체와 공동 사업 추진하는 등).
- M. 보편적 의제 SDGs는 대북 교류·협력을 정당한 범위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함.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접촉면이 함께 확장될 수 있음.
SDGs 이행과 인권과의 연계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
- O. SDGs 목표 중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방역협력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이끌어내어야.
SDGs에서 대북제재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함.
국가인권위는 SDGs 이행 협력과 북한인권 증진의 연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여야.
- P. 한국이 ODA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국가인권위, SDGs의 북한인권 증진 기여에 관해 설명 담론 형성하고 알려야.
건강, 소득, 교육,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하는 SDGs가 곧 인권이라는 설득을 해야 함.
- R.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SDGs와 인권개선 절차를 통합하는 메커니즘/과정을 찾아야.
남북 경제 협력도 북한의 SDGs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개입

4-1. 인권 분야 기술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네팔의 마이크로 비즈니스 및 현지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음.

B. 참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C. 캄보디아, 미얀마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

유엔 및 개별 국가와의 기술협력 사례는 한동호, 도경옥, 이성훈,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통일연구원, 2015) 참고.

F. 유감스럽게도 별로 없어 보임. 베트남과 몽골, 미얀마 등에 참고할 사례 있는지 연구해 볼 만함.

K. 유럽연합, 몽골, 캄보디아, 호주 등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M. 응답으로 아래 표를 제시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정치적 상황과 정부 입장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	2011년 개방 이후 인권 기술협력에 협조적	2015년 1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이후 인권 기술협력에 협조적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
OHCHR 역할	상주 사무소 설치	방콕 동남아 사무소에서 담당	OHCHR 소속 인권전문가 UNDP 현지 사무소에 파견 스리랑카 조사단(OISL) 설치	양해각서 통한 기술협력 (2000년-)
주요 사업 내용	•법치 지원 •인권교육·훈련 •선거 지원	•법치 지원 •인권교육·훈련 •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원 •선거 지원	•법치 지원 •인권교육·훈련	•인권교육·훈련 •국가인권행동계획 (NAP) 제정 지원

O.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국가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P. 과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인권대화를 추진했던 사례.

R. 인권기술협력은 넓은 개념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고 있음.

유엔최고인권사무소가 해당 국가에서 사무소를 둘 때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전개됨.

4-2. 인권기술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북한 정부와 원활한 소통 확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북 정부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

- B.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북한의 실질적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실익을 중심으로 설득.
- C. 기본적으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한국 직접 지원은 난망.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을 요청/허용할 경우, 재정이나 시설 제공을 통해 북한과 유엔 인권기구의 기술협력을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E.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무책임주의에 동조하는 것임.
남북 인권대화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일관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와 안보문제를 위한 정치협상은 상호주의와 국익에 우선권을 두고 진행하되,
이산가족문제, 국군포로문제, 남북어부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 F.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역할이 크게 달라짐.
현 단계에서 북한이 수용하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간접적 지원의 역할도 가능.
- K. 직접 대화 불가능할 경우,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 M. 북한이 기술협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이후 UPR과 인권조약기구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통상적인 기술협력이 어렵다면, 개별 인권 주제로 국제 포럼/워크숍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이러한 장에서 간접적인 대화 및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야.
2015년 설립 북한의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접합점이 있을 듯.
- O. 현 단계에서 공식적 인권분야 기술협력은 북한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임.
비인권 분야의 지식공유, 기술협력을 통해 결과적 기술협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북한은 OHCHR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음. 결의안을 문제시 함.
OHCHR과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 P. 직접지원은 어려울 것, 제3기관과 단체를 통해 간접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 R. 기술협력은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그 인식을 가능케 할 대화자 역할을 포함하여 북한의 동의와 참여를 권장하는 역할 필요.

4-3. 북한 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대응 등과 관련하여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북한 정부의 관점에서는 공격과 비난으로 간주하기 쉬움. 오히려 건장한 협력 모델을 통해 북한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민감한 장애, 여성 등 이슈를 풀어가는 것이 좋음.

- B. 방역협력, 보건의료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북한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므로,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C. 한국 정부: 남북한 재난대응 및 보건협력 강화.
- E. 방역물자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당국을 설득하여, 반출 승인된 대북단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함. 북한 내 코로나19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
- F.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인도적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예) 대한적십자 유엔과 국제 인도적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간접적으로 지원. (재정, 인력 등)
- G. 남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야 함.
대북 인도적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법률적, 행정적 근거를 만들고 제도화해야 함.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적 논리와 교육을 담당해야 함.
- I. 무리한 남북 인권대화나 압박보다는 다원화된 국제적 채널을 통해 소통으로 접근.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비판은 자유지만 남북관계와 평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 J. 한국 정부가 북한당국에 직접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강화가 중요함.
북한 수용 가능 분야부터 국제사회를 통해 인권협력을 도모할 필요.
북한이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SDGs 관련한 사회권 및 취약계층의 인권부터.
- K. 대북 제재의 제한적 해제를 요구함.
- M.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전반적인 위축 현상.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들의 북한 주민 사회권의 핵심내용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경제제재가 북한 주민의 사회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이를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 O.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대북제재가 취약계층과 감염병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야.
- P. 각 주제나 사안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적 시각을 반영,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 Q. 한국장애인연합(KFPD)의 남북협력 지원하고, WHO, 적십자 등을 지원해야.

- R.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인권기준을 보장할 일차 의무를 가짐.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 관여 보다, 북한이 감염병 대처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그러한 지역/국제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국 정부는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품을 지원할 수 있음.

4-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 또는 협력 분야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인권 관련 감정적 비방/공격을 최소화하고, 북한과 건설적 협력 및 소통의 관계 형성.
- B.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실효성 있는 접근과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해야.
- C.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토대 마련, 기초자료 수집 등.
- E. 정치권의 양극화, ‘보수’ 만의 의제로 치부됨, 그 결과 한국 시민사회가 소외되는 경향.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자세와 입장을 유지해야.
- F. 질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권고 - 정책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에 기반.
남남갈등 해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화와 소통.
국제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의 적극적 대화와 소통 및 협력 관계 구축.
- G. 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이 함께 말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을 연구해야.
남한 시각으로 강요하는 인권 개념은 인권 개선보다, 공격으로 인식, 간극 크게 할 것.
(상호 인권 대화는)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 이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 H. 인권의 원칙에 따라, 각 사안에 대한 정치화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고, 관심을 보여야.
- I. 북한인권이 개선 혹은 악화되는 패턴을 발견해 장기적인 개선 방안 개발해야.
북한 개혁개방, 남북협력지대 운용, 급변사태 등 경우별로 대비하는 인권정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증장기, 구조적 대응책 연구).
- J.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위원회의 직접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음은 인권 기준에서 모니터링 해야 함.
-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포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연구원 등
- 국내 대북인권정책도 독립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국제사회 및 관련 이해국가들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방향
- 정부 및 유관기관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을 피해자 중심성 기준으로 모니터링.
- K. 한국 내 북한인권 문제 관련 초당적·초당파적·초이념적 논의 기구를 정착시켜야.
대북 인권 문제 및 개선과 관련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 M. 북한의 UPR 권고 수용을 고려하여, 법치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북한 교화소 개선 프로그램, 부패방지,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
- O. 평화, 발전 등의 상호 연계와 강화의 관점에서 인권 보호/증진 여론을 조성해야.
- P. ‘인권’ 보다 북한이 부담을 덜 느끼는 ‘인도주의’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인권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바탕으로 증진된다는 담론 확산 필요.
- Q. 탈북자 인권침해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인권을 지원, 이해촉진, 옹호해야 함.
- R. 북한인권 활동단체와 탈북자 지원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하고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함.
지역 인권제도와 장에서 북한이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설문 문항과 별도로 제공된 두 전문가의 의견]

- L. 인권증진을 위한 전략은 ‘압박’ 과 ‘지지’ 양면전략으로 구사해야.
압박 전략만으로 국제사회와의 무역의존도가 낮은 북한에 유효한지 의문.
전략을 통합적으로 구사하여 인권증진 필요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 노력을 점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
30년간 노력 - 냉철한 판단 필요, 미미한 효과, 낮은 수준의 제도적 변화에 기여.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도 강은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함.
전략계획(2017-2021)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공유 등 기술협력을 통한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임.
전략계획은 국제적 규범과 기술표준, 관행, 국제협력의 준수를 위한 협력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북한이 합의한 것임.
SDGs 이행 자발적국가보고(VNR) 지원을 위한 북한 역량강화 사업 중요, 파편화가 문제.
SDGs 이행은 북한의 포괄적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북한의 SDGs 이행 관련, 이행과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 고려해야 함.
2016년 북한 사회 과학 아카데미에 인권연구소가 설립,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협력 분야: 노동 국제기구 가입, 사형제 폐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활동 허용 및 협력, 여성 차별 문제, 구금시설 환경 개선 등.
지식의 전달자로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예 - ILO 가입, 노하우와 지식 전달.
북한이 UPR에서 변화를 고려, ‘북한의 UPR 수용 및 유의 사항 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식전수 모듈(안)’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을 재프레임하여, 북한의 변화를 지지, 지속시킬 수 있는 대화와 지원 기능할 필요.
- N. 북한은 SDGs 이행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 조직에 인적으로 적극성을 보임.
SDGs 자체를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대단히 유효하게 인식하고 있음.

환경의제와 다자간 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SDGs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연결됨. 제재가 강력한 상황에서 국제적 보편적 언어인 SDGs 활용이 북한에 유용: 북한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제공함.

북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하는 추세임. 최근 환경보호 법안, 경제개발구 지정과 녹색경제 정책, 법률적 제도화, 경제개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을 강조함.

북한 내에서 국제규범과 실행 사례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여전히 SDGs 이행을 위한 환경과 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나 이것도 이행의 단계.

2016년 경제개혁 5개년 계획과 SDGs 진행 과정이 함께 연동되어 있음.

UPR 참여 자체로 북한 내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

SDGs 이행 지표를 인권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지만, UN전략문서 국가 분석 평가에서 SDGs와 인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음.

자연적으로 북한의 SF나 유엔 기구들의 워크 플랜과 북한 SDGs VNR이 융합할 것임.

SDGs 이행에 대해 유엔 기구들이 직접 관여하고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

ESCAP: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이행 측정 및 데이터 통계 생산, 통계역량 강화 사업 예정, SDGs 이행을 위한 소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SDGs 이행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 개별 목표 하나하나 관련해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민간 기반과 국제기구를 통해 SDGs 영역별로 지원하는 것이 유용함
- 양자 간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도 다자간 프로그램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행위 주체, 협력 주체의 다변화가 필요함
- 정부 주도가 강할 경우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려워질 때 다른 것들도 모두 멈추게 됨. 민간 협력이 다양해지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다자간 협력 가능한 환경 만들고 민간 주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인권 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SDGs 모든 목표가 인권 맥락에 닿아 있으므로 SDGs 협력 방안을 강화하여 인권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전문가 의견 주요 참고 사항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의견과 제안이 취합되었는데, 대체로 본 연구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유의할 점을 세세히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방향과 비교적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의견과 제안을 추출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 그간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과 비판의 효과와 반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권 증진이 지역 안보 긴장과 세력 대결의 상황 등 특수성과 정세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UPR의 수용률, 유의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변화 조짐이 회피 전략이라 할지라도 궁

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무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정부의 반발이 적고 호응도가 높은 취약집단 인권 증진 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요 의견은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한다. 이외에 압박정책이 국제사회와 무역 의존도가 낮은 북한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일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과잉 정치화되었다는 우려, 특정 정보(탈북자 증언)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점, 북한 정부 적대화 접근이 인권개선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일정한 내적 개혁과 국제 제도의 호응을 평가해야 하며, 제재가 야기한 다수의 생존권 위기를 심각히 보아야 하며,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제재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2020년 들어 제재 강화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와 연동되어 거의 전방위적으로 주민의 삶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미국 주도의 정치화에 대한 평가 등이 병행된다. 국제사회 관심과 북한 인권문제의 가시성 유지 면에서 효과적인 반면, 북한과의 협력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화, 국제적 관심 제고, 일정한 북한의 내적 반응 유도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인권의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결의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 UPR과 인권조약기구의 심의에서는 북한의 적극적 노력이 보이며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UPR 참여 자체로 북한 내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정보와 자료의 공정성 객관성에 개선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내었으나 실질적 인권개선은 아직 미미하다는 판단도 병존한다.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북한의 반응에 일부 보여주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상황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SDGs 이행 정도의 측정 및 데이터 통계 생산, 통계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북한 SDGs 이행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진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개별 목표들과 관련해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민간 기반과 국제기구를 통해 SDGs 영역별로 지원하는 것이 유용함
 - 양자 간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도 다자간 프로그램을 통한 역할 증대해야.
 - 한국 정부 주도성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민간 협력의 다양화를 통해 보완해야 함.
 - 인권 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SDGs 모든 목표가 인권 맥락에 닿아 있으므로 SDGs 협력 방안을 강화하여 인권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여론화.
-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서는,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응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관된 정책과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강은 양면전략을 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북한의 그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이행의지를 밝힌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분석하여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에 활용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정확한 정보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결의안 내용과 방향 조정을 위한 외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 제안, 정부와 인권단체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유엔의 핵심 가치와 남북 교류의 상화연계성과 상보성 제고 등이 요청된다. 북한인권개선과 한반도평화 정착의 연계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역할(대화와 협력, 인권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관계개선을 통한 인권개선 노력 역시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한국의 인권개선 경험을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 자문에 응한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인권 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SDGs 모든 목표가 인권 맥락에 닿아 있으므로 SDGs 협력 방안을 강화하여 인권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SDGs 이행 지표를 인권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엔 전략문서와 자발적 국별 리뷰(VNR)에서 SDGs와 인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북한의 전략 계획이나 유엔 기구들의 워크 플랜과 북한 SDGs 자발적 국별 리뷰가 융합할 추세가 예견되기도 하였다. 즉 SDGs 이행과 평가에 유엔 기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관찰된다. 북한의 SDGs 관심과 이행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와 관련 조직의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북한이 SDGs 자체를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유효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환경의제와 다자간 협약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역시 SDGs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발구 지정과 녹색경제 정책, 법률적 제도화, 경제개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SDGs의 보편성이 북한이

SDGs를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가의 의견 중에서 SDGs 이행 지표를 인권으로 엄밀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엔 전략 계획 등을 통해 SDGs와 인권의 연관성을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주목한다.

- SDGs를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에서는, 몽골의 코이카협력 교통통신 인프라 사업, 북한 상주 국제기구(WHO, WFP, UNICEF 등)의 역할을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권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북한과 유럽의 인권대화,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호주, 스리랑카, 포르투갈의 대북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 의무 준수 권고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도전과제와 한계로서 북한의 협력이 미지수라는 한계, 중단기 효과가 미미할 점, 미국과의 협력이 난제인 점, 국내 보수 여론의 부담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한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을 우선으로 하면 북한의 ‘국제화’ 의욕과 만나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식량/보건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하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행 측정 및 데이터 통계 생산, 통계역량 강화 사업 예정, SDGs 이행을 위한 소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원 재정의 확충, SDGs를 통한 인권증진 접근 체계화, 사회권을 통한 북한인권 접근 방법 개발, 대북 개발 지원 및 인권개선 관련 국제시민사회와의 정보교류, 재정 지원 방안 강구가 강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UPR권고 수용/유의 입장 요소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지식적,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SDGs를 북한인권증진 접촉면 확장에 중요한 기회로 삼아, SDGs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과 기술협력프로그램 등 구체적 전략 수립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이 외에, 제3기관을 통한 간접 협력 우선, 민간 대화 창구를 우선 개설, 명시적 공식적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후순위로 하고 비인권분야의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을 통해 결과적 기술협력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 아울러 북한 SDGs 이행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SDGs 개별 목표별로 관련 유엔 기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 직접 개입 보다는 다양한 민간 기반 기구와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해 SDGs 영역별로 지원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제안도 합리적이다. 이는 또한 SDGs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과 개입에 행위 주체와 협력 주체의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주도가 강할 경우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려워질 때 다른 것들도 모두 멈추게 되기 때문인데, 민간 협력이 다양해지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자간 협력이 가능한 환경 만들고 민간 주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통로

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로 정부 수준과 민간 수준의 대화와 협력 촉진, 인권보다 인도주의적 접근 우선, 주민의 삶의 위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인권’ 수용성을 높이는 접근, 사회권 바탕의 인권 증진 담론 개발, 초당적-초당파적-초이념적 논의기구로서의 역할, 대북인권개선 포괄적 프로그램 제시, 인권-평화-발전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인권보호 증진 등이 제안되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활동을 허용하고 여성 차별 문제, 구금시설 환경 개선 분야 등에서 기술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기구 협력 역량강화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북한인권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간접적 연수/교육/공동사업 추진 등도 참고할 수 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인권 외교의 확대와 관련된 제안도 주목해야 한다. 인권 외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재단 등이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V. 결 론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연구의 종합

가. 새로운 접근 전략

- 본 연구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제안과 시행 이후의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다양한 협력프레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네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제안과 시행 이후의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다양한 협력프레임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이며, 둘째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의 관계와 경험이며, 셋째는 북한의 SDGs 관심과 이행 및 경험, 그리고 넷째는 최근의 새로운 상황 즉 코로나19 사태, 국제제재와 인도적 위기, 2017년까지의 남북관계단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인식, 북한의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반응과 경험, 북한의 SDGs 이행과 개발협력에 대한 반응과 경험, 북한 내부의 변화 등 맥락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자문 의견도 구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최근의 새로운 상황, 즉 코로나19 위기, 국제제재가 북한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 그간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과 비판의 효과와 반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증진의 조건과 협력의 가능성이 지역 안보 긴장과 세력 대결의 상황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항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다.
-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협력적 태도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모색해야 하며, 북한 정부의 반발이 적고 호응도가 높은 취약 집단 인권 증진 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가 야기한 다수의 생존권 위기를 심각히 보아야 하며,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 제재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2020년 들어 제재 강화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와 연동되어 거의 전방위적으로 주민의 삶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서는, 인도적 위기의 가중과 SDGs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응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일관된 정책과 입장 표명을 가지면서 개입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 SDGs를 포함하여 인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역할(대화와 협력, 인권개선) 동시에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사회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인도적 위기, 코로나19와 제재의 상황에서 SDGs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북한-유엔전략계획은 SDGs와 인권 개선의 연관성을 높이는 잠재력이 크다.
-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충, SDGs를 통한 인권증진 접근 체계화 확대, 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 확대, 대북 개발지원 및 인권개선 관련 국제시민사회와 정보교류,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UPR 권고 수용/유의 입장 요소들에 대해 대북한 지식적,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위한 국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SDGs를 북한인권증진 접충면 확장에 중요한 기회로 삼아, SDGs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과 기술협력프로그램 등 구체적 전략 수립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 이 외에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점진적 노력과 아울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활동 허용 및 협력, 그리고 여성 차별 문제, 구금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북한과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ILO등 국제기구가입과 의무행 지식의 모듈화와 전수, 기술협력 지원 모색(여성차별 철폐, 사형제 폐지 점진적 노력, 인권고등판무관실 활동의 자유성 확대, 구금시설에서의 환경 개선 등) 등이 협력의 사안으로 제안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로서 정부 정책 모니터링 외에도, 북한인권 개선 관련 정부 수준과 민간 수준의 대화와 협력 촉진, 인권보다 인도주의적 접근 우선: 주민의 삶의 위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인권’ 수용성을 높이는 접근, 사회권 바탕의 인권 증진 담론, 초당적-초당파적-초이념적 북한인권 논의기구의 설립, 대북인권개선 포괄적 프로그램 제시,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연계성의 관점에서 인권보호 증진 등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인권 외교의 확대와 관련된 제안도 주목해야 한다. 확대 강화된 인권외교 프로그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촉진 외교,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재단 등의 기능 개선 등이 북한인권을 위한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 방안의 검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과 협력은 국제인권보장체계에서 반복되는 권고 사항 중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수용 태도를 밝힌 사항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 면에서나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유엔인권메커니즘 각각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요지를 정리한다.

-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해 북한은 “매년 적대세력과 일부 서방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유엔 총회에서 반 북한인권 결의를 전격 통과시키고 허구에 불과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는다”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³³⁶⁾ 따라서 인권이사회의 결의 자체를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협력을 이끌어내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결의는 문서 그 자체보다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도모할 때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협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보여준 북한 정부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정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환영과 존중을 표하면서도 막상 검토 결과에 대해 적극적 반대 표시와 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제도가 과연 북한인권의 개선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UPR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검토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그 역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UPR을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의 장에 참여한다면 분명 북한인권의 개선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UPR 자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UPR 결과는 우리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수용한 권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추후에 북한이 주목하거나 또는 거부한 권고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성 확대와 이들 기구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또는 남북 간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볼 수 있다.
- 최근 북한인권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차 UPR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

336) UN Human Rights Council,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33/PRK/1 (20 February 2019), p. 14.

은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건강권, 기술지원 및 협력,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의 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한 인권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북한 정부는 또한 제3차 UPR에서 우리 정부의 권고 사항 중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건강권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시 대표단에 장애인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해 북한에 남북한 협력을 우리 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 특별절차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서,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중국, 유엔과 시민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 유엔과 시민단체에 대한 권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경우, 이례적으로 2017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북한정부가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교류 방식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우선 목표 중 하나로 하여 SDGs 협력 방안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북한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방문을 허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들을 주제별 특별절차, UPR,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등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들 중 물, 위생 및 영양, 주거, 건강에 권리 등 북한이 수용 입장을 보이는 영역의 주제별 특별절차수임자가 북한을 방문해 해당 권리와 관련한 북한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면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UPR은 북한이 비교적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권고에 대해 수용 또는 거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절차를 통해 도출된 권고가 UPR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 한편, 2020년 보고서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코로나19, 그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응, 그리고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

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지식,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그리고 인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응답이 요구된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상황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유엔의 관련 절차에서 진지하게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공간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를 바탕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에 주목하며, 이것이 분단체제 하 남·북한의 억압적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한국 사회에서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 중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 즉 책임규명과 관련된 후속조치 이행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 중 북한 내 인도적 및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도적 상황에 의도치 않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한 저해요인을 완화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 강제송환 후 구금되는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이 이슈를 직접적인 남북 협력 의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강제송환, 인신매매,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과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관련한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정책적 제도 마련”,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을 허용” 하는 방식의 완화된 접근을 통해 북한 내 구금 여성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 북한은 자유권위원회의 2001년의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 이후 2004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제3차 국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유권규약상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UPR에서는 자유권규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국가들의 권고도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유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참여와 같은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협력하고 있는 UPR이나 다른 주요 인권조약기구에서 나온 권고 중 자유권 관련 내용들에 주목하여, 북한이 유엔인권기구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자유권 상황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가장 마지막 심의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 2003년 권고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취약집단이 국제식량 원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및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 △산전 보건서비스 및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 △요보호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가정 양육을 제공하고 이들 아동들이 정규교육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학생·교사·가족의 인식을 개선할 것,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할 것 같은 권고 사항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권 상황의 개선은 북한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SDGs 이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규약 이행을 위해 국제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북한에 대한 2003년 권고에서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과의 국제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규약 이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강조하였다. 사회권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으로 제시하는 분야이자,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권 중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SDGs 이행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량·영양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우선으로 하여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폭을 점차 더 넓혀가는 것이 유엔기구들을 매개로 한 북한인권 개선의 단계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역시 여러 항목에 걸쳐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전문기구와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 일반과 관련, 아동권리 관련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 및 국제사회의 모

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니세프(UNICEF), 유엔개발기구(UNDP)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여성 및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도 장려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또는 기술협력을 모색하거나 지속할 것을 권고한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요보호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과 가정 중심의 대안적 보호 모색(유니세프), 아동 대상 폭력 방지와 대응 강화(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기타 관련 유엔기구),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아동의 의약품 접근권 증진 등(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청소년 대상 HIV/AIDS 예방 위한 정보 제공(유니세프, 유엔에이즈, 유엔인구기금), 아동 영양실조 퇴치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치(유니세프, 세계식량농업기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방안 수립(유엔국가팀,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방해하는 노동 수행 요구 금지,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에 대한 기부 요구 효과적 금지, 교사의 학생 체벌 방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학교 중퇴 방지, 성평등 증진, 학업성취도 정보 주기적 공개, 이해·평화·관용·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증진 등(유니세프, 유네스코), 아동의 노동 동원 방지(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여러 권리 영역에서 관련된 SDG의 세부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SDG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착취에 대응 강화(SDG 16.2),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이에 필요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교사 양성 등(SDG4, 11),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감소와 아동 건강 증진(SDG3.2, 3.8), 청소년을 위한 성 및 재생산 보건 정책과 교육(SDG3.7),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아동의 영양 개선(SDG2.1,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SDG13.5), 물·위생·영양 및 생활수준 개선(SDG 6.2), 아동의 학습·휴식·여가에 대한 권리(SDG4), 영유아 발달을 위한 양질의 보육 지원 및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SDG4.2), 아동의 노동 동원 및 경제적 착취 방지(SDG 8.7)에 대한 권고에서 SDG 세부목표를 연계하고 있다.

-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제3차 UPR 권고 사항 중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건강권·교육권·식량·영양에 대한 권리 분야에서 기술지원 및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이행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이 포함되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 또는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이에 필요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교사 양성(SDG4, 11), 영아·아동·모성 사망률 감소와 아동 건강 증진(SDG3.2, 3.8), 모자 영양실조 관리 및 아동의 영양 개선(SDG2.1,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SDG13.5), 물·위생·영양 및

생활수준 개선(SDG6.2), 아동의 적절한 식량·영양·물·위생 접근 보장(SDG4.2) 등의 권고는 북한의 해당 SDG 이행과정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북한과 해당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간의 직접협력의 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북한에 대한 권고에서 여러 항목에 걸쳐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 및 지원을 모색할 것과 SDGs 이행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규약 이행 일반에 대한 권고로서는, 당국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과 SDGs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아동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제3차 UPR에서 수용적 태도를 보인 영역,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포함 여성의 영양실조 근절 노력 강화,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우선하여 관련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권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북한은 2016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2018년 12월 최초 국가보고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경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권고나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협력 조항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 장애인권리 관련 국제기구, NGOs, 외국정부들과의 국제협력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국제 NGOs의 북한과의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남북 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권리 개선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북한정부에 대한 권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SDGs 이행과정을 장애를 포괄하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권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차 UPR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때 정부대표단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를 북한이 수용한 만큼, 장애인 권리는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은 국제인권보장체계에서 반복되는 권고 사항과 그러한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나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즉,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중 북한이 수

용 입장을 밝힌 내용을 인권 관련 우선적 협력방안으로 두고, 해당 분야에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면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제1차 UPR에서 인권 대화와 협력은 수용하지만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후 UPR 절차와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인권조약의 보고 절차에는 참여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접근의 배경이 된다.

-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중 북한이 UPR에서 수용 태도를 밝힌 사항은 국제인권조약 준수 및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 등 미비준 주요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입법 및 조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이산가족 상봉,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등이다. 또한, 최근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절차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소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권고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준수와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집단 인권 보호, 국가인권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시작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등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전략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의 관련 대북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한 인권대화 또는 양자협력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북한과 경제적·인도적 협력을 진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 한국 정부는 유엔결의를 통한 북한인권개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같이 찬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조하는 한편, 핵 및 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북한에 대한 제제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대북제재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평가하고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의견 개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제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20년 보고서뿐 아니라,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8,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북한인권특별보

고관 2019년 보고서, 유엔 사무총장 2019년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의 검토

북한의 SDGs 이행현황과 SDGs와 인권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북한의 유엔 전략 계획과 SDGs에 대한 태도와 이행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3차 UPR에서 262개의 권고는 사실상 17개 SDGs 중 다수의 목표와 연관된다. 262개의 권고 중 약 30%가 SDG16과 관련된다. SDG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내용을 한다. 다음으로 권고의 약 18%가 SDG2, 즉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와 관련된다. 권고의 약 13%는 성평등을 내용으로 한 SDG5에 관한 내용이며, 권고의 약 8%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한 SDG8과 관련된다. 또한 권고의 약 6%는 건강과 웰빙에 관한 SDG3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국가들의 권고와 SDG 목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 증진과 정의 보장,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SDGs를 활용하여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며, 북한이 UPR 권고 중 수용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진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SDGs를 연계시켜 인권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을 크게 발견하였다.
-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는 부재하지만 국가개발계획 안에 SDGs와 인권기준을 연계하여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DGs 이행의 점진적 인권적 접근 사례를 주요하게 참조할 수 있다.
-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과제와 코로나19 위기, SDGs 이행현황과의 연계성을 통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적 우선 과제가 북한-유엔 전략계획의 우선순위와 부합한다.
- 한국 정부가 북한이 수용 태도를 밝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내용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SDGs가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 SDGs 이행에 대해 북한이 취해온 긍정적인 태도를 재확인함으로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인도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색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한국 정부의 전략적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도 SDGs 접근이 기여할 수 있다.

-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마취제를 포함 외과진료, 산모 관리, 결핵 및 기타 질병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들의 부족이 북한의 SDGs 이행 우선순위인 영양과 위생 영역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위기와 보건위기를 겪고 있으며 기후위기까지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생존 이상의 생활,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정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계획(2017~2019)과 제2차 북한인권증진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재개를 추진하고,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협력, 남북 간 전염병 공동 대응체계 추진, UNICEF 모자보건사업 지원, WFP 영양지원사업, WHO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 등의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 산모 대상 영아, 보건, 의료 지원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SDGs의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포괄적·통합적 증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추진 △북한 인권 증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여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국제협력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인권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의미가 크다.
- 이러한 정부 정책은 본 연구의 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 민간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식량안보와 보건·영양,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분야 협력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을 위한 제재 완화 등 환경적 조건 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북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어 관련 인권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권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방안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현재의 지정학적 세계적 권력대립 상황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상황, 그리고 코로나19가 야기한 심각한 제약 조건 하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쉽게 타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첫째, 공공외교를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민-관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갈등악화 예방을 위한 예방외교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더 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여론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SDGs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지역 공동안보 증진 방향의 인간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SDGs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본질적인 의미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 실행해야 한다.
-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SDGs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SDGs 이행점검체계가 더 효과적이다. SDGs를 통한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은 환경부와 통일부의 협업을 넘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되어야하므로 SDG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SDGs 이행점검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북한이 처해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하향식 접근의 예시로 북한-유엔전략계획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식량과 영양안보 개선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과 수유중인 여성, 5세 이하 아동의 영양 상태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명시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앞으로의 발전을 이어갈 세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으로 단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지원의 교차점을 짚은 것이라 볼 수 있다.
- SDGs는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조응하는 북한 내부의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SDGs는 현재 그 어떤 통로보다 더 효과적인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는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SDGs 이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SDGs 각 목표는 북한의 취약계층 별 인권 증진과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III장의 표 41 [북한-유엔 전략계획 우선순위와 관련 SDGs 및 북한인권 현황]에 요약되어 있듯이, 북한-유엔전략계획의 우선순위는 각 SDGs 각 목표별 성과목표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각 성과목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별 인권 증진의 효과를 보여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 전략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효과를 위해 인적, 기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인도적 위기는 북한-유엔 전략계획이 제시한 전략

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국제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SDGs를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지원 수요 중심으로 즉각적인 지원과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SDGs의 개별목표마다 북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2020년 들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국제기구 및 민간 기구 등을 통해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SDGs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양자 구도의 정부 주도성을 낮추며 민간 차원의 활발한 다자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종합적으로 한국 정부는 SDGs를 통해 북한의 농업과 보건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가 이미 SDGs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SDGs의 모든 목표들은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SDGs는 북한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결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은 국제인권보장체계에서 반복되는 권고 사항과 그러한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또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히 한국 정부는 인도적 위기의 가중과 SDGs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응하면서도 일관된 정책과 입장 및 국제협력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술적 지원 증진하며 북한의 취약 집단 인권 증진 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에서의 다수의 생존권 위기를 심각히 보아야 하며,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협력, 남북 협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도모할 때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명한 인권 사안을 중요한 인권 협력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들을 주제별 특별 절차, UPR,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 등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UPR 결과는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다.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인권 사안은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건강권, 기술지원 및 협력,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건강권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남북한 협력 등이다. 이러한 관심사 중 상당 부분은 사회권 분야 인권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권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으로 제시하는 분야이며,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동시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SDGs를 통한 인권협력의 방안으로 연계되는 인권 분야이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북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존중과 보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해야 한다. 협력이 어려운 자유권 분야에서는 북한이 협력하고 있는 UPR이나 다른 주요 인권조약기구에서 나온 권고 중 자유권 관련 내용들에 주목하여, 북한이 유엔인권기구 등과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자유권 상황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UPR의 대북한 권고는 SDGs 다수의 목표와 직접 연관된다. 특히, SDG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이 그 중심에 있다. SDGs의 모든 목표들은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SDGs는 북한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실질적 인권 개선 및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SDGs를 활용한 인권 모니터링, 이해관계자간 대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반영, 유엔 전략문서와 등 국가개발계획에 반영은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 방안이다. SDGs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취할 때 강한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정부의 북한인권증진계획에서 제시된 자유권과 사회권의 포괄적·통합적 증진, 북한인권 증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연계라는 기본 방향은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 접근이며, SDGs의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전략은 국제인권제도를 통한 인권 개선의 전략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간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식량안보와 보건·영양,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분야 협력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을 위한 제재 완화 등 환경적 조건 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SDGs 국제협력을 긍정적으로 표명하고 접촉과 협력 및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2.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권고안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시 권 고 안

제 목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과 협력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인권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인식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국제인권규범과 제도 그리고 유엔 SDGs 목표에 의거하며 경제적·기술적인 국제 지원 및 국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종합적 협력을 전개한다.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적 접근 정책은, 보편적 인권규범과 인권의 불가분성, 국제사회와 국가의 책임에 의거한 실질적 인권개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조사, 정보화, 압력과 아울러 이해 증진, 대화 전략, 국제 협력, 인적 역량 형성, 적극적 인권제도 참여 등 입체적 개선 전략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상설적 정책협의를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경제적·인도적 협력을 진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와 국제제재로 인해 보건, 의료, 식량, 건강의 분야에서 인도적 위기와 인권 악화가 발생함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와 북한의 일정한 국제인권제도 수용과 SDGs 등 국제규범의 인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북한인권 증진 정책은 입체적 인권개선 전략을 필요로 하므로, 다자간, 양자 간 동시 접근, 중장기, 단기 동시 접근, 인도적 지원과 인권 지원 분야의 연계적 접근,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의 연계, 민간단체들과의 국제적 국내적 협력 증대, 이를 통한 조율과 개입의 지렛대 확충 등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기후위기, 글로벌한 분열의 증후와 협력 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 등이 21세기의 개별국가와 국제 상황과 인권상황 및 인간안보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이해하며, 이를 고려한 인권증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평화유지의 과제를 인권 증진과 긴밀히 연관시킬 것을 권고한다.

현재 변동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코로나19가 야기한 심각한 제약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인권 대화와 협력, 그리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쉽게 타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를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민-관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갈등악화 예방을 위한 예방외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권 규범의 공감대, 대화, 인적 교류, 간접 지원, 역량화, 다양한 외교, 다양한 협력의 트랙, 국가 간 갈등의 예방, 인도주의-사회권 분야에 증대된 관심, 제도화 지원, 인권기술 협력 등을 통해, 인권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즉 남북 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존중과 보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해야 한다.

취약 집단의 최우선 인권개선 분야 등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을 추구한다.

2. 국제 인권제도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아동, 여성, 장애인, 기타(노인, 난민 등) 취약계층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협력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가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포괄적·통합적 증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추진 정책은 다음의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적 인권 규범에 기초한 남북한 인권개선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준수와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집단 인권 보호, 국가인권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시작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등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전략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UPR, 특별절차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북한이 가입 또는 비준한 인권조약의 국가보고절차와 관련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은 국제인권보장체계에서 반복되는 권고 사항과 그러한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 중 북한이 UPR에서 수용 태도를 밝힌 사항은 국제인권조약 준수 및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 등 미비준 주요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입법 및 조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 및 법치 증진,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 이산가족 상봉,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등이다. 또한, 최근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절차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소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권고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UPR 제도에서의 북한의 일정한 협력에 대해서 인권 증진의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북한이 수용한 권고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추후에 북한이 주목하거나 또는 거부한 권고 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과 이들 기구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권고를 수용한 바에 주목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또는 남북 간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북한인권 관심사인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건강권, 기술지원 및 협력,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 분야의 인권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정책적 제도와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보건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도 권장된다.

아동권리위원회, 여성권리위원회, 사회권조약위원회 등 사회권 분야를 협력 가능성 높은 분야로 설정하여, 북한과 UNICEF(유니세프),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협력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중 북한이 수용 입장을 밝힌 내용을 인권 관련 우선적 협력방안으로 두고, 해당 분야에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갈 것을 권고한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기구의 접근과 이들 기구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권고를 수용한바 즉,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또는 남북 간 협력의 확대를 모색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심사 중 북한이 일정한 수용 또는 고려의사를 밝힌 국제규범의 가입 및 비준,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 권리, 건강권, 기술지원 및 협력, 교육권, 표현의 자유, 인권조약기구와의 협력, (사법 정의), 발전권 등의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절차,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비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건강권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관련 약속 이행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에 대한 권고도 이행해야 한다. 즉 남북 교류를 통한 인권 개선과 증진 방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존중과 보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해야 한다.

3. 북한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SDGs 이행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조성 및 목표별 관련 분야에 다자간 및 양자 간 협력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인권 측면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목표 16(인권과 거버넌스), 2(기아), 5(성평등), 8(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를 연계한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연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 분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권 실현의 일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권과 개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SDGs에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발전권,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과 기준이 사실상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빈곤, 젠더, 사회정의와 같은 인권기반 발전 과제뿐만 아니라 물과 위생, 기후변화, 도시개발, 산업 식량안보, 평화의 과제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이 SDGs 이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SDGs를 국제사회와의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SDGs를 통한 국제협력이 북한의 인권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SDGs는 고위급정치포럼과 자발적 국별 리뷰 등 구체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다자간 제도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자발적 국별 리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관련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북한에 대한 권고 중 다수가 SDGs 목표별로 연계된 점에 주목하여, SDGs 이행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사회권 개선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사법정의, 기아,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영역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인권기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SDGs를 통한 인권개선의 가능성을 강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하여,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SDGs 이행에 대해 북한이 취해온 긍정적인 태도를 평가함으로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인도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 인도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분야를 완화시켜 북한의 SDGs 달성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식량 자급량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 연구 기술 이전과 농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보관 및 운송 시스템 수립 등 농업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긴급 의료물품 제공과 산모 관리, 결핵 및 기타 질병 관리, 위생시스템 개선 등 보건의료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 북한의 생태계 보호와 기후위기 및 재난위기 대응을 망라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해온 산림 생태계 보호복원 협력, 남북 간 전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자연재해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 UNICEF 모자보건사업 지원, WFP 영양지원사업, WHO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 등이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하고 이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증진 노력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유엔 전략계획에서 합의된 우선순위가 SDGs 달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취약계층 별 개별 인권 증진과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협력방안을 국제기구와 민간 행위자 중심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실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북한의 유엔전략계획(2017-2021)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공유, 그리고 북한의 조사, 통계, 국제기구 접근 역량 강화 등 기술협력 촉진 또는 지원
- 북한의 SDGs 이행 자발적 국별 보고(VNR)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원 촉진
- 한국의 ILO를 포함 국제기구 가입과 협력에 관련된 지식의 전달
- 북한이 최근 SDGs 협력을 통해 관심을 보인 환경보호 법제, 경제개발구 지정, 녹색경제 정책, 법제도 개선,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

-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들에 한국의 인적 재정적 기여 증대
- 유엔 ESCAP의 ‘2030 의제이행을 위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소통
- SDGs를 통한 북한과 유엔의 협력 상의 효과를 인권 기준에서 해석하고 정보화

4.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도 접근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검토, 시행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민·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며, 국내외에서 확대한다.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자금과 기술 공여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SDGs 관련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인적 참여와 재정적 기술적 협력 분야에서 확대, 지속한다.

SDGs가 인권 증진과 지역적, 국제적, 안보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도록 인도주의-인권 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소통을 확대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 인권기술협력, 공공외교, 시민외교를 확대한다.

북한인권 관련 정보와 통계 수집 및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남북한 협력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갈등민감성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다. 남북한 협력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와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기반이 될 것이며, 갈등민감성평가는 안보상황 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강택구, 장훈, 이정석, 박용하, 주장민, 함소현, 정기웅,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박지연, 손혁상,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오름, 2020).

박훈민,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법제연구 18-19-2-5 (한국법제연구원, 2018).

빙현지, 이석기,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이규창, 김수경, 이지순, 정은미, 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이대훈, 박진아, 백범석, 오시진, 이경주, 이주영, 정구연, 정육식, 「북한인권정책연구: 제3세대 인권과 북한」 (통일연구원, 2019).

최용호, 김영훈, 이윤정, 임채환, 고갑석, 「개혁·개방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 논문

강동완,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통일과 평화」,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곽대중, “북한 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향”,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18).

김영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제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제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김태균 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

리대학원, 2020).

박순성,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박지연, “UN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제19권 제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박진아,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와 북한—보편적정례검토(UPR), 특별절차,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3. 11).

신각수,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6).

여민주 외, “북한의 대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35권 제3호 (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우종길, “유엔인권이사회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적정기검토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이승현 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이슈와 논점』, 제173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임예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Online Series』, CO 17-14, (통일연구원, 2017).

임을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국가전략』, 제25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9).

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의의 및 과제”, 『Online Series』, CO 13-09, (통일연구원, 2013).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20).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건설보고서』, 제15권 제0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북한농업동향」, 제21권 제3호 (2019).

KITA, “2019 북한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남북경협리포트」, 제2호 (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2020).

3. 기타

남상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담론의 북한 적용」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북한주민을 위한 SDGs 활용방안 발표자료, 2019.12.13.).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법무부, 2008).

서보혁, 「한반도 인간안보 과제와 남북협력 방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12.4.25.).

서보혁,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인권예의 적용가능성 검토」 (북한인권평화회의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이대훈, 「비갈등적 북한인권 개입」 (2008 제주인권회의 발표문, 2008.6.27.).

이원웅, 「북한인권과 미국: 오해와 진실」 (북한인권평화회의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정육식, 「북핵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평화회의의 발표문, 한국인권재단, 2014.11.11.).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9).

윤종필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3880 (2016.11.28.) [폐기].

정의화의원 발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1915362 (2015.05.29.) [폐기].

<국외 문헌>

1. 단행본

GANHR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ccelerators, Guarantors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rch 2019).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gres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Health in All Policies: Case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July 2017).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ptember 2016).

Government of Viet Nam,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May 2017).

Government of Viet Nam, *Viet Nam's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une 20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ugust 20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ptember 2019).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The United Nations in Viet Nam, *One Strategic Plan 2017-2021*, (June 2017).

UN World Food Program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ay 2019).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June 2020).

2. 논문

Alston, Philip, “Ships Passing in the Night: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Debate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Human Rights Quarterly*, Vol. 27, No. 3 (2005).

Deacon, Bob. “Assessing the SDGs from the Point of View Global Social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Vol. 32, no.2 (2016)

3. 기타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Summary of China’s A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uly 2016).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8: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1997/8 (12 December 1997).

Donald, Kate, “Promising the World: Accountability and the SDGs” ,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7 January 2016).

Filskov, Nadj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June 2017).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Germany’s 2016 Report to the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ents by the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16).

Hosie, Alison, “Contributing to the Accountability Web: The Role of NHRIs and the SDGs” ,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23 March 2016).

Korea Peace Now,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2019).

NDC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016).

Noij, Frank. Fauveau, Vincent. “UNFPA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fth Programme Cycle, 2011–2015/6” , UNFPA (2015).

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0*, (10 December 2019)

- OHCH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한국어판).
- OHCH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UN Doc. OHCHR/A/72/394 (18 September 2017).
- OHCH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UN Doc. OHCHR/A/73/386 (19 September 2018).
- Security Council Report,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 U.S. Department of State, *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6/2020-TIP-Report-Complete-062420-FINAL.pdf>>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3/1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RES/2003/10 (16 April 2003).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RES/2004/13 (15 April 2004).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2005/34 (10 January 2005, by Vitit Muntarbhorn).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N.4/2006/35 (23 January 2006, by Vitit Muntarbhorn).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8: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1997/8 (12 December 1997).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itial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December 1984], UN Doc. E/1984/6/Add.7 (5 February 1985).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April 2002], UN Doc. E/1990/6/Add.35 (15 May 2002).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CO/2-4 (22 November 2017).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UN Doc. CEDAW/C/PRK/2-4 (2016).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7 November 2017, UN Doc. CEDAW/C/PRK/CO/2-4 (22 November 2017).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itial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1 (11 September 2002).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1 April 2016), UN Doc. CEDAW/C/PRK/2-4 (1 June 2016).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PD/C/PRK/1 [Date received: 19 December 2018] (10 October 2019).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7,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uman Rights Council* (15 March 2006), UN Doc. A/RES/60/251 (3 April 2006).
- UN General Assembly,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 Doc. A/RES/70/163 (10 February 2016).
-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UN Doc. A/65/PV/6 (21 September 2020).
-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UN Doc. A/71/PV/17 (23 September 2016).
-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5/388 (14 October 2020).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0/306 (29 August 2005, by Vitit Muntarbhor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1/349 (15 September 2006, by Vitit Muntarbhor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2/264 (15 August 2007, by Vitit Muntarbhor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3/322 (22 August 2008, by Vitit Muntarbhor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4/224 (4 August 2009, by Vitit Muntarbhor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5/364 (14 September 2010, by Marzuki Darusma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6/322 (24 August 2011, by Marzuki Darusma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67/370 (13 September 2012, by Marzuki Darusman).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4/275/Rev.1 (20 September 2019).

UN General Assembly,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75/388 (14 October 2020).

UN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4/268 (2 August 2019).

-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 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A Shared UN Framework for Action*, UN Doc. CEB/2016/6/Add.1 (09 November 2016).
-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6: Continuity of Obligations*, UN Doc. CCPR/C/21/Rev.1/Add.8/Rev.1 (8 December 1997).
-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itial rep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 October 1983], UN Doc. CCPR/C/22/Add.3 (14 November 1983).
- UN Human Rights Committe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December 1999], UN Doc. CCPR/C/PRK/2000/2 (4 May 2000).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2,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L.19 (18 March 2013).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43/25,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ty-third session, 24 February–13 March and 15–23 June 2020, UN Doc. A/HRC/RES/43/25 (29 June 2020).
- UN Human Rights Council,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33/PRK/1 (20 February 2019)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7 February 2014).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UN Doc. A/HRC/34/66/Add.1 (24 February 2014).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its thirteenth session*, UN Doc. A/HRC/13/56 (8 February 2011).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her visi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7/56/Add.1 (8 December 201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0/66 (30 May 201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0/18 (24 February 2009, by Vitit Muntarbhor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3/47 (17 February 2010, by Vitit Muntarbhor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6/58 (21 February 2011, by Marzuki Darusma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9/65 (13 February 2012, by Marzuki Darusma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by Marzuki Darusma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15 (7 February 2007, by Vitit Muntarbhor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7/20 (15 February 2008, by Vitit Muntarbhorn).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 A/HRC/27/10/Add.1 (12 September 2014).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3/13 (4 January 2010).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7/10 (2 July 2014).
-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L.19 (18 March 2013).
- UN OHCHR, *Contributions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6 May 2016).
- UN OHCHR, *Summary table on the linkages between the SDGs and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UN OHCHR. *Transforming Our World: Human Right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Resolution 1997/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secret ballot by 13 votes to 9, with 3 abstentions, 21 August 1997, contained in UN Doc. E/CN.4/1998/2 (5 November 1997)
- UNICEF DPR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2019).
-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 UNICEF, *The national context for children's and women's rights in DPR Korea*, (2019).
- UNICE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Annual Results Report*, (2019).
- United Nations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2017-2021.

United Nations, *DPRK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United Nations, *Notificat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N.467.1997 (12 November 1997).

UNOCHA, *DPRK SECTOR REPORT: WATER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June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Statistics*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xecutive summary*, (2019).

북한 대표,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동북아시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발표자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9.10.15.-16.).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ession%201-3.%20Country%20Presentation_DPRK.pdf>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5.9.

<웹사이트>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 데이터 탐색기. <<https://sdgdata.humanrights.dk/en>>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홈페이지. <<https://ganhri.org/membership/>>

외교부, 북한인권 문제. <http://www.mofa.go.kr/www/wpge/m_3995/contents.do>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웹사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유엔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통일부, 북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관련자료.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6&category=&pageIdx>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4&koreanChrctr=&dicaryId=23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5&dicaryId=46&searchCnd=0&searchWrd=>>>

“FAO, 북한 산림 10년 새 평양시 면적 사라져”, 「VOA Korea」, 2020.7.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fao-nk-deforestation>>

“WHO to spend US\$900,000 to help N. Korea’s fight against coronavirus”,

「YONHAP NEWS」, 2020.04.01.

<<https://en.yna.co.kr/view/AEN20200401002200325>>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https://dialogue.unikorea.go.kr/ukd/a/ad/usrtaltotal/View.do?id=148>>

“대북 지원 모금 27% 불과…국제사회 ‘피로감’ 반영”, 「VOA Korea」

2020.10.1. <<https://www.voakorea.com/episode/pm-225726>>

“북 수해 곡물 수확 30만t 감소 예상…식량 부족량 최대 122만t”, 「VOA Korea」
2020.9.2.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dprk-foodshortage-flood-typhoon>>

“北, 17년 동안 전국에 ‘자연흐름식물길’ 2만9천리 확립”, 「통일뉴스」,

2019.10.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29>>

“북한 결핵 발생률 세계 5위…WHO ‘결핵 고부담국가’로 재분류”, 「연합뉴스」,

2020.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038300504>>

“북한, 외부지원 거부 선언… ‘재해협력→대화복원’ 구상 난망”, 「연합뉴스」
2020.8.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4106000504>>

“북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인구 세계 2위…가뭄으로 1천만명 영향”, 「VOA Korea」 2020.8.6.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dprk-natural-disasters-droughts>>

“이인영 통일장관 “북한 임진강 황강댐 일방적 방류 유감” ”, 「한겨레」,
2020.8.6.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6678.html>>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https://sdgs.un.org/un-system-sdg-implementation/economic-and-social-commission-asia-and-pacific-escap-24510>>

IPU Parlin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10&year=2020>>

OHCHR Website. <<https://www.ohchr.org/EN/COUNTRIES/NHRI/Pages/NHRIMain.aspx>>

OHCHR, Cycl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ages/CyclesUPR.aspx>>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https://sdgdata.humanrights.dk/>>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dg.humanrights.dk/en>>

UN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

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홈페이지.
<<https://unsdg.un.org/2030-agenda/universal-values/leave-no-one-behind>>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4 COUNTRY PROFILE, DPRK*.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untryprofiles/KP.pdf>>

UPR Database of Recommendations.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

부 록

1. 최근 3년 한국 정부 대북 인권정책 개요

1) 통일부 대북 인권정책 현황

연도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성과
2018년	- 남북대화 활성화 및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 남북회담 정례화 및 체계화 추진 -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 견인,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협상 개시 - 남북교류 단계적 복원 및 확대·발전 - 이산가족·남북자·역류자,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현안 문제 진전 - 기존 교류사업과 함께 보건·의료·산림·종교·체육·문화 분야 민간·지자체 남북교류 재개·활성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 구체화 및 중·러 등 관련국과 협력 -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제사회지지 획득 ‘통일을 위한 약속’ 추진체계에 마련, 공론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확대	- 남북대화 추진 -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계기 남북관계 복원 지속 - 남북회담 정례화·체계화 추진 - 남북대화 통한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 남북합의 제도와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비정기 분야 민간단체 및 지자체 다양한 교류 지원 - 국제사회 통한 공간 확대, 교류협력 지속가능성 확보 - 법·제도 정비 통한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 -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재개 - 이산가족·국군포로·남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 지속 -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주민 인권 증진 사업 발굴·추진 -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내실화	- 세 차례 남북정상 회담 통해 전면적·획기적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 합의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실시로 군사적 대결구도 완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감소(17년 16건→18년 0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개소 후 총 327회 접촉) -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남북회담 36회, 합의서 23건) - 철도·도로 협력 사업 재개, 남북 공동현지도사 실시 - 북한 산림 생태계 보호복원 협력 실시 - 남북 간 전염병 공동 대응체계 추진, 정보교환, 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합의

		라리아·결핵 등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으로 본 야 지원 추진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 구상 종합계획(안) 수립 및 추진여건 조성 -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한 협력사업 준비 - 대외적 국제사회협력 통한 북한 호응 유도 5. 「통일약속」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 2020년 ‘통일을 위한 약속’ 도출 목표, 사회적 대화 체계 마련 - 국민 공감대 확산,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사회적 대화 추진 ‘협약’ 등 구체적 결과물보다 합의 만들어가는 소통 ‘과정’에 중점 6.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 - 맞춤형 취업지원 체계 재구축, 탈북 청소년 교육 질 제고 - 민간·지자체 거버넌스 강화 및 하나센터 운영기반 확충 - 취약·부적응 탈북민 보호 강화 및 우리 사회 포용력 확대 7.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 - 청소년·대학생 긍정적 통일인식 함양 - 학교·지역사회 및 공공부문 핵심 전달자 통일교육 역량 제고 -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 연계성 강화	-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 국민·지자체 등 인적왕래 대폭 증가(방북인원 17년 52명→18년 6,148명, 방남 인원 17년 63명→18년 806명) -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개최(17년 0명→18년 833명) -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13개 단체 65억 원 반출 등 민간차원 대북지원 재개 활성화 - 남북회담 시 억류자 송환 및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 촉구 등 북한인권 문제 진전 노력, 북한인권 실태조사(18년 899명) -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통한 탈북민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18년 1955명)
2019년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번영 비전 관련 국과 공유, 협력 강화	1.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 남북대화 통해 북미대화 진전 촉진,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강화 - 남북정상회담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평화경제 전략 이행 계획 수립,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기본계획 수립 - 남북관계 소강국면, 남북 간 교류협력 후속

	-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체계 유지발전 -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가동 추진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 활성화 2.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 남북 당국 간 협력 심화·발전, 국민 체감하는 교류협력 추진 - 경제협력사업 사전 준비 -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안정적 확대 - 민간·지자체 사업 활성화 지원 - 교류협력 사업 안정적 추진 제도 개선 3.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 -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 실질적 인권 증진 정책 추진 - 보건·산림·환경 등 분야 협력 추진과정에 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인권 증진 도모 - 5월 UPR 계기, 장애인·여성·아동 등 분야별 북한인권 개선 협력 추진 - <u>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등 실효적 정책수립 및 이행</u> 대북 인도지원 추진 및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 보건의료 협력 성과 도출, 감염병 정보교환 정례화·체계화, 결핵·말라리아 등으로 협력 확대 - 남북 간 교류·왕래 활성화, 공동검역체계 구축 협의 -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추진	- 협의 지연, 분야별 협력 일부 진행(한강하구 해도 전달, 도로협력 실무접촉,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공동참가 등) - 선제적 제재 면제 및 내부 준비 등 사업 재개 대비(개성 만월대 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관련 유엔 제재 면제 승인) - 민간·지자체 분권·협치 기반 정책추진 체계 구축(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 민간 대북접촉신고 수리 지원,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회, 인도협력 민간협의회 운영 등) -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UNICEF 모자보건사업 350만 볼, WFP 영양지원사업 450만 볼, WHO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 500만 볼 등) -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 지속(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 통일국민협약 도출 사회적 대화 추진(사회적 대화 30회 개최 등)
--	---	---

		- 민간 인도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 WFP, UNICEF, 국제NGO 협력 강화 4.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토대 마련 •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 통한 통일국민협약 추진 • 새로운 한반도 미래에 부응하는 평화·통일 교육 • 국제사회지지 확산 위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5. 남북관계 제도화 위한 법제 기반 확충 •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행 위한 제도화 우선 추진 • 남북관계 발전 및 활성화 대비 연구검토 • 남북관계 발전 법제 관련 범정부적 협력 강화 6.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 체계 구축 • 모든 주요기록물 생산·수집·보관 체계 마련 • 사업 참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기록물 수집 • 민간 통일사로 수집 • 사료 전시·활용 확대, 대국민 서비스 적극 시행	
2020년	• 보건·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확보 •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통해 평화경제 실현 토대 조성 •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1.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기반 조성 및 강화 • DMZ 평화적 이용 관련 국민 체감 효과 제고 2. 북한 개별관광 추진 •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 개성·금강산 등 방문 • 우리국민 제3국 경유 개별관광 3.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협의 개시 • 국제협력 통한 남북중·남북러 협력사업 발굴 • 남북 공동행사,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재개 • 남북 상호협력 필요한 개발협력 의제 적극 발굴·추진 (보건, 방역·방제, 농축산, 산림, 재난·환경·기후) • 지자체·민간 현장 중심의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기반 구축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남북공동선언 이행 통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 -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분야 합의 이행, 국제기구 통한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 활성화, 분권·협치에 입각한 지자체·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 발굴, 지원 - 남북당국, 국제기구, 민간단체 협력 새로운 인도협력 모델 구축 •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 증진 - 북한인권정책 수립·추진 체계화, 「제2차 (20~22)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2020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수립 및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실시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 국제사회·민간과의 북한인권 개선 협력 강화 - 유엔 등 다자 기구, 미국·EU 등 양자 국제협력 강화, 북한인권 민간단체와의 소통 확대 -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UPR 및 SDGs 활	
--	--	--

		용, 남북 간 인권협력 계기 마련 - 북한인권예 대한 국민 인식 균형 형성 및 공감대 확산 • 탈북민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5. 통일·대북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평화·통일 지역거점 구축 추진 • 미래세대 중심 체험형 통일교육 확대 • 국제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 국내 법·제도 정비 통한 안정적 통일정책 추진	
--	--	---	--

<출처: 2018, 2019, 2020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반 필자 재구성>

2) 제1, 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구분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17-2019)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0-2022)
비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 시대 기반 구축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추진과제	①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②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③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⑥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 ⑦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연구 확충 ②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③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④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⑤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⑥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⑦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증진 협력 ⑧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 강화

<출처: 제1차,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기반 필자 재구성>

3) 외교부 대북 인권정책 현황

연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성과
2018년	북 평창 올림픽 참석 및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 평창 올림픽 성공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 이해와지지 확보 노력 경주 - 북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집중 - 북미를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편입시키는데 집중, 남북대화-북미대화 간 선순환 추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위한 기본 방향 제시
2019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	-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남북미 정상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 가속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바탕 한반도에서 정치적인 대관계 종식 및 평화체제 수립 지속 추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으로 이어지는 대화 프로세스 과정에 기여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 남북관계-북미관계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 대화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 비핵화 대화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 조율, 지속 -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경주	

<출처: 2018, 2019, 2020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반 필자 재구성>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 인쇄일 | 2020 년 12 월 07 일

| 발행일 | 2020 년 12 월 07 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30

| F A 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프린트올데이 02)325-3381

ISBN : 978-89-6114-782-8 93340

비매품